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연구보고서 -

2024. 5.

국토교통부

제 출 문

국토교통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의 최종보고서(연구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5.

국 토 연 구 원
원 장 심 교 언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이 재 춘 연구위원(총괄책임)
연구진	강 미 나 선임연구위원 박 기 덕 부연구위원 이 건 우 연구원 문 소 희 연구원 김 승 연 연구원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1. 주거실태조사는 모집단의 일부를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조사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함
2. 주거실태조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주거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조사로,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는 유사조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값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음
3. 유사 통계자료와 본 조사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자료 직·간접 비교가 가능한지 각 조사의 조사기준 및 분류체계, 용어의 정의 등을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본 보고서에 작성된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DB(2022년 12월 기준)를 모집단으로 조정된 가중치를 부여한 값임
5. 본 보고서의 주요결과는 주로 지역별, 소득분위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로 분석하였음
 - **분석지역**은 크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구분하였고,
 - **소득분위**는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소득을 적용하였으며, 소득 하위(1분위~4분위), 소득 중위(5분위~8분위), 소득 상위(9분위~10분위)로 구분함
 - **장애유형**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내부기관 장애(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정신적 장애(지적, 자폐성, 정신)로 구분함
 - **장애등급**은 심한 장애(기존 중증, 1~3급), 심하지 않은 장애(기존 경증, 4~6급)으로 구분함
6. 본 보고서의 원문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https://mdis.kostat.go.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음



I.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1. 조사개요	1
1) 사업개요	1
2)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3
2. 주요업무 내용 및 조사항목	5
1) 주요업무 내용	5
2) 조사항목	8

II. 표본설계 및 실사관리

1. 표본설계	11
1) 목적 및 기본방향	11
2) 「2023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표본설계	12
2. 실사관리	33
1) 실사 프로세스	33
2) 조사원 선발 및 교육	34
3) 자료수집 및 최종표본	36
4) 자료 검증	38

III.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

1. 분석범위 및 자료의 한계	43
1) 이용자료	43
2) 분석범위	43
2.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가구주)	46
1) 가구특성 및 경제력	46
2) 주택 및 주거환경	61
3) 장애인가구의 주택마련 및 주거비 부담	85
4) 장애인가구의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96

3. 장애인의 주거실태(장애인 개인)	100
1) 대리응답 여부 및 장애인 개인 특성	100
2) 장애인 편의시설	109
3) 장애인 가구원의 분가 희망	112
4) 주택마련 정보취득 방법 및 희망 주거환경	113
5) 장애인 필요 주거서비스	114

IV. 장애인 및 활동보조사 FGI

1. 개요	117
1) FGI 수행배경	117
2) 목적	117
2. FGI 수행절차	118
1) 전문가 자문	118
2) 사전조사	118
3) 본조사	119
3. 연구방법	121
1) 주요 질문 항목 (장애인 본인)	121
2) 주요 질문 항목 (활동보조사 대상)	122
4. 장애인 대상 FGI 결과	124
1)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 현황, 문제, 요구사항	124
2)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	126
3) 정책 욕구 관련	127
5. 활동보조사 대상 FGI 결과	128
1) 전문가의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관련	128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 현황, 문제, 요구사항	129
※ 참고문헌	131

■ 부록

1. 조사표	137
--------------	-----

표 차례

표 I-1. 주거실태조사 통계작성체계	4
표 I-2.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8
표 II-1. 시도 및 성별 조사대상 등록 장애인 현황	14
표 II-2. 조사대상 등록 장애인의 성 및 연령대별 현황	14
표 II-3. 조사대상 등록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현황	15
표 II-4. 시도별 등록 장애인의 장애정도별 현황	16
표 II-5.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	16
표 II-6. 시도별 동/읍면 및 등록 장애인 현황	18
표 II-7. 장애유형별 주요 조사항목의 평균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현황	19
표 II-8. 장애등급별 주요 조사항목의 평균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현황	19
표 II-9. 시도별 주요 조사항목의 평균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현황	20
표 II-10. 시도별 표본 동/읍면 수 현황	21
표 II-11. 시도별 모집단 및 표본 동/읍면 수	22
표 II-12. 장애유형별 주요 조사항목의 예상 상대표준오차(RSE) 현황	23
표 II-13. 시도별 주요 조사항목의 예상 상대표준오차 현황	23
표 II-14. 표본 동/읍면 내 조사대상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현황	25
표 II-15. 표본 동/읍면 내 조사대상 등록장애인의 장애정도별 현황	26
표 II-16. 표본 동/읍면 내 조사대상 등록장애인의 유형 및 장애정도별 현황	26
표 II-17. 표본 동/읍면 내 조사대상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현황	28
표 II-18. 최종 가중치 적용 후 주요변수의 분포 비교	30
표 II-19. 조사원 교육 일정	35
표 II-20. 사전조사 접촉 현황	36
표 II-21. 표본대체 사유	37
표 II-22. 최종 표본수 현황	38
표 III-1. 장애인가구 수 추정	43
표 III-2. 지역별 비율	44
표 III-3. 소득 구분	44
표 III-4. 장애유형 구분	44
표 III-5. 장애정도 구분	45
표 III-6.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분포	45
표 III-7. 가구원수 분포	46
표 III-8. 지역별 가구원수 분포	47
표 III-9. 소득수준별 가구원수 분포	47
표 III-10. 장애유형별 가구원수 분포	48
표 III-11. 장애정도별 가구원수 분포	48
표 III-12. 장애가구원수 분포	49
표 III-13. 지역별 장애가구원수 분포	49
표 III-14. 소득수준별 장애가구원수 분포	50
표 III-15. 장애유형별 장애가구원수 분포	50

표 III-16. 장애정도별 장애가구원수 분포	51
표 III-17.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52
표 III-18. 지역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52
표 III-19. 소득수준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53
표 III-20. 장애유형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53
표 III-21. 장애정도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54
표 III-22. 가구주 연령 분포	55
표 III-23. 지역별 가구주 연령 분포	55
표 III-24. 소득수준별 가구주 연령 분포	56
표 III-25. 장애유형별 가구주 연령 분포	56
표 III-26. 장애정도별 가구주 연령 분포	57
표 III-27. 가계수지	58
표 III-28. 지역별 가계수지	58
표 III-29. 소득수준별 가계수지	59
표 III-30. 장애유형별 가계수지	60
표 III-31. 장애정도별 가계수지	60
표 III-32. 점유형태 분포	61
표 III-33. 지역별 점유형태 분포	62
표 III-34. 소득수준별 점유형태 분포	62
표 III-35. 장애유형별 점유형태 분포	63
표 III-36. 장애정도별 점유형태 분포	63
표 III-37. 주택유형 분포	64
표 III-38. 지역별 주택유형 분포	65
표 III-39. 소득수준별 주택유형 분포	65
표 III-40. 장애유형별 주택유형 분포	66
표 III-41. 장애정도별 주택유형 분포	66
표 III-42. 주택건축연도 분포	67
표 III-43. 지역별 주택건축연도 분포	68
표 III-44. 소득수준별 주택건축연도 분포	68
표 III-45. 장애유형별 주택건축연도 분포	68
표 III-46. 장애정도별 주택건축연도 분포	69
표 III-47.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70
표 III-48. 지역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70
표 III-49. 소득수준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71
표 III-50. 장애유형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71
표 III-51. 장애정도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72
표 III-52. 1인당 주거면적 및 방수	73
표 III-53.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및 방수	73
표 III-54. 소득수준별 1인당 주거면적 및 방수	74
표 III-55. 장애유형별 1인당 주거면적 및 방수	74
표 III-56. 장애정도별 1인당 주거면적 및 방수	75
표 III-5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76
표 III-5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분포	77
표 III-59.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78

표 III-60. 지역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79
표 III-61. 소득수준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79
표 III-62. 장애유형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79
표 III-63. 장애정도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80
표 III-64. 주택만족도	81
표 III-65. 주거환경만족도	81
표 III-66. 지역별 주거환경만족도	81
표 III-67. 소득수준별 주거환경만족도	82
표 III-68. 장애유형별 주거환경만족도	82
표 III-69. 장애정도별 주거환경만족도	82
표 III-70. 편의시설 설치 경험	83
표 III-71.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경험	83
표 III-72. 소득수준별 편의시설 설치 경험	83
표 III-73.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경험	84
표 III-74. 장애정도별 편의시설 설치 경험	84
표 III-75. 편의시설 설치 비용 최다부담주체	84
표 III-76.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85
표 III-77. 지역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86
표 III-78. 소득수준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86
표 III-79. 장애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87
표 III-80. 장애정도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87
표 III-81.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88
표 III-82. 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89
표 III-83. 소득수준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89
표 III-84. 장애유형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90
표 III-85. 장애정도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90
표 III-86.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91
표 III-87. 지역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92
표 III-88. 소득수준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93
표 III-89. 장애유형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93
표 III-90. 장애정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94
표 III-91.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94
표 III-92. 지역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95
표 III-93. 소득수준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95
표 III-94. 장애유형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96
표 III-95. 장애정도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96
표 III-96.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97
표 III-97.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	97
표 III-98. 주거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98
표 III-99.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99
표 III-100. 장애인 설문 대리응답 여부	100
표 III-101. 장애인 설문 대리응답 이유	100
표 III-102. 장애인 성별 및 연령	101
표 III-103. 지역별 장애인 성별 및 연령	101

표 III-104. 소득수준별 장애인 성별 및 연령	102
표 III-105. 장애유형별 성별 및 연령	102
표 III-106. 장애등급별 성별 및 연령	103
표 III-107. 장애의 주요 원인	104
표 III-108.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104
표 III-109. 소득수준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105
표 III-110. 장애유형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105
표 III-111. 장애등급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106
표 III-112. 탈의 및 옷 갈아입기 가능 여부	106
표 III-113. 화장실 이용 가능 여부	107
표 III-114. 목욕하기 가능 여부	107
표 III-115. 조리 및 식사 준비(부엌일 포함) 가능 여부	108
표 III-116. 청소 등 집안 정리 가능 여부	108
표 III-117. 주택주변 산책	108
표 III-1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조 여부 및 필요성(주택 내부/집안)	110
표 III-11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조 여부 및 필요성(주택 외부/집밖)	111
표 III-1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어려움	111
표 III-121. 분가 희망 여부 및 거주 형태	112
표 III-122. 분가 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112
표 III-123. 주택마련 정보취득 방법	113
표 III-124. 개인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받고 싶은 서비스(1순위)	114
표 IV-1. FGI 수행절차와 그에 따른 조사대상	118
표 IV-2. 장애인 활동보조사 FGI 조사대상	119
표 IV-3.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현재 지원하는 가구 특성	119
표 IV-4. 장애인 FGI 조사대상	120
표 IV-5. 장애인 FGI 조사대상의 주거특성	120

그림 차례

그림 I-1. 업무분담 체계	4
그림 I-2. 의사결정 체계	4
그림 I-3. 2023년도 조사표 작성과정	5
그림 I-4. 표본설계 및 추출 절차	6
그림 I-5. 데이터 생산 절차	7
그림 II-1. 실사 및 자료처리 흐름도	33
그림 II-2. 자료 검증 절차	38
그림 III-1. 가구원수 분포	46
그림 III-2. 장애가구원수	49
그림 III-3. 평균 장애가구원수	49
그림 III-4.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51
그림 III-5. 지역별 소득수준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51
그림 III-6. 가구주 연령 분포	54
그림 III-7. 월평균 소득 및 생활비	57
그림 III-8. 점유형태 분포	61
그림 III-9. 주택유형 분포	64
그림 III-10. 주택건축연도 분포	67
그림 III-11.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69
그림 III-12. 1인당 주거면적	72
그림 III-13. 1인당 방수	72
그림 III-1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75
그림 III-15.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78
그림 III-16. 주택만족도	80
그림 III-17.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88
그림 III-18. 월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91
그림 III-19.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94

I .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장애인가구)



I.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1. 조사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 제 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조에 의거 장애인 등의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함
-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실시함
- 조사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본법 제20조 ④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③항 1호에 따라 조사업무를 국토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함

➤ 조사체계

- 주거실태조사는 일반조사와 정책조사(특수가구조사)로 구분하며, 2016년까지 일반조사는 짝수 해에, 정책조사는 홀수 해에 실시하였음
 - 일반조사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 이후 2023년까지 총 13회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2016년까지 매 2년마다 실시하였고 2017년 이후부터는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매년 조사를 시행함
 - 정책조사는 특수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007년 노인가구, 2009년 장애인가구, 2011년 임대주택거주가구, 2013년 저소득가구, 2015년·2019년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 연혁

- 2005.5 | 부동산대책회의 주거실태조사 추진 결정
- 2005.6 | 「정기적 주거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수행
- 2006.4 | 2006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07.7 | 2007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노인가구) 시행
- 2008.4 |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09.3 |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장애인가구) 시행
- 2010.6 |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1.4 | 2011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임대주택거주가구) 시행
- 2012.6 | 2012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3.7 | 2013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저소득가구) 시행
- 2014.4 |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5.3 |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장애인가구) 시행
- 2016.4 | 2016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7.4 |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8.3 |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9.3 |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19.5 |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장애인가구) 시행
- 2020.5 |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21.6 |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22.4 |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23.5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조사) 시행
- 2023.8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정책조사 : 장애인가구) 시행

➤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 2023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장애인 포함 가구의 주거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주택개량 및 주거안정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 또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차적인 목적이 있음
 - 본 조사는 구체적인 주거복지 대상가구 파악 및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에서 필요한 기초자료 및 분석결과를 제공함
- 2009년, 2015년, 2019년에 수행한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와 시계열 자료 확보

2)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조사개요

➤ 조사명

-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승인(협의)번호 제116031호)

➤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조사주기

- 1차 2009년, 2차 2015년, 3차 2019년 조사, 4차 2023년 조사

➤ 통계의 종류

- 조사통계(표본조사)

➤ 조사대상

- 2022년 12월 말 기준,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등록 DB에 등재된 장애인이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전국 장애인가구(시설거주 장애인 제외)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조사표와 훈련된 면접원을 통한 대면면접조사

➤ 표본규모

- 목표표본 수 : 총 8,000가구
- 유효표본 수 : 8,046가구(목표 대비 조사 성공률 100.6%)

조사기간

- 사전조사(응답자 접촉): 2023년 8월 24일 ~ 9월 1일
- 면접원 교육 : 2023년 9월 5일 ~ 9월 7일
- 본조사 : 2023년 9월 13일 ~ 2023년 12월 31일

통계작성체계

- 국토연구원과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은 과업별로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원활하게 조사를 수행함
 - 국토연구원은 조사기획, 실사 및 조사관리, 조사결과 분석 및 공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은 표본설계와 실사총괄을 병행하여 업무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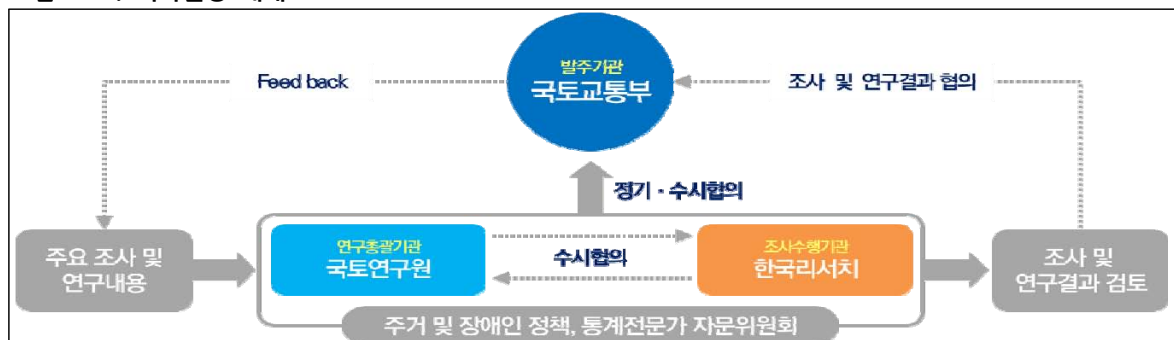
표 1-1. 주거실태조사 통계작성체계

구 분	담 당
작성기관	국토교통부
조사기획	국토연구원
현장조사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
자료처리	국토연구원,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
결과분석 및 공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그림 1-1. 업무분담 체계



그림 1-2. 의사결정 체계



2. 주요업무 내용 및 조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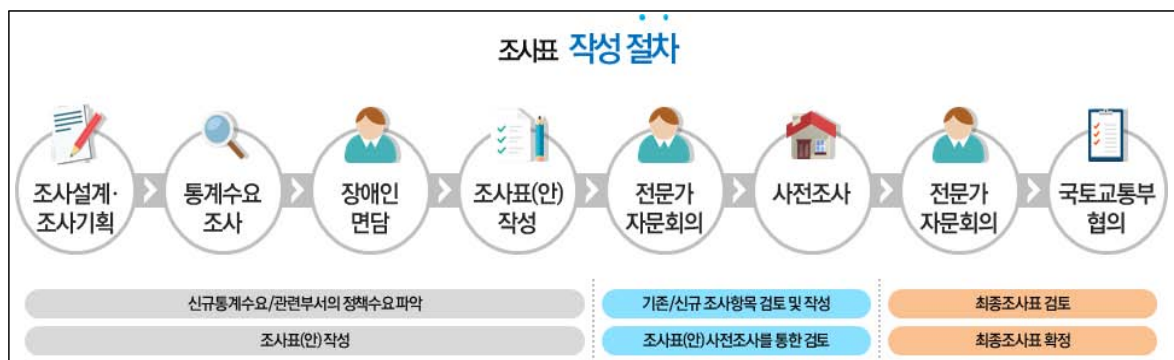
1) 주요업무 내용

(1) 조사기획

➤ 2023년도 장애인가구 조사표 작성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일반가구용 표준조사표와 2019년 장애인가구 조사표를 취합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진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2023년도 조사표를 확정함
 - 국토교통부 수요조사, 전문가 수요조사를 통해 의견 및 신규 수요를 취합함
 - 2023년도 조사표는 가구주 설문에서는 일반가구 조사표의 내용을, 장애인 개인 설문에서는 2009년·2015년·2019년 조사표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게 함

그림 1-3. 2023년도 조사표 작성과정



➤ 조사지침서 작성

- 확정된 조사표를 토대로 주요 용어의 정의 및 개념, 현장조사 요령,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조사지침서를 작성함
- 조사항목의 구성 및 주요 용어의 정의 등은 인구주택총조사 등 통계청의 관련 조사에서 사용하는 정의 및 분류체계를 토대로 작성함

➤ 통계작성 협의 및 통계승인

- 통계법에 따라 통계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통계승인을 획득함(승인(협의)번호 제116031호)

➤ 표본설계 및 추출

- 표본설계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표본추출에 필요한 모집단 정보(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DB; 2022년 12월 기준)를 수집함
- 표본설계는 모집단 정의 및 표본추출틀 정의, 층화 및 분류지표, 표본규모 산정 및 표본배분, 표본추출 및 표본대체의 절차를 거침

그림 1-4. 표본설계 및 추출 절차



(2) 실사 및 조사관리

➤ 조사원 교육

- 조사 시 유의사항, 조사항목 작성요령 등에 대한 면접원 교육을 통해 조사원의 이해도를 제고함
- 조사시행을 위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매뉴얼 및 지침서 작성, 면접원 교육, 조사홍보, 공문발송 등 사전 준비를 시행함
-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지침서에 대한 사전조사 교육 및 서울/대전/부산/제주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은 한국리서치에서 담당함
- 실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관련 문의 및 민원에 대응하고 조사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함

➤ 설문조사

- 실사는 통계품질 제고를 위해 전문조사기관(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하였으며, 국토연구원은 표본추출 및 실사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함
- 실사기관인 전문조사기관과 협의를 거쳐 조사표의 구성 및 디자인을 확정하고 효과적인 조사 진행과 협조도 제고를 위한 사전준비를 실시함
- 조사를 위해 각종 홍보물과 조사용품을 제작하고 홍보하며 협조 공문을 발송함
- 설문조사 진행 중 지역별 점검을 통해 조사원의 어려움 및 조사표의 수정사항을

즉시 개선·반영함

- 조사된 자료는 검사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 원시자료를 생산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이크로데이터를 생산함

(3) 마이크로데이터 생산 및 관리

➤ 조사결과 검증

- 내부검토 및 입력 완료된 조사결과에 대해 논리적 오류 및 편치 오류 확인, 이상값 분석, 기초통계량 확인 등 자료 검증을 실시함
- 자료검증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나 이상값은 조사표 확인, 응답내용 확인, 필요시 전화통화를 통한 추가 검증을 통하여 정정함

➤ 가중치 적용

- 조사결과의 가중치는 각 표본을 추출확률을 고려하여 설계가중치를 설정하고, 무응답 조정과 모집단 정보(장애유형, 장애등급)를 바탕으로 사후조정 과정을 거쳐 산출함

그림 1-5. 데이터 생산 절차



(4) 공표자료 작성 및 정책지원

➤ 공표자료 작성

- 조사의 개요 및 실사과정, 표본설계 내용, 주요 분석결과 등을 수록한 연구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함
- 주요 변수별로 조사결과를 제시한 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함

➤ 정책지원

- 공표자료 이외에 정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가공통계 및 분석 자료를 작성함
- 기존 조사결과와의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함

2) 조사항목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조사표는 가구주 설문과 장애인 개인 설문으로 구분됨
 - 가구주 조사항목은 주택 및 주거환경, 개보수, 정책욕구, 가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됨
 - 장애인 개인 조사항목은 장애특성 및 편의시설, 주거이동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경제활동으로 구성됨

표 1-2.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 조사항목

구분	분류	조사항목
가구주 설문	I. 주택 및 주거환경	가구주 여부, 가구주가 된 연도, 현재주택 거주연도, 현재주택 유형·위치·점유형태, 현재주택 외 보유 주택, 자가 : 현재주택 마련 시점·가격·자금조달 방법, 임차 : 현재주택 임대주택 유형·임차료·임차자금 마련방법, 주택의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부담 수준, 현재주택 건축연도, 현재주택 구조·면적, 현재주택 내부시설 사용 형태, 현재주택 개보수 경험, 현재주택 상태, 주거환경 만족도, 주택 및 주거환경 전반적인 만족도
	II. 주거이동 및 주거의식	이사의향 및 계획, 주택보유의식
	III. 정책평가 및 정책욕구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이용현황 및 만족도,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IV.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현황, 가구원수, 장애인 등록 가구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 및 수급급여 종류, 주거급여 만족도, 가구소득, 생활비, 주거관리비 부담정도, 자산, 부채
장애인 개인 설문	I. 장애특성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경험 및 퇴소이유,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자신의 주택 등에서의 활동가능 여부, 안전사고 경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어려움
	II. 주거이동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분가희망 여부·분가형태·분가 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점, 분가 시 희망주택,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주택 거주이향, 필요 서비스, 주거지원 관련 정보취득 방법
	III. 경제활동	장애인 개인소득

II. 표본설계 및 실사관리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장애인가구)



II. 표본설계 및 실사관리



1. 표본설계

1) 목적 및 기본방향

(1) 표본설계의 목적

- 「2023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표본설계는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대표성 높은 표본을 추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추출된 표본의 적절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모집단에 대한 특성 추정을 위한 가중치 부여와 추정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조사대상인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표본설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

(2) 표본설계의 기본방향

- 조사대상, 공표범위, 조사결과의 활용성 등을 고려해 표본설계 기본방향을 설정
- 조사 모집단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표본설계에 반영함
- 전국 단위에 대한 15개 장애유형별 통계 생산, 각 시도별 4개 장애유형(중분류) 및 장애정도별 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목표한 범위의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설계함
- 모집단과 표본추출틀을 결정하고, 대표성 높은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표본추출방안과 가중치 부여 및 추정방안을 제시함
- 조사의 신뢰성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비표본오차 관리방안을 제시함

2) 「2023년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표본설계

(1) 표본설계 요약

➤ 모집단

- 목표모집단: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의 장애인 가구
- 조사모집단: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등록 DB(2022년 12월 말)에 등재된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

➤ 표본추출틀

- 사회보장정보원 장애인등록 DB(2022년 12월 말)에 등재된 등록장애인 명부 사용
- 장애인등록 DB에 등재된 지역사회 거주 등록장애인은 2,626,259명임

➤ 층화

- 제한된 예산과 시간, 효율적인 조사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상추출법(two-phase sampling)을 적용하여 추출함
- 1상 표본(first-phase sample)은 층화집락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한 표본 동/읍면 내 전체 장애인이며, 2상 표본(second-phase sample)은 1상 표본에서 추출한 조사대상 장애인임
- 1상 표본추출에서는 17개 시도 구분과 동/읍면 구분을 층화변수로 이용하였고, 2상 표본추출에서는 각 시도에서 장애유형을 2차 층화변수로 고려하였음
- 2상 표본의 각 층에서 표본추출 과정에서는 장애정도, 연령대,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하는 내재적 층화 방법을 적용함

➤ 표본규모

- 표본크기는 전체 조사예산 등을 고려하여 8,000명의 장애인 조사를 목표로 함
- 2019년 주거실태조사(장애인) 결과를 이용하여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예상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하였음
- 월 가구 총소득, 월 생활비, 월 주거비 등에 대한 모평균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는 전국의 경우는 6.6% 이내, 시도별 추정의 경우는 2.0%~9.1%, 장애유형별 추정의 경우는 약 1.6%~12.1%로 통계적으로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함

➤ 표본배분

- 각 시도별 표본 읍면동의 배분은 시도별 통계작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수 기준의 제곱근비례배분 적용
- 각 시도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에 대한 표본배분은 장애인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 적용
- 2상 표본 추출단계에서 각 시도에서 장애유형별 표본배분은 장애인 수 기준의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

(2) 모집단 정의 및 표본추출틀 작성

➤ 표본추출방법

- 1상 표본은 층화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 동/읍면을 추출하고, 해당 표본 동/읍면 내의 전체 장애인이 됨
- 2상 표본은 각 시도 및 장애유형에서 층화계통추출법에 의해 추출

➤ 모집단 정의

- 목표모집단: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는 전국의 장애인 가구
- 조사모집단: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등록 DB(2022년 12월 말)에 등재된 등록장애인이 속한 가구
 - 장애인 가구에 대해 알려진 모집단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등록 DB를 표본추출틀로 이용함

➤ 표본추출틀

- 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등록 DB(2022년 12월 말)에 등재된 등록장애인 명부를 사용함

➤ 모집단 분석

- 조사모집단인 지역사회 거주 등록 장애인의 지역 성별 분포에 대한 현황은<표 II-1>과 같음
 - 장애인등록 DB에 등재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2,626,259명임

- 조사모집단의 지역별 등록장애인 분포는 서울 14.8%, 경기도 22.0% 등으로 서울·경기 지역이 전체 장애인의 36.9%를 차지하고 있음

○ 조사대상 등록 장애인의 연령대 및 성별 분포에 대한 현황은 <표 II-2>와 같음

- 등록 장애인의 성별 분포는 여성(42.2%)에 비해 남성(57.8%)의 비율이 높고, 전체 장애인의 약 80.5%는 50세 이상으로 중고령자의 비중이 대단히 높음

표 II-1. 시도 및 성별 조사대상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

지역	남성		여성		전체	
	장애인 수	열%	장애인 수	열%	장애인 수	열%
전국	1,518,480	100.0%	1,107,779	100.0%	2,626,259	100.0%
서울	225,716	14.9%	164,032	14.8%	389,748	14.8%
부산	103,206	6.8%	72,170	6.5%	175,376	6.7%
대구	73,381	4.8%	53,054	4.8%	126,435	4.8%
인천	89,110	5.9%	61,036	5.5%	150,146	5.7%
광주	39,021	2.6%	29,576	2.7%	68,597	2.6%
대전	41,389	2.7%	29,434	2.7%	70,823	2.7%
울산	30,658	2.0%	19,983	1.8%	50,641	1.9%
세종	7,565	0.5%	5,132	0.5%	12,697	0.5%
경기	344,414	22.7%	234,641	21.2%	579,055	22.0%
강원	57,991	3.8%	42,181	3.8%	100,172	3.8%
충북	55,208	3.6%	40,940	3.7%	96,148	3.7%
충남	76,392	5.0%	56,992	5.1%	133,384	5.1%
전북	71,075	4.7%	59,364	5.4%	130,439	5.0%
전남	73,454	4.8%	63,916	5.8%	137,370	5.2%
경북	100,733	6.6%	79,582	7.2%	180,315	6.9%
경남	108,827	7.2%	79,462	7.2%	188,289	7.2%
제주	20,340	1.3%	16,284	1.5%	36,624	1.4%

표 II-2. 조사대상 등록 장애인의 성 및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

지역	남성		여성		전체	
	장애인 수	행%	장애인 수	행%	장애인 수	열%
전체	1,518,480	57.8%	1,107,779	42.2%	2,626,259	100.0%
19세 이하	61,947	66.6%	31,089	33.4%	93,036	3.5%
20-29세	60,031	64.4%	33,114	35.6%	93,145	3.5%
30-39세	71,764	66.2%	36,683	33.8%	108,447	4.1%
40-49세	149,887	69.2%	66,589	30.8%	216,476	8.2%
50-59세	279,606	68.9%	126,246	31.1%	405,852	15.5%
60-69세	394,614	63.4%	227,508	36.6%	622,122	23.7%
70세 이상	500,631	46.0%	586,550	54.0%	1,087,181	41.4%

○ 각 시도의 장애유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현황은 <표 II-3>과 같음

- 지체 장애인의 비중이 44.7%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청각장애(16.2%), 시각장애(9.5%), 뇌병변 장애(9.3%) 등의 비중이 높음
- 장애유형별 등록 장애인의 시도 분포는 대체로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폐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등은 서울과 경기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언어, 안면,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와 같은 특수 장애는 전체 장애인의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3. 조사대상 등록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현황

(단위: 명)

시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전체	1,175,218	243,258	250,103	425,012	23,307	2,724	105,814	5,077	15,065
전체%	44.7%	9.3%	9.5%	16.2%	0.9%	0.1%	4.0%	0.2%	0.6%
서울	164,395	39,677	40,875	61,969	3,419	385	18,879	998	2,715
부산	75,533	19,025	17,733	26,324	1,607	228	8,221	437	919
대구	49,604	12,146	11,778	26,910	1,163	141	5,172	229	734
인천	67,393	13,249	13,769	26,890	1,559	144	6,519	254	761
광주	28,891	6,600	7,116	10,163	605	63	2,636	136	396
대전	31,303	6,902	6,876	10,088	607	81	3,002	118	379
울산	22,940	4,772	4,771	8,010	462	72	2,195	170	375
세종	5,849	1,111	1,239	1,826	123	13	503	27	81
경기	264,027	54,514	54,707	86,639	5,455	632	25,878	1,269	3,863
강원	49,086	8,832	9,355	15,113	793	106	3,383	127	539
충북	44,605	8,249	8,716	14,297	711	94	3,394	140	494
충남	61,786	10,529	12,143	23,123	1,120	130	4,131	198	578
전북	61,949	11,251	11,027	21,056	1,281	124	3,661	159	509
전남	67,284	10,701	13,393	20,267	1,057	88	4,011	173	635
경북	77,730	15,165	15,595	37,667	1,349	194	5,621	296	959
경남	88,757	17,098	16,918	27,813	1,576	201	7,010	276	915
제주	14,086	3,437	4,092	6,857	420	28	1,598	70	213
시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전체		
전체	11,450	16,778	7,054	205,087	36,149	104,163	2,626,259	100.0%	
전체%	0.4%	0.6%	0.3%	7.8%	1.4%	4.0%	100.0%		
서울	2,155	3,086	1,233	26,140	7,292	16,530	389,748	14.8%	
부산	979	1,158	555	11,984	2,449	8,224	175,376	6.7%	
대구	407	645	328	9,750	1,510	5,918	126,435	4.8%	
인천	615	975	403	10,741	1,961	4,913	150,146	5.7%	
광주	285	421	268	6,798	1,043	3,176	68,597	2.6%	
대전	275	431	256	6,164	1,123	3,218	70,823	2.7%	
울산	266	262	120	4,013	744	1,469	50,641	1.9%	
세종	50	81	24	1,036	261	473	12,697	0.5%	
경기	2,546	3,940	1,417	44,166	9,931	20,071	579,055	22.0%	
강원	486	694	225	7,324	892	3,217	100,172	3.8%	
충북	356	627	243	9,609	903	3,710	96,148	3.7%	
충남	543	823	275	11,331	1,317	5,357	133,384	5.1%	
전북	348	682	417	11,499	1,019	5,457	130,439	5.0%	
전남	480	716	373	11,493	1,014	5,685	137,370	5.2%	
경북	634	931	365	14,896	1,473	7,440	180,315	6.9%	
경남	794	1,093	436	14,891	2,494	8,017	188,289	7.2%	
제주	231	213	116	3,252	723	1,288	36,624	1.4%	

○ 각 시도의 장애정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은 <표 II-4>와 같음

- 심하지 않은 장애가 65.1%, 심한 장애가 34.9%를 차지함
- 각 시도의 장애정도별 등록 장애인의 분포는 전국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남

○ 각 장애유형의 장애정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은 <표 II-5>와 같음

표 II-4. 시도별 등록 장애인의 장애정도별 현황

(단위: 명, %)

지역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전체	
	장애인 수	행%	장애인 수	행%	장애인 수	열%
전국	1,708,838	65.1%	917,421	34.9%	2,626,259	100.0%
서울	250,304	64.2%	139,444	35.8%	389,748	14.8%
부산	112,062	63.9%	63,314	36.1%	175,376	6.7%
대구	82,976	65.6%	43,459	34.4%	126,435	4.8%
인천	99,561	66.3%	50,585	33.7%	150,146	5.7%
광주	42,651	62.2%	25,946	37.8%	68,597	2.6%
대전	44,700	63.1%	26,123	36.9%	70,823	2.7%
울산	33,140	65.4%	17,501	34.6%	50,641	1.9%
세종	8,225	64.8%	4,472	35.2%	12,697	0.5%
경기	378,163	65.3%	200,892	34.7%	579,055	22.0%
강원	65,437	65.3%	34,735	34.7%	100,172	3.8%
충북	61,776	64.3%	34,372	35.7%	96,148	3.7%
충남	87,679	65.7%	45,705	34.3%	133,384	5.1%
전북	86,336	66.2%	44,103	33.8%	130,439	5.0%
전남	90,673	66.0%	46,697	34.0%	137,370	5.2%
경북	119,752	66.4%	60,563	33.6%	180,315	6.9%
경남	122,183	64.9%	66,106	35.1%	188,289	7.2%
제주	23,220	63.4%	13,404	36.6%	36,624	1.4%

표 II-5.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별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장애유형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합계
중분류	소분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	974,899	200,319	1,175,218
	뇌병변	106,159	137,099	243,258
	시각	205,493	44,610	250,103
	청각	341,907	83,105	425,012
	언어	13,986	9,321	23,307
	안면	1,475	1,249	2,724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	26,689	79,125	105,814
	심장	1,213	3,864	5,077
	간	14,349	716	15,065
	호흡기	470	10,980	11,450
	장루·요루	15,976	802	16,778
	뇌전증	5,450	1,604	7,054
발달장애	지적장애	0	205,087	205,087
	자폐성	0	36,149	36,149
정신장애	정신장애	772	103,391	104,163
전체		1,708,838	917,421	2,626,259

(3) 총화 및 분류지표

➤ 총화

- 사회보장정보원의 2022년 12월 말 기준 등록장애인 DB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들은 전국적으로 흩어져 분포하기 때문에 1차추출단위를 개인으로 표본추출할 경우 제한된 예산 하에서 효율적인 조사관리가 어렵고 시간적인 제약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함
- 장애인 대상 조사와 같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분포하고 있는 개인을 조사하고자 할 때 개인을 추출단위로 하는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상추출법¹⁾(two-phase sampling)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임
- 즉, 대규모 조사에 적합한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적용하여 1상 표본(first-phase sample)을 추출하고, 추출된 1상 표본으로부터 조사대상 장애인을 추출하는 2상 표본(second-phase sample)은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
 - 1상 표본(first-phase sample)은 전국 17개 광역자치체별로 시도별 동/읍면을 1차추출단위(PSU)로 하여 각 동/읍면별 장애인 수 기준의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 동/읍면을 추출함
- 장애인 주거실태조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로 다차원 층화방식을 적용하여 지역, 장애유형과 정도별 표본 수가 적절히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장애유형(예: 지체장애)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빈도를 보이기 때문에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각 장애유형별로 적절한 표본 수를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1상 표본 추출을 위해서 17개 시도 구분과 동/읍면 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하고, 2상 표본 추출단계에서는 각 시도에서 장애유형을 층화변수로 이용하였음
- 내재적 층화
 - 모집단의 층화에서 다양한 층화변수를 적용할 경우에는 층화효과가 커질 수 있으나, 층별 표본배분과 표본추출 과정이 복잡해지므로 필수적인 층화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층화변수는 내재적 층화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시도에서 1차추출단위인 동/읍면을 행정구역 순에 따라 정렬한 후에 동/읍면 내 장애인 수

1) 이상추출법 또는 중복추출법(double sampling)은 보조정보(auxiliary information)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Neyman(1938)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표본추출법이다. 1상 표본(first-phase sample)은 보조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표본크기로 추출하며, 2상 표본(second-phase sample)은 1상 표본으로부터 일부의 소규모 표본을 추출하여 주요 관심 변수를 조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1상 표본은 등록 장애인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연령대 등 기본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출하였으며, 이들 변수는 별도의 조사 과정 없이 등록 장애인 명부에서 파악할 수 있다.

기준의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

- 2상 표본 추출단계에서는 장애정도, 연령대,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하는 내재적 층화 방법을 적용하였음

➤ 층별 조사모집단 분포

- 각 시도 내에서 동과 읍면 지역의 구분에 따라 주거환경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세부 층화하였음

- <표 II-6>은 각 시도에서 동 및 읍면 지역 구분에 따른 동/읍면 수와 등록장애인 현황임.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은 717,271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인의 27.3%임

표 II-6. 시도별 동/읍면 및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개)

시도	동읍면 수			등록 장애인 수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전국	2,134	1,468	3,602	1,908,986	717,271	2,626,257
서울	429	0	429	389,746	0	389,746
부산	200	6	206	166,907	8,469	175,376
대구	134	11	145	113,580	12,855	126,435
인천	136	24	160	142,816	7,330	150,146
광주	97	0	97	68,597	0	68,597
대전	82	0	82	70,823	0	70,823
울산	44	13	57	39,146	11,495	50,641
세종	12	10	22	6,617	6,080	12,697
경기	439	139	578	455,973	123,082	579,055
강원	74	121	195	53,429	46,743	100,172
충북	51	102	153	46,699	49,449	96,148
충남	47	163	210	43,543	89,841	133,384
전북	85	159	244	73,246	57,193	130,439
전남	68	256	324	42,439	94,931	137,370
경북	94	251	345	71,505	108,810	180,315
경남	111	201	312	100,652	87,637	188,289
제주	31	12	43	23,268	13,356	36,624

주 : 장애인 DB의 등록 자료 중 동읍면이 누락된 2개 사례는 삭제하고 분석한 결과임

(4) 표본규모 산정 및 표본배분

➤ 2019년 장애인 주거실태조사 주요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분석

-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대상 최신 조사결과인 2019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함

- 2019년 주거실태조사 중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 대상 표본크기는 3,481명임

○ 2019년 조사에 대하여 주요 조사항목인 가구의 총소득, 가구 생활비, 주거비 등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산출하여 분석함

- <표 II-7>은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장애유형별 추정값과 상대표준오차 현황임.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표본수가 작은 언어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간질장애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임
- <표 II-8>과 <표 II-9>는 각각 주요 조사항목에 대한 장애등급과 시도별 추정값 및 상대표준오차 현황임. 주요 조사항목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표본크기가 작은 언어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안면장애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임

표 II-7. 장애유형별 주요 조사항목의 평균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현황

(단위: 명, 만원)

장애유형	응답자	가구 총경상소득		가구 생활비		가구 주거비	
		평균	상대표준오차	평균	상대표준오차	평균	상대표준오차
전체	3,471	235.6	10.0%	143.0	1.7%	14.1	1.5%
지체	834	261.2	18.4%	140.5	2.9%	14.1	2.4%
뇌병변	378	189.2	6.4%	144.3	4.5%	14.5	3.8%
시각	383	208.3	5.6%	143.9	3.9%	14.5	5.8%
청각	435	177.7	5.8%	124.3	3.6%	13.1	3.0%
언어	111	273.3	16.5%	163.1	7.2%	14.5	6.9%
지적	345	251.2	5.5%	172.2	3.8%	15.1	3.7%
자폐성	125	391.2	5.2%	268.6	4.9%	19.8	4.3%
정신	238	230.3	38.1%	102.8	5.3%	10.8	4.1%
신장	222	235.6	15.8%	173.5	12.0%	14.6	3.8%
심장	50	290.5	17.2%	189.8	10.2%	14.6	6.1%
호흡기	82	173.0	12.5%	131.2	9.7%	12.6	6.0%
간	87	311.0	11.2%	195.1	10.3%	17.9	11.7%
안면	30	218.6	17.4%	144.1	11.1%	13.4	12.8%
장루·요루	89	183.3	11.1%	143.4	10.4%	15.4	6.8%
뇌전증	62	144.2	14.6%	112.1	11.4%	11.8	7.6%

표 II-8. 장애등급별 주요 조사항목의 평균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현황

(단위: 명, 만원)

장애등급	응답자	가구 총경상소득		가구 생활비		가구 주거비	
		평균	상대표준오차	평균	상대표준오차	평균	상대표준오차
전체	3,471	235.6	10.0%	143.0	1.7%	14.1	1.5%
중증	1,658	220.2	5.2%	147.8	2.4%	14.0	2.0%
경증	1,813	244.3	14.9%	140.2	2.3%	14.1	2.0%

표 II-9. 시도별 주요 조사항목의 평균 추정에 대한 상대표준오차 현황

(단위: 명, 만원)

시도	응답자	가구 총경상소득		가구 생활비		가구 주거비	
		평균	상대표준오차	평균	상대표준오차	평균	상대표준오차
전체	3,471	235.6	10.0%	143.0	1.7%	14.1	1.5%
서울	511	252.7	6.4%	180.2	5.3%	14.3	4.1%
부산	240	195.2	10.1%	141.9	5.2%	12.6	4.8%
대구	160	196.8	9.2%	137.0	7.6%	12.7	6.3%
인천	200	206.3	6.9%	151.1	5.4%	13.7	4.2%
광주	100	155.0	11.3%	124.0	9.0%	11.9	6.1%
대전	100	251.4	10.7%	138.6	7.2%	16.8	5.5%
울산	60	140.7	11.9%	113.4	8.9%	10.6	9.4%
세종	40	315.5	11.4%	309.9	12.7%	19.8	5.8%
경기	707	234.1	3.9%	156.5	3.3%	16.3	3.8%
강원	140	152.1	7.6%	90.1	5.2%	12.5	3.7%
충북	140	190.2	8.0%	119.3	6.1%	13.5	5.3%
충남	180	179.2	9.7%	134.7	6.0%	14.8	3.6%
전북	180	166.9	8.4%	126.3	6.4%	14.5	3.2%
전남	200	125.6	7.2%	98.5	6.2%	10.4	4.1%
경북	238	642.4	12.0%	125.8	7.1%	16.1	7.8%
경남	240	202.4	7.9%	144.7	5.1%	11.5	4.4%
제주	35	202.0	23.8%	119.7	20.9%	16.3	8.7%

▶ 표본크기 결정

- 표본조사에서 표본크기 결정은 전체 조사 예산을 고려하여 통계분석의 최소 단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판단해야 함
 - 전국 단위에 대한 15개 장애유형별 통계 생산, 각 시도에서 4개 장애유형(중분류)별 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목표한 범위의 통계생산이 가능하도록 표본을 설계함
- 2023년 조사의 표본크기는 전체 조사 예산과 통계 분석 단위를 고려하여 8,000명의 장애인으로 결정함
 - 전국 8,000명의 표본을 조사할 경우 각 시도(세종시 제외)에서 장애유형(4개 중분류)과 장애정도(2)별 통계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조사에서는 8,000가구를 조사하며, 주요 조사항목(총소득, 생활비, 주거비) 추정의 상대표준오차는 1.0%~6.6% 수준으로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표본배분

- 1상 표본에서 1차추출단위로 동/읍면을 고려함에 따라 8,000명의 등록장애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표본 동/읍면별 표본크기(조사 장애인 수)를 결정해야 함
 - 표본 동/읍면에서 조사되는 표본크기는 집락내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1차추출단위의 최적 표본크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예산과 실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표본 동/읍면에서 평균적으로 약 20명을 조사하는 방안으로 결정함. 이에 따라 전국 3,602개 동/읍면 중에서 400개 동/읍면을 표본으로 추출함
 - 각 시도별 표본배분은 각 시도별 장애인 수에 따라 비례배분하는 방안과 제곱근비례배분 방안을 비교하여 결정함. 각 표본배분 방법에 따른 각 시도별 표본 동/읍면 수는 <표 II-10>과 같음

표 II-10. 시도별 표본 동/읍면 수 현황

(단위: 명, 개)

시도	장애인 수	열%	전체 동읍면 수	표본 동읍면 수	
				비례배분	제곱근비례배분
전국	2,626,259	100.0%	3,602	400	400
서울	389,748	14.8%	429	59	40
부산	175,376	6.7%	206	27	27
대구	126,435	4.8%	145	19	23
인천	150,146	5.7%	160	23	25
광주	68,597	2.6%	97	10	17
대전	70,823	2.7%	82	11	17
울산	50,641	1.9%	57	8	15
세종	12,697	0.5%	22	2	8
경기	579,055	22.0%	578	87	50
강원	100,172	3.8%	195	15	20
충북	96,148	3.7%	153	15	20
충남	133,384	5.1%	210	20	24
전북	130,439	5.0%	244	20	23
전남	137,370	5.2%	324	21	24
경북	180,315	6.9%	345	28	27
경남	188,289	7.2%	312	29	28
제주	36,624	1.4%	43	6	12

- 각 시도 내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세부 층화함. 이와 같이 동과 읍면으로 세부 층화하는 이유는 동과 읍면 지역의 구분에 따라 주거환경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각 시도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구분한 세부 층에 대한 표본배분은 등록장애인 수 기준의 비례배분법을 적용함
- <표 II-11>은 각 시도의 동 및 읍면 지역 구분에 따른 표본 동/읍면 수임

표 II-11. 시도별 모집단 및 표본 동/읍면 수

(단위: 개)

시도	모집단 동읍면 수			표본 동읍면 수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전국	2,134	1,468	3,602	281	119	400
서울	429	0	429	40	0	40
부산	200	6	206	25	2	27
대구	134	11	145	21	2	23
인천	136	24	160	23	2	25
광주	97	0	97	17	0	17
대전	82	0	82	17	0	17
울산	44	13	57	12	3	15
세종	12	10	22	4	4	8
경기	439	139	578	39	11	50
강원	74	121	195	11	9	20
충북	51	102	153	10	10	20
충남	47	163	210	8	16	24
전북	85	159	244	13	10	23
전남	68	256	324	7	17	24
경북	94	251	345	11	16	27
경남	111	201	312	15	13	28
제주	31	12	43	8	4	12

➤ 주요항목 예상오차

- 최종 표본배분 결과에 따른 주요항목의 예상 상대표준오차는 <표 II-12>와 같음
 - 2019년 조사와 비교하여 표본크기가 8,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대표준오차가 줄어 전반적으로 추정의 정확도는 안정적인 수준임

표 II-12. 장애유형별 주요 조사항목의 예상 상대표준오차(RSE) 현황

(단위: 명, %)

장애유형	표본크기 (23년 예상)	가구 총경상소득		가구 생활비		가구 주거비	
		RSE(현행)	RSE(예상)	RSE(현행)	RSE(예상)	RSE(현행)	RSE(예상)
전체	8,000	10.0%	6.6%	1.7%	1.1%	1.5%	1.0%
지체	1,922	18.4%	12.1%	2.9%	1.9%	2.4%	1.6%
뇌병변	871	6.4%	4.2%	4.5%	3.0%	3.8%	2.5%
시각	883	5.6%	3.7%	3.9%	2.6%	5.8%	3.8%
청각	1,003	5.8%	3.8%	3.6%	2.4%	3.0%	2.0%
언어	256	16.5%	10.9%	7.2%	4.7%	6.9%	4.5%
지적	795	5.5%	3.6%	3.8%	2.5%	3.7%	2.4%
자폐성	288	5.2%	3.4%	4.9%	3.2%	4.3%	2.8%
정신	549	38.1%	25.1%	5.3%	3.5%	4.1%	2.7%
신장	512	15.8%	10.4%	12.0%	7.9%	3.8%	2.5%
심장	115	17.2%	11.3%	10.2%	6.7%	6.1%	4.0%
호흡기	189	12.5%	8.2%	9.7%	6.4%	6.0%	4.0%
간	200	11.2%	7.4%	10.3%	6.8%	11.7%	7.7%
안면	69	17.4%	11.5%	11.1%	7.3%	12.8%	8.4%
장루·요루	205	11.1%	7.3%	10.4%	6.9%	6.8%	4.5%
뇌전증	143	14.6%	9.6%	11.4%	7.5%	7.6%	5.0%

표 II-13. 시도별 주요 조사항목의 예상 상대표준오차 현황

(단위: 명, %)

시도	표본크기 (23년 예상)	가구 총경상소득		가구 생활비		가구 주거비	
		RSE(현행)	RSE(예상)	RSE(현행)	RSE(예상)	RSE(현행)	RSE(예상)
전체	8,000	10.0%	6.6%	1.7%	1.1%	1.5%	1.0%
서울	800	6.4%	5.1%	5.3%	4.2%	4.1%	3.3%
부산	540	10.1%	6.7%	5.2%	3.5%	4.8%	3.2%
대구	460	9.2%	5.4%	7.6%	4.5%	6.3%	3.7%
인천	500	6.9%	4.4%	5.4%	3.4%	4.2%	2.7%
광주	340	11.3%	6.1%	9.0%	4.9%	6.1%	3.3%
대전	340	10.7%	5.8%	7.2%	3.9%	5.5%	3.0%
울산	300	11.9%	5.3%	8.9%	4.0%	9.4%	4.2%
세종	160	11.4%	5.7%	12.7%	6.4%	5.8%	2.9%
경기	1,000	3.9%	3.3%	3.3%	2.8%	3.8%	3.2%
강원	400	7.6%	4.5%	5.2%	3.1%	3.7%	2.2%
충북	400	8.0%	4.7%	6.1%	3.6%	5.3%	3.1%
충남	480	9.7%	5.9%	6.0%	3.7%	3.6%	2.2%
전북	460	8.4%	5.3%	6.4%	4.0%	3.2%	2.0%
전남	480	7.2%	4.6%	6.2%	4.0%	4.1%	2.6%
경북	540	12.0%	8.0%	7.1%	4.7%	7.8%	5.2%
경남	560	7.9%	5.2%	5.1%	3.3%	4.4%	2.9%
제주	240	23.8%	9.1%	20.9%	8.0%	8.7%	3.3%

(5) 표본추출 및 표본 대체

➤ 1상 표본추출

- 2023년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1상 표본을 위한 1차추출단위는 동/읍면이고, 이때 사용된 층화변수는 시도 구분과 동/읍면 구분임
 - 표본배분 과정을 통해서 시도 내 각 세부 지역 층에 대하여 표본 동/읍면 수를 결정하였음. 각 지역층에서 1차추출단위인 동/읍면의 추출은 등록장애인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을 적용함. 지나치게 규모가 작은 동/읍면이 표본으로 추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장애인 수가 200명 미만인 322개 동읍면²⁾은 표본추출 대상에서 제외함
- 표본으로 추출된 400개 동/읍면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이상추출법(two-phase sampling)의 1상 표본이 되고, 이 중 일부를 조사대상자로 추출함
 - <표 II-14>~<표 II-16>은 각각 표본 동/읍면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별 현황임

2) 표본추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322개 동/읍면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40,640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5%를 차지함

표 II-14. 표본 동/읍면 내 조사대상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현황

(단위: 명)

시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전체	196,217	41,697	41,532	68,911	4,115	481	17,951	883
서울	17,331	4,244	4,077	6,501	359	52	1,968	91
부산	12,993	3,420	2,957	4,507	276	39	1,343	68
대구	10,915	2,624	2,587	5,741	262	37	1,136	51
인천	13,019	2,716	2,680	5,103	348	22	1,289	64
광주	7,419	1,696	1,766	2,423	167	15	628	31
대전	7,239	1,543	1,558	2,282	134	23	669	36
울산	7,277	1,601	1,507	2,592	154	23	712	61
세종	2,830	517	568	885	58	7	245	10
경기	34,661	7,106	7,069	11,276	761	74	3,405	165
강원	8,863	1,681	1,658	2,491	137	21	646	25
충북	9,728	1,830	1,973	2,977	146	22	811	29
충남	12,646	2,141	2,602	4,347	250	34	941	49
전북	10,847	2,172	2,048	3,237	248	24	732	31
전남	8,622	1,495	1,717	2,465	132	6	584	21
경북	10,197	2,182	2,077	4,838	195	23	832	54
경남	16,443	3,444	3,173	4,706	329	46	1,435	61
제주	5,187	1,285	1,515	2,540	159	13	575	36
시도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전체
전체	2,449	1,927	2,614	1,238	35,879	6,332	18,324	440,550
서울	260	235	322	130	2,921	756	2,090	41,337
부산	153	205	178	115	2,133	373	1,589	30,349
대구	170	91	145	67	2,174	351	1,384	27,735
인천	148	140	182	78	2,094	378	1,055	29,316
광주	111	73	83	72	1,746	314	765	17,309
대전	88	64	98	59	1,437	274	731	16,235
울산	122	81	69	39	1,336	238	433	16,245
세종	41	24	36	14	478	105	171	5,989
경기	471	314	485	217	5,707	1,250	2,442	75,403
강원	99	78	141	41	1,331	199	555	17,966
충북	114	70	109	55	2,114	214	840	21,032
충남	114	94	146	47	2,426	347	1,150	27,334
전북	96	62	111	88	2,159	264	910	23,029
전남	69	57	81	51	1,536	170	957	17,963
경북	119	82	130	51	2,162	191	1,278	24,411
경남	194	158	200	74	2,892	634	1,390	35,179
제주	80	99	98	40	1,233	274	584	13,718

표 II-15. 표본 동/읍면 내 조사대상 등록장애인의 장애정도별 현황

(단위: 명)

시도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합계
전체	282,775	157,775	440,550
서울	26,291	15,046	41,337
부산	18,981	11,368	30,349
대구	18,129	9,606	27,735
인천	19,123	10,193	29,316
광주	10,585	6,724	17,309
대전	10,311	5,924	16,235
울산	10,599	5,646	16,245
세종	3,967	2,022	5,989
경기	49,564	25,839	75,403
강원	11,512	6,454	17,966
충북	13,337	7,695	21,032
충남	17,689	9,645	27,334
전북	14,709	8,320	23,029
전남	11,507	6,456	17,963
경북	15,714	8,697	24,411
경남	22,198	12,981	35,179
제주	8,559	5,159	13,718

표 II-16. 표본 동/읍면 내 조사대상 등록장애인의 유형 및 장애정도별 현황

(단위: 명)

장애유형	심하지 않은 장애	심한 장애	합계
전체	282,775	157,775	440,550
지체	161,714	34,503	196,217
뇌병변	18,007	23,690	41,697
시각	34,267	7,265	41,532
청각	55,123	13,788	68,911
언어	2,579	1,536	4,115
지적	255	226	481
자폐성	4,665	13,286	17,951
정신	216	667	883
신장	2,329	120	2,449
심장	78	1,849	1,927
호흡기	2,463	151	2,614
간	948	290	1,238
안면	0	35,879	35,879
장루·요루	0	6,332	6,332
전체뇌전증	282,775	157,775	440,550

➤ 2상 표본추출

- 이 조사의 조사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은 각 시도에서 장애유형을 층화변수로 하는 층화임의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함
 - 각 시도에서 장애유형별 표본배분은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함. 제곱근비례배분법을 적용함으로써 낮은 비중의 장애유형에 대해서 추출률을 높여 전국 단위의 장애유형별 통계작성이 가능하도록 고려함
 - <표 II-17>은 각 시도에서 장애유형별 표본크기 현황임

➤ 표본대체

- 각 시도의 장애유형 층에서 조사대상자를 추출할 때는 장애정도, 성별, 연령대 등을 내재적 층화변수로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비 표본 중에서 대체함
 - 이때 조사 대상자의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 연령대 등을 맞추어 표본을 대체하도록 함

표 II-17. 표본 동/읍면 내 조사대상 등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현황

(단위: 명)

시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전체	1,832	840	840	1,077	262	89	546	121
서울	172	86	84	106	25	9	58	13
부산	118	61	57	70	17	7	38	9
대구	97	48	48	70	15	6	32	7
인천	114	52	52	71	19	5	36	8
광주	77	36	37	43	11	3	22	5
대전	80	35	36	43	10	4	23	5
울산	69	32	31	41	10	4	21	6
세종	39	16	17	21	5	2	11	2
경기	232	105	104	132	34	11	73	16
강원	99	43	42	52	12	5	26	5
충북	95	41	43	52	12	4	27	5
충남	113	47	51	66	16	6	31	7
전북	109	49	48	60	17	5	29	6
전남	119	49	52	63	14	3	30	6
경북	119	56	54	83	17	6	34	9
경남	130	60	58	70	19	7	39	8
제주	50	24	26	34	9	2	16	4
시도	간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합계
합계	200	178	208	145	783	320	559	8,000
서울	21	20	24	15	71	36	60	800
부산	13	15	14	11	48	20	42	540
대구	12	9	11	8	44	18	35	460
인천	12	12	13	9	46	19	32	500
광주	9	7	8	7	36	15	24	340
대전	8	7	9	7	34	15	24	340
울산	9	7	7	5	29	12	17	300
세종	5	3	4	3	16	7	9	160
경기	27	22	27	18	94	44	61	1,000
강원	10	9	12	7	38	15	25	400
충북	10	8	10	7	44	14	28	400
충남	11	10	12	7	50	19	34	480
전북	10	8	11	10	49	17	32	460
전남	10	10	11	9	49	16	39	480
경북	13	11	14	9	56	16	43	540
경남	14	13	14	9	55	26	38	560
제주	6	7	7	4	24	11	16	240

(4) 가중치 작성 및 추정

➤ 가중치 작성 절차

- 조사 완료된 표본에 대해서는 전국 등록장애인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치 조정 절차가 필요함
-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의 3단계를 거침

➤ 설계가중치 작성

- 표본 동읍면 i 에서 추출된 j 번째 장애인을 위한 설계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w_{hij} = \frac{1}{p_{hi}} \times \frac{1}{p_{jhi}}$$

- 여기서, p_{hi} 는 h 층의 i 번째 표본 동읍면(PSU)의 추출확률, p_{jhi} 는 h 층의 i 번째 표본 동읍면(PSU) 내의 j 번째 장애인의 추출확률임

➤ 무응답 조정 및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보정

- 무응답 조정은 각 시도에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구분을 무응답 조정셀로 정의하여 진행하였음
- 각 시도별 장애유형 중분류(4), 각 시도별 장애정도 구분(2), 성(2)×연령대 분포(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등을 모집단 정보로 이용하여 레이킹 비 방법(Raking Ratio Method)³⁾에 의해서 모집단 정보와 일치시킴
 - 레이킹비 조정 방법이 사용된 각 보조변수에 대한 모집단 정보는 앞서 제시한 <표 II-3>부터 <표 II-5>와 같음

3) 레이킹비 방법은 모집단 정보로 이용하는 보조변수가 여러 개인 경우 각 변수의 결합분포에 대한 모집단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표본크기가 작아서 사후층화 조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됨.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다차원 분할표로 분류했을 때 각 칸의 모집단 크기를 안다면 사후층화 조정(post-stratification adjustment) 방법을 적용하고, 다차원 분할표에서 각 칸에 대한 모집단 크기를 모르는 경우는 각 보조변수에 대해서 모집단 분포와 일치시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모집단 분포와 일치시키는 레이킹비 방법을 적용하여 조정함

-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며, 최종 가중치는 특이치 조정⁴⁾ 과정을 거쳐 조정함

$$\text{최종 가중치} = \text{설계가중치} \times \text{무응답 조정계수} \times \text{벤치마킹 조정계수}$$

▶ 가중치 적용 후 주요 변수의 분포 비교

- <표 II-18>은 설계가중치와 최종 가중치(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과 특이치 조정을 거침)를 적용하여 산출한 주요 변수의 분포를 모집단 분포와 비교한 것임

표 II-18. 최종 가중치 적용 후 주요변수의 분포 비교

(단위 : %)

주요 변수		모집단	설계가중치 적용	최종 가중치
장애 유형	지체	44.7	44.9	44.7
	뇌병변	9.3	8.9	9.3
	시각	9.5	9.7	9.5
	청각	16.2	16.1	16.2
	언어	0.9	0.9	0.9
	안면	0.1	0.1	0.1
	신장	4.0	3.9	4.0
	심장	0.2	0.2	0.2
	간	0.6	0.6	0.6
	호흡기	0.4	0.4	0.4
	장루·요루	0.6	0.6	0.6
	뇌전증	0.3	0.2	0.3
	지적	7.8	7.9	7.8
	자폐성	1.4	1.4	1.4
	정신장애	4.0	4.1	4.0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은 장애	65.1	64.5	65.1
	심한 장애	34.9	35.5	34.9
성별	남자	57.8	61.4	57.8
	여자	42.2	38.6	42.2
연령대	19세 이하	3.5	1.5	3.5
	20-29세	3.5	2.8	3.5
	30-39세	4.1	3.6	4.1
	40-49세	8.2	6.5	8.2
	50-59세	15.5	13.7	15.5
	60-69세	23.7	25.8	23.7
	70세 이상	41.4	46.0	41.4

4) 전체 응답자의 가중치 분포에서 ‘중위수+5*사분위수범위(IQR)’을 초과하는 경우는 특이치로 간주하여 가중치를 ‘중위수+5*사분위수범위’ 값으로 대체하여 조정하였음. 가중치에 대한 특이치 조정은 추정량의 편향(Bias)이 증가할 수 있지만, 추정량의 분산 감소를 통해서 추정량의 평균제곱오차(Mean Squared Error: MSE)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추정

- 복합표본조사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하면 모수 추정에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고, 추정량의 분산이 과소평가되어 문제가 됨
- 본 조사에서 최종 응답자는 이상추출법(two-phase sampling)에 의해서 추출되었으며,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추정량과 분산추정량은 각각 다음과 같음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w_{...}}$$

- 여기서, w_{hij} 는 각 응답자 또는 가구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y_{hij} 는 각 응답자로부터의 조사값임.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표본추출단위인 표본 동/읍면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동/읍면에서 응답자 수임. $w_{...}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은 전체 응답자 또는 가구에 대한 가중값의 합계임
- 앞서 제시한 모평균 추정량에 대한 표본설계를 반영한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의 1차 표본추출단위인 동/읍면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동/읍면의 응답자 수,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 \quad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 모평균 추정량에 대한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 산식은 다음과 같음

$$rse(\bar{y}) = \frac{\sqrt{var(\bar{y})}}{\bar{y}} \times 100(\%)$$

- 각종 통계는 해당 통계의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를 분석하여 검토한 후 공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통계 이용자는 주요항목별 상대표준오차를 고려하여 분석된 통계표와 분석결과를 활용해야 함

(6) 표본관리

- 2023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등록장애인 정보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장애인의 사망, 이사, 연락두절, 시설 입소,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등록 정보와 조사시점의 상황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함
- 출현빈도가 낮은 장애유형(1상 표본의 대상자가 1,000명 미만인 경우)은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등임. 이들 장애유형은 대체표본을 동일 동/읍면 단위에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들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에서 대체표본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하였음
- 조사과정에서 불응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해진 표본대체 원칙에 따라 대체하도록 하여 조사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2. 실사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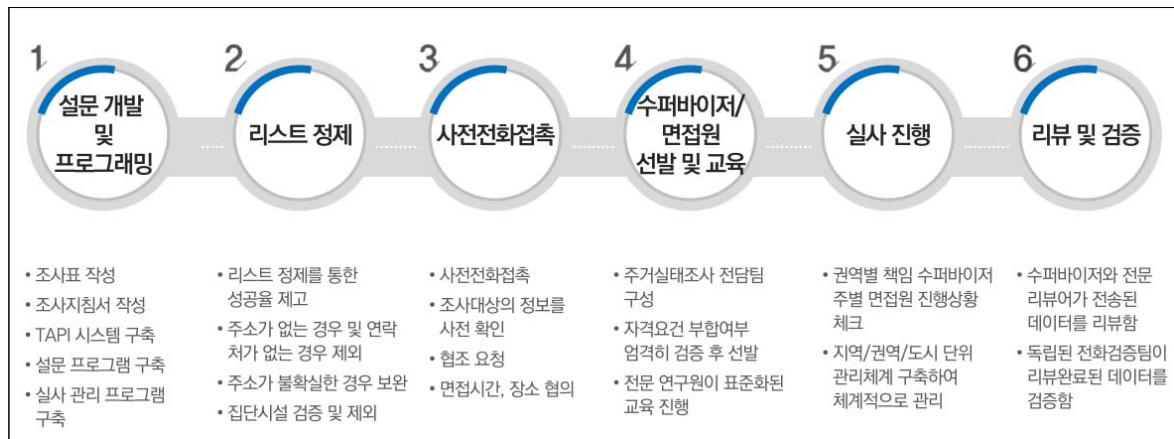
1) 실사 프로세스

(1) 조사 기획 및 준비

○ 조사 전체의 일정 및 세부계획을 사전에 수립

- 조사수행기관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조사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조사의 목적과 자료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통계전문가와 함께 표본 설계를 진행하고, 조사대상 리스트를 추출한 후 정제 작업을 수행

그림 II-1. 실사 및 자료처리 흐름도



- 방문조사에 앞서 본 조사에 대한 안내 및 리스트 정보 확인을 위해 사전조사(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 준비
- 본 조사방법은 태블릿PC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TAPI)로 조사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점검

(2) 자료수집

○ 사전조사는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진행됨

- 대면면접 조사 진행 전 협조를 제고 및 리스트 정보 확인을 위해 표본추출 된 리스트를 전화 조사하여 사전 리쿠르팅 진행
- 조사목적 및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하고 리스트 기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함
- 본조사 진행 시 표본에서 탈락될 경우가 있으므로 목표 표본보다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함

○ 자료수집은 2023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됨

- 자료수집 관리 시스템을 통해 면접원별, 지역별 진행상황에 대해 관리함

- 슈퍼바이저는 개별 면접원의 일일 진행량 등을 체크하여 조사를 독려하고, 연구원은 지역별 진행량을 체크하여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
- 조사불가능 조사구는 연구원이 직접 조사구 대체 이유를 확인하고 대체함으로써 대체율을 최소화함

(3) 자료 검증

-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리뷰 및 전화 검증을 실시
 - 태블릿PC로 면접원이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1차 논리적 오류 검증
 - 집계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슈퍼바이저가 확인하여 2차 논리적 오류 검증
 - 조사가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는 전화 검증 과정을 거쳐 데이터 신뢰성을 높임

(4) 자료 처리 및 보고서 작성

- 데이터가 집계되면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거쳐 원시 자료를 생산
-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 작업을 실시한 후 가중치가 부여된 자료를 기초로 기술통계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확정
- 확정된 데이터로 결과분석을 실시

2) 조사원 선발 및 교육

(1) 조사원 선발

- 조사원은 아래 기준에 의해 선발함
 - 1년 이상의 조사 경험자
 - 주거실태조사 1회 이상 경험자
 - 장애인 대상 조사 경험자
 - TAPI 조사 경험자

(2) 조사원 교육

- 조사원 교육은 본 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진행함
- 신규 면접원의 경우, 본교육 전 별도로 온라인 개념교육을 진행함. 교육수료 후 주요 개념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여 통과한 조사원만 본교육에 투입함

- 본 교육은 서울/대구/부산/대전/광주 5개 지역으로 나누어 실시함(제주도 교육 별도 실시)
- 본교육에서는 실사 지침서와 교육자료 등을 활용하여,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사 주요 개념, 설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TAPI 시스템을 이용한 조사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함. 교육을 마친 후 TAPI 시스템을 통해 실습함
- 자료수집 중에 추가된 지침이 있을 경우 수시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함

표 II-19. 조사원 교육 일정

차수	교육방식	교육일시 및 시간	교육장소	내용	인원
사전 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8월 30일~9월 4일	한국리서치 교육사이트	조사 개요 조사 진행 및 요령 설문의 주요 개념	전체 신규 면접원
	1차 테스트	8월 30일~9월 4일	한국리서치 교육사이트	테스트 비통과 시 동영상 재시청/개별 피드백	전체 신규 면접원
본 교육	대면교육 (서울)	9월 5일, 6일 15:00~17:00	한국리서치 4층 교육실	각 문항별 설명, 2차 테스트, TAPI 수행 방법, TAPI 실습	81명
	대면교육 (대구)	9월 5일 15:00~17:00	대구 반월당역 교육장	각 문항별 설명, 2차 테스트, TAPI 수행 방법, TAPI 실습	30명
	대면교육 (부산)	9월 6일 15:00~17:00	부산 부산역 회의실	각 문항별 설명, 2차 테스트, TAPI 수행 방법, TAPI 실습	20명
	대면교육 (대전)	9월 7일 15:00~17:00	대전 예람인재 교육원	각 문항별 설명, 2차 테스트, TAPI 수행 방법, TAPI 실습	26명
	대면교육 (광주)	9월 7일 15:00~17:00	광주 상공회의소	각 문항별 설명, 2차 테스트, TAPI 수행 방법, TAPI 실습	23명
	대면교육 (제주)	9월 14일 15:00~17:00	제주 시니어 교육센터	각 문항별 설명, 2차 테스트, TAPI 수행 방법, TAPI 실습	10명

3) 자료수집 및 최종표본

(1) 사전조사

- 조사 거절율을 고려하여 목표 표본 수 8,000개의 약 5배수를 표본 추출함(전체 39,963개 리스트)
- 전체 리스트 39,963개 중 37,618개 리스트에 사전조사 실시
- 사전조사한 37,618개 리스트 중 10,373개 리스트는 성공하였고(적격 조사대상자이면서 조사 협조 약속 함), 27,074개 리스트는 비성공함(거절 또는 조사대상 부적합)

표 II-20. 사전조사 접촉 현황

접촉 결과	사전조사	
	개수(개)	비율(%)
전체	37,618	100.0
성공	10,373	27.6
비성공	27,074	72.0
미접촉	171	0.4

(2) 본조사

- 사전조사에서 조사를 약속한 리스트에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본조사를 진행
- 방문 시 조사 참여를 강력하게 거절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전조사에서 접촉하지 않았던 리스트에서 대체하여 조사 진행

(3) 표본 대체

- 다음의 사유로 인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특성이 유사한 다른 표본으로 대체함

〈표본 대체를 허용한 경우〉

- 강력거절로 더 이상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연락처 및 주소지 불명으로 조사대상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최대한 유사한 표본으로 대체하기 위해 다음의 대체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
 - 동일한 시/도이면서 동일한 장애유형의 리스트로 대체
 - 동일한 장애정도의 리스트로 대체
 - 성, 연령대가 가장 유사한 리스트로 대체
- 본 조사의 대체표본은 총 2,156개임
- 표본대체 사유는 강력 거절이 5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및 요양병원 입소(11.1%), 조사대상 아니며, 추적 불가능함(8.6%) 등의 순임

표 II-21. 표본대체 사유

대체 사유	개수(개)	비율(%)
전체	2,156	100.0
강력 거절	1,136	52.7
장애인거주시설 및 요양병원 입소	239	11.1
조사대상 아니며, 추적 불가능함	186	8.6
조사기간 내 돌아오지 않음	172	8.0
거주하는 시/도 달라짐	164	7.6
조사대상 장애인 사망 및 실종	70	3.2
부재	62	2.9
조사참여 거절	53	2.5
등록장애 취소	9	0.4
기타	65	3.0

(4) 최종 표본수 현황

- 면접원, 수퍼바이저 리뷰 후 이관된 조사완료 표본 수는 8,052가구임
- 전화 검증 후 예러로 6개 표본 폐기함
 - 실제 조사 여부, 조사 대상자 적격 여부(가구주, 장애인 개인), 주요 조사 항목에 대해 재확인 함
- 최종 표본수는 8,046가구로 목표 가구 대비 100.6% 완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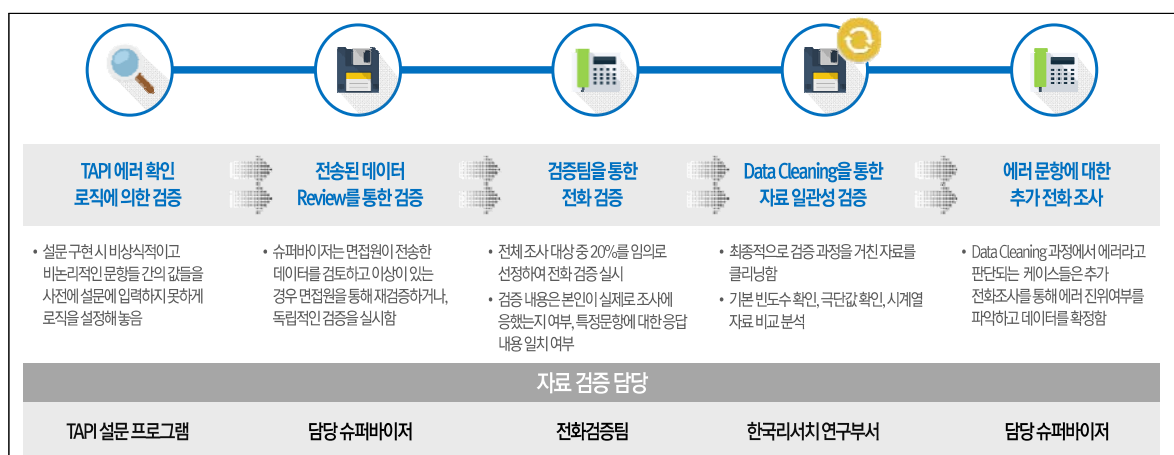
표 II-22. 최종 표본수 현황

구분	목표 표본수	완료 표본수	목표 대비 완료 비율(%)
전체	8,000	8,046	100.6
서울특별시	800	806	100.8
부산광역시	540	548	101.5
대구광역시	460	461	100.2
인천광역시	500	506	101.2
광주광역시	340	341	100.3
대전광역시	340	341	100.3
울산광역시	300	301	100.3
세종특별자치시	160	163	101.9
경기도	1,000	1,004	100.4
강원도	400	403	100.8
충청북도	400	402	100.5
충청남도	480	480	100.0
전라북도	460	460	100.0
전라남도	480	480	100.0
경상북도	540	541	100.2
경상남도	560	567	101.3
제주특별자치도	240	242	100.8

4) 자료 검증

- 자료 검증은 데이터 품질을 높이기 위해 TAPI 시스템 로직 검증, 슈퍼바이저의 리뷰 검증, 전화 검증, 데이터 클리닝, 에러문항 전화 검증 5단계에 걸쳐 실시

그림 II-2. 자료 검증 절차



- 조사 진행 중 TAPI 시스템 로직에 의해 면접원 스스로 자기 검증을 실시

- TAPI 설문은 실시간 온라인을 기반으로 진행하므로 해당 주소의 행정자료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여 응답자가 분류하거나 응답하기 어려워하는 ‘주택유형’, ‘전용 면적’, ‘사용승인일자’ 등을 면접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에러를 최소화함
- TAPI 설문 기능인 확인창, 경고창을 활용하여 유관 문항 간 응답 불일치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함
- TAPI 시스템 검증이 완료된 데이터를 전송하면 수퍼바이저가 1차적으로 리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 일관성을 검증
- 수퍼바이저에 의한 1차 검증이 완료된 설문지의 20% 내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전화 검증을 실시
 - 전화검증에서 오류가 발견된 설문지는 모두 폐기하고, 조사를 담당한 면접원이 작성한 설문지 전체를 다시 검증함
- 전화 검증이 완료된 설문지는 데이터 클리닝을 통한 자료 일관성 검증을 실시함
 - 개별 응답자의 응답이 전체 평균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응답이 나온 문항들을 클리닝 가이드 기준에 맞추어 논리적 에러를 검증함
 - 클리닝 과정에서 응답자의 확인이 필요한 문항은 전화 조사를 통해 조사 결과의 정확도를 검증함
- 데이터 클리닝 작업이 완료된 원시자료는 모집단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가중치 작업을 실시한 후, 가중치가 부여된 자료를 기초로 기술통계분석 작업을 진행하여 데이터를 확정함

Ⅲ.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장애인가구)



Ⅲ.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주요결과 분석



1. 분석범위 및 자료의 한계

1) 이용자료

-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주요결과를 정리함
 - 가구 주거특성의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가능한 경우 2009년, 2015년,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함께 비교함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는 2009년, 2015년, 2019년도에 이어 4회째로 시행된 장애인가구조사로 분석에 사용된 유효 표본은 총 8,046가구 임
-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된 등록장애인수는 2,626,259명이며, 2022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DB를 기준으로 확정됨
 - 모집단 특성을 반영한 가중치는 시도, 장애유형, 장애등급을 고려하여 반영됨
- 2023년 전체 장애인가구의 조사결과는 2009년, 2015년, 2019년 장애인가구와 2023년 일반가구(장애인가구를 포함한 전체가구)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함

표 Ⅲ-1. 장애인가구 수 추정

지역		등록장애인수	평균 장애가구원수	장애인가구 수(추정)
전국	2009	2,419,439명	1.1453명	2,112.4천 가구
	2015	2,492,050명	1.1196명	2,225.8천 가구
	2019	2,585,717명	1.0971명	2,356.9천 가구
	2023	2,626,259명	1.1050명	2,376.7천 가구

주 : 등록장애인 수는 보건복지부 2022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DB에 의함

2) 분석범위

-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지역별, 소득수준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로 분석하였으며, 필요시 점유형태별, 주택유형별, 가구주의 연령별 등의 분석을 추가함
- 분석지역은 크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등(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도지역(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으로 구분함
 - 주거실태조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까지 충남에 포함하여 도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광역시 등으로 구분함(2017년도 주거실태조사까지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사용하여 세종시가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음)

표 Ⅲ-2. 지역별 비율

(단위 : %)

구분		기준	일반가구			장애인가구			
			2014	2019	2023	2009	2015	2019	2023
지 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48.4	48.5	49.2	41.6	42.0	41.6	42.6
	광역시 등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세종	20.3	20.3	19.9	19.1	19.0	19.5	19.2
	도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3	31.2	30.9	39.3	39.0	38.8	38.2

주 : 2017년까지 세종시는 충남에 포함하여 도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광역시 등으로 구분함

○ 소득 구분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소득 구분을 기준으로 적용함

표 Ⅲ-3. 소득 구분

구분		일반가구(2023)		장애인가구(2023)
		소득범주	비율(%)	비율(%)
소득	소득 하위(1~4분위)	299만원 이하	38.3	69.4
	소득 중위(5~8분위)	300만원 ~ 549만원	41.5	24.2
	소득 상위(9~10분위)	550만원 이상	20.2	6.4

주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의 소득은 세금 등을 제외한 월평균 실수령액(2022년 1월~12월까지의 월평균 금액)을 조사한 결과이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와는 차이가 있음

○ 장애유형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 외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였음

표 Ⅲ-4. 장애유형 구분

(단위 : %)

구분			2009		2015		2019		2023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지체	53.6	84.6	53.2	84.3	47.9	81.6	44.7	80.7
		뇌병변	10.2		9.6		9.8		9.3	
		시각	10.0		10.3		9.8		9.5	
		청각	9.9		10.3		13.2		16.2	
		언어	0.7		0.8		0.8		0.9	
		안면	0.1		0.1		0.1		0.1	
	내부기관 장애	신장	2.2	4.9	2.9	5.0	3.4	5.4	4.0	6.1
		심장	0.7		0.3		0.2		0.2	
		호흡기	0.7		0.5		0.5		0.4	
		간	0.3		0.4		0.5		0.6	
		장루·요루	0.5		0.6		0.6		0.6	
		뇌전증	0.4		0.3		0.3		0.3	
	정신적 장애	지적	6.0	10.5	6.4	10.7	8.0	13.0	7.8	13.2
		자폐성	0.6		0.7		1.0		1.4	
		정신	3.9		3.5		4.0		4.0	

○ 장애정도는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함

- 장애를 기존에는 중증(1~3등급)과 경증(4~6등급)으로 등급에 따라 분류했으나,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로 구분함
- 심한 장애는 기존 1~3등급, 심하지 않은 장애는 기존 4~6등급을 말함

표 III-5. 장애정도 구분

(단위 : %)

구분		2009	2015	2019	2023
장애정도	심한 장애	42.6	37.3	36.5	34.9
	심하지 않은 장애	57.4	62.7	63.5	65.1

- 2023년 장애인가구의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외부 신체기능 장애의 경우 심한 장애보다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가 더 많고, 내부기관 장애의 경우 심한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정신적 장애의 경우 대부분이 심한 장애(99.8%)로 나타남

표 III-6.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분포

(단위 : %)

구분			장애정도				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지체	17.0	22.4	83.0	77.6	100.0
		뇌병변	56.4		43.6		100.0
		시각	17.8		82.2		100.0
		청각	19.6		80.4		100.0
		언어	40.0		60.0		100.0
		안면	45.9		54.1		100.0
	내부기관 장애	신장	74.8	60.2	25.2	39.8	100.0
		심장	76.1		23.9		100.0
		호흡기	95.9		4.1		100.0
		간	4.8		95.2		100.0
		장루·요루	4.8		95.2		100.0
		뇌전증	22.7		77.3		100.0
	정신적 장애	지적	100.0	99.8	-	0.2	100.0
		자폐성	100.0		-		100.0
		정신	99.3		0.7		100.0

2.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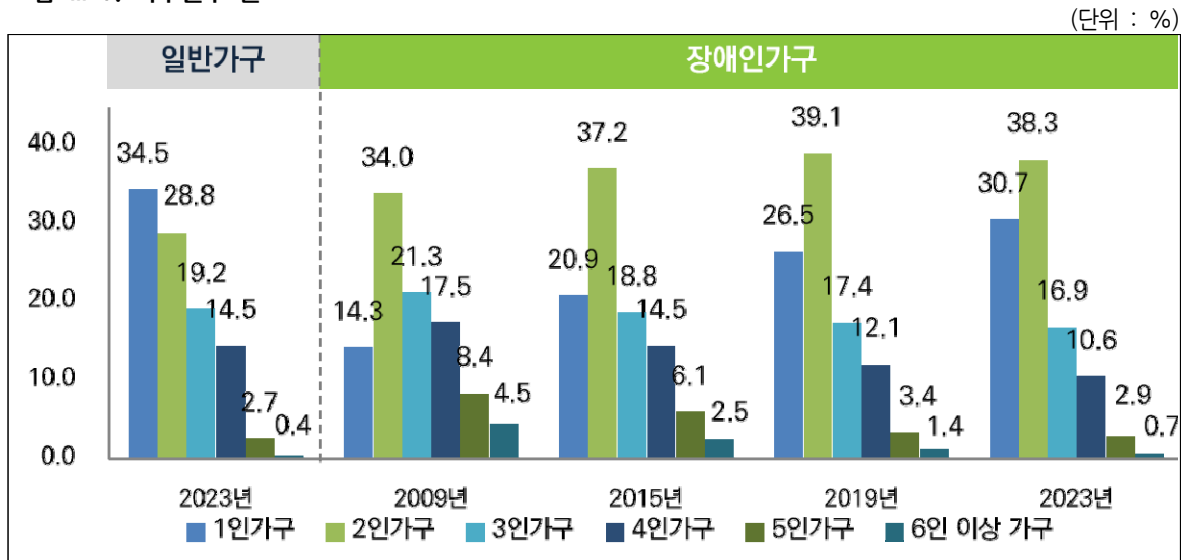
1) 가구특성 및 경제력

(1) 가구특성

▶ 가구원수

-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9년 2.86명에서 2015년 2.56명, 2019년 2.31명, 2023년 2.19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임
 - 반면 1인가구 비중은 2009년 14.3%에서 2015년 20.9%, 2019년 26.5%, 2023년 30.7%로 증가추세에 있고, 3인 이상 가구 비중은 감소추세에 있음
 - 일반가구 또한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하는 경향(2008년 2.95명 → 2023년 2.23명)

그림 Ⅲ-1. 가구원수 분포



자료1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Ⅲ-7. 가구원수 분포

(단위 : %, 명)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계	평균 가구원수
일반가구	2008	15.9	24.1	21.7	28.5	7.4	2.3	100.0	2.95
	2014	26.8	26.2	21.2	19.9	4.7	1.1	100.0	2.53
	2019	29.3	27.3	21.0	17.5	4.0	0.9	100.0	2.43
	2023	34.5	28.8	19.2	14.5	2.7	0.4	100.0	2.23
장애인가구	2009	14.3	34.0	21.3	17.5	8.4	4.5	100.0	2.86
	2015	20.9	37.2	18.8	14.5	6.1	2.5	100.0	2.56
	2019	26.5	39.1	17.4	12.1	3.4	1.4	100.0	2.31
	2023	30.7	38.3	16.9	10.6	2.9	0.7	100.0	2.19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2023년 기준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 순으로 평균 가구원수가 많음
 - 2015년부터 지역별 1인가구 비중은 도지역, 광역시 등, 수도권 순으로 높음
 - 특히, 2023년 기준 도지역에서는 1인 또는 2인가구의 비중이 73.2%에 달함

표 III-8. 지역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 %, 명)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	계	평균 가구원수
2009	수도권	13.5	30.1	22.4	20.0	9.5	4.5	100.0	2.97
	광역시 등	16.2	29.9	22.2	19.0	8.5	4.1	100.0	2.87
	도지역	14.3	40.1	19.8	14.3	7.0	4.5	100.0	2.75
2015	수도권	19.9	32.1	21.0	16.4	8.2	2.4	100.0	2.69
	광역시 등	20.2	36.6	19.9	14.9	5.8	2.5	100.0	2.58
	도지역	22.3	42.9	15.8	12.1	4.1	2.7	100.0	2.42
2019	수도권	24.4	34.5	20.1	15.3	3.9	1.8	100.0	2.46
	광역시 등	28.0	39.2	15.1	12.0	4.4	1.3	100.0	2.30
	도지역	28.1	43.9	15.8	8.8	2.4	1.1	100.0	2.17
2023	수도권	29.7	35.9	18.5	12.8	2.5	0.6	100.0	2.25
	광역시 등	29.9	38.0	17.3	10.5	3.5	0.8	100.0	2.22
	도지역	32.1	41.1	14.9	8.2	2.9	0.7	100.0	2.11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가구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기준 소득 하위의 86.3%가 1인 또는 2인가구임
 - 2023년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소득 하위 1.76명, 소득 중위 2.97명, 소득 상위 3.59명임
 - 1인가구 비중은 소득 하위 가구(43.0%)와 소득 중·상위 가구(각각 5.3%, 1.4%)가 차이가 큼

표 III-9. 소득수준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 %, 명)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계	평균 가구원수
2009	소득 하위	19.4	42.8	20.6	11.2	4.5	1.6	100.0	2.44
	소득 중위	1.4	12.2	25.2	34.3	17.2	9.8	100.0	3.86
	소득 상위	2.0	9.1	15.7	31.8	22.6	18.8	100.0	4.25
2015	소득 하위	29.4	45.4	14.7	7.4	2.4	0.7	100.0	2.10
	소득 중위	2.1	22.9	30.5	28.4	12.6	3.6	100.0	3.38
	소득 상위	1.9	9.4	22.1	33.4	18.9	14.3	100.0	4.06
2019	소득 하위	36.7	47.7	10.1	4.3	0.9	0.3	100.0	1.86
	소득 중위	4.7	24.2	34.9	26.8	6.7	2.6	100.0	3.15
	소득 상위	1.2	6.3	29.5	39.6	16.4	7.1	100.0	3.86
2023	소득 하위	43.0	43.3	9.9	2.7	0.8	0.2	100.0	1.76
	소득 중위	5.3	30.3	34.8	22.7	5.9	0.9	100.0	2.97
	소득 상위	1.4	18.8	22.6	41.2	10.7	5.3	100.0	3.59

주: 소득 상위 1인가구는 표본 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 가구(2.85명), 내부기관 장애 가구(2.13명),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2.09명) 순으로 평균 가구원수가 많음

- 2019년부터 장애유형별 가구원수는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 순으로 가구원수가 많은 경향이었음

-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와 내부기관 장애 가구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III-10. 장애유형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 %, 명)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계	평균 가구원수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14.9	35.4	20.5	16.7	8.0	4.6	100.0	2.83
	내부기관 장애	16.6	34.6	18.6	17.9	7.2	5.1	100.0	2.82
	정신적 장애	9.0	22.5	29.4	24.2	11.5	3.3	100.0	3.18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22.0	38.6	17.4	13.5	5.9	2.6	100.0	2.51
	내부기관 장애	20.8	40.0	19.0	13.5	3.9	2.8	100.0	2.49
	정신적 장애	12.2	24.5	29.3	22.7	9.0	2.2	100.0	2.99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28.0	41.0	15.6	11.2	3.0	1.2	100.0	2.24
	내부기관 장애	28.0	39.2	17.6	10.6	3.9	0.8	100.0	2.26
	정신적 장애	16.9	26.8	28.8	19.0	5.6	3.0	100.0	2.79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32.9	40.6	14.8	9.0	2.2	0.5	100.0	2.09
	내부기관 장애	31.6	39.4	16.9	9.4	2.1	0.6	100.0	2.13
	정신적 장애	16.4	23.6	30.1	20.7	7.2	1.9	100.0	2.85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정도별 가구원수는 심한 장애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2.46명으로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2.05명)에 비해 많음

-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의 1인가구 비율은 34.1%로 심한 장애 가구(24.2%)에 비해 높고, 2019년(29.8%)에 비해서도 증가함

표 III-11. 장애정도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 %, 명)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계	평균 가구원수
2009	심한 장애	13.2	31.8	22.8	18.5	9.4	4.3	100.0	2.93
	심하지 않은 장애	15.2	35.6	20.2	16.8	7.6	4.6	100.0	2.81
2015	심한 장애	18.6	33.7	20.4	16.6	7.3	3.3	100.0	2.71
	심하지 않은 장애	22.3	39.2	17.8	13.2	5.4	2.1	100.0	2.47
2019	심한 장애	20.8	37.0	21.8	13.5	5.0	1.9	100.0	2.51
	심하지 않은 장애	29.8	40.2	14.9	11.4	2.5	1.2	100.0	2.20
2023	심한 장애	24.2	33.1	22.1	15.2	4.2	1.1	100.0	2.46
	심하지 않은 장애	34.1	41.1	14.1	8.1	2.1	0.5	100.0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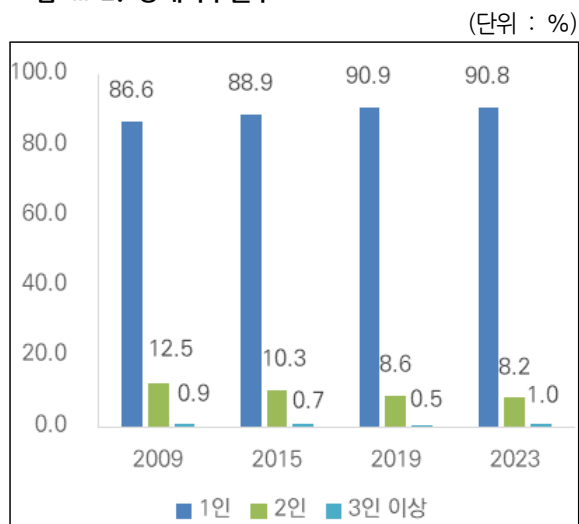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장애가구원수

○ 장애인가구의 평균 장애가구원수는 1.11명으로 2019년(1.10명)과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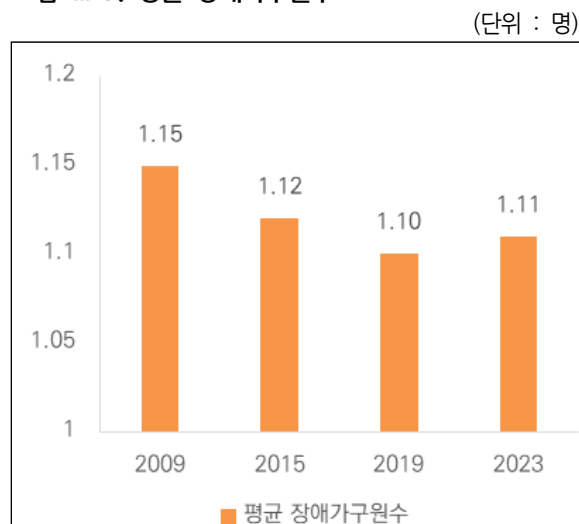
- 장애인가구의 장애가구원수가 1인인 비율은 90.8%로 나타남
- 장애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가구 비율은 1.0%로 2019년(0.5%)에 대비 증가함

그림 Ⅲ-2. 장애가구원수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Ⅲ-3. 평균 장애가구원수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Ⅲ-12. 장애가구원수 분포

(단위 : %, 명)

구분	1인	2인	3인 이상	계	평균 장애가구원수
2009	86.6	12.5	0.9	100.0	1.15
2015	88.9	10.3	0.7	100.0	1.12
2019	90.9	8.6	0.5	100.0	1.10
2023	90.8	8.2	1.0	100.0	1.11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인가구의 평균 장애가구원수는 지역별로 도지역이 1.12명, 수도권과 광역시 등이 1.10명으로 나타남

표 Ⅲ-13. 지역별 장애가구원수 분포

(단위 : %, 명)

구분		1인	2인	3인 이상	계	평균 장애가구원수
2009	수도권	87.3	11.9	0.8	100.0	1.14
	광역시 등	88.3	10.6	1.0	100.0	1.13
	도지역	85.0	14.0	1.0	100.0	1.16
2015	수도권	89.5	9.9	0.6	100.0	1.11
	광역시 등	88.9	10.3	0.8	100.0	1.12
	도지역	88.3	10.9	0.9	100.0	1.13
2019	수도권	91.9	7.8	0.3	100.0	1.08
	광역시 등	89.0	10.1	0.9	100.0	1.12
	도지역	90.8	8.7	0.5	100.0	1.10
2023	수도권	91.8	7.3	0.9	100.0	1.10
	광역시 등	91.0	8.2	0.8	100.0	1.10
	도지역	89.7	9.2	1.1	100.0	1.12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인가구의 장애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는 수도권(91.8%), 광역시 등(91.0%), 도지역(89.7%)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소득 하위 가구의 평균 장애가구원수가 1.11명으로 가장 많으며, 소득 중위와 소득 상위 가구는 1.09명으로 같은 수준임

- 장애가구원수가 1명인 비율이 소득 상위 가구가 92.2%로 소득 중위 가구(91.5%), 소득 하위 가구(90.4%)에 비해 높음

표 III-14. 소득수준별 장애가구원수 분포

(단위 : %, 명)

구분		1인	2인	3인 이상	계	평균 장애가구원수
2009	소득 하위	85.3	13.6	1.0	100.0	1.16
	소득 중위	89.3	9.9	0.7	100.0	1.11
	소득 상위	92.0	7.9	0.1	100.0	1.08
2015	소득 하위	88.0	11.2	0.8	100.0	1.13
	소득 중위	90.7	8.6	0.6	100.0	1.10
	소득 상위	91.2	8.2	0.6	100.0	1.09
2019	소득 하위	89.4	10.1	0.4	100.0	1.11
	소득 중위	93.9	5.3	0.9	100.0	1.07
	소득 상위	93.5	6.5	-	100.0	1.07
2023	소득 하위	90.4	8.7	0.9	100.0	1.11
	소득 중위	91.5	7.6	0.8	100.0	1.09
	소득 상위	92.2	6.3	1.5	100.0	1.09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 가구의 평균 장애가구원수가 1.23명으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정신적 장애 가구는 장애가구원이 1인인 비율이 2019년 89.1%에서 2023년 83.6%로 감소했으며, 다른 장애유형은 2019년 대비 장애가구원수가 1인인 비율이 증가함

표 III-15. 장애유형별 장애가구원수 분포

(단위 : %, 명)

구분		1인	2인	3인 이상	계	평균 장애가구원수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87.1	12.3	0.6	100.0	1.14
	내부기관 장애	89.7	9.8	0.6	100.0	1.11
	정신적 장애	80.9	15.5	3.6	100.0	1.24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89.5	10.1	0.4	100.0	1.11
	내부기관 장애	90.6	8.4	1.0	100.0	1.10
	정신적 장애	83.3	13.2	3.6	100.0	1.21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91.0	8.7	0.4	100.0	1.09
	내부기관 장애	93.8	6.0	0.1	100.0	1.06
	정신적 장애	89.1	9.5	1.4	100.0	1.13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91.7	7.8	0.5	100.0	1.09
	내부기관 장애	94.1	5.5	0.5	100.0	1.06
	정신적 장애	83.6	12.1	4.3	100.0	1.23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정도별로는 심한 장애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1.14명)가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1.08명)에 비해 많음
 - 장애가구원수가 1인인 비율은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가 92.0%로 심한 장애 가구(88.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6. 장애정도별 장애가구원수 분포

(단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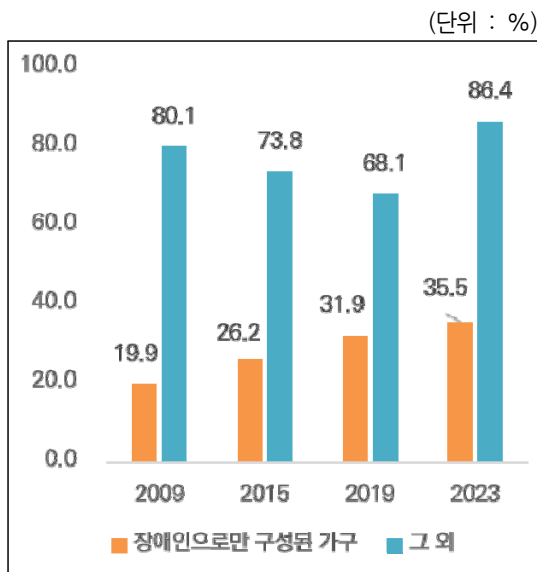
구분		1인	2인	3인 이상	계	평균 장애가구원수
2009	심한 장애	84.2	14.2	1.6	100.0	1.18
	심하지 않은 장애	88.3	11.2	0.4	100.0	1.12
2015	심한 장애	86.8	11.8	1.4	100.0	1.15
	심하지 않은 장애	90.2	9.4	0.4	100.0	1.10
2019	심한 장애	88.1	11.2	0.8	100.0	1.13
	심하지 않은 장애	92.5	7.1	0.3	100.0	1.08
2023	심한 장애	88.5	9.5	2.0	100.0	1.14
	심하지 않은 장애	92.0	7.5	0.4	100.0	1.08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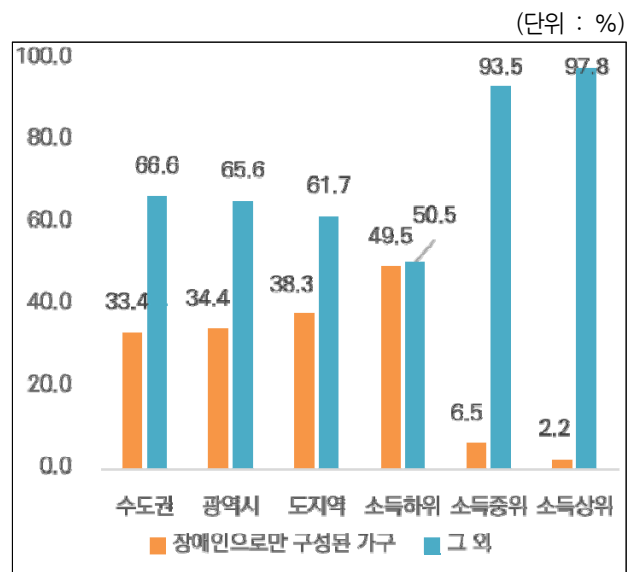
- 장애인가구 중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1인 가구 포함)는 2023년 35.5%로,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장애인 1인가구 비율은 2009년 71.9%, 2015년 79.7%, 2019년 83.2%, 2023년 86.4%로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

그림 III-4.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III-5. 지역별 소득수준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표 III-17.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그 외	계
		1인	2인 이상	소계		
2009	19.9	71.9	28.1	100.0	80.1	100.0
2015	26.2	79.7	20.3	100.0	73.8	100.0
2019	31.9	83.2	16.8	100.0	68.1	100.0
2023	35.5	86.4	13.6	100.0	64.5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지역별로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도지역이 38.3%로 가장 높고, 광역시 등(34.4%), 수도권(33.4%)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 중 1인가구인 비율은 수도권이 88.8%로 가장 높고, 광역시 등(86.8%), 도지역(83.9%) 순임

표 III-18. 지역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그 외	계
			1인	2인 이상	소계		
2009	수도권	18.4	73.4	26.6	100.0	81.6	100.0
	광역시 등	20.7	78.4	21.6	100.0	79.3	100.0
	도지역	21.2	67.5	32.5	100.0	78.8	100.0
2015	수도권	24.1	82.5	17.5	100.0	75.9	100.0
	광역시 등	24.8	81.5	18.5	100.0	75.2	100.0
	도지역	29.2	76.5	23.5	100.0	70.8	100.0
2019	수도권	28.9	84.4	15.6	100.0	71.1	100.0
	광역시 등	33.2	84.1	15.9	100.0	66.8	100.0
	도지역	34.4	81.7	18.3	100.0	65.6	100.0
2023	수도권	33.4	88.8	11.2	100.0	66.6	100.0
	광역시 등	34.4	86.8	13.2	100.0	65.6	100.0
	도지역	38.3	83.9	16.1	100.0	61.7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수준별로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 비율은 소득 하위 가구가 49.5%로 가장 높고, 소득 중위 가구(6.5%) 및 소득 상위 가구(2.2%)와 차이가 매우 큼

- 소득 하위 가구는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 중 1인가구인 비율(86.9%)도 2019년(83.0%) 대비 증가함

표 III-19. 소득수준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그 외	계
			1인	2인 이상	소계		
2009	소득 하위	26.8	72.4	27.6	100.0	73.2	100.0
	소득 중위	2.5	55.6	44.4	100.0	97.5	100.0
	소득 상위	2.7	73.3	26.7	100.0	97.3	100.0
2015	소득 하위	36.7	80.3	19.7	100.0	63.3	100.0
	소득 중위	3.6	57.7	42.3	100.0	96.4	100.0
	소득 상위	2.1	91.9	8.1	100.0	97.9	100.0
2019	소득 하위	44.2	83.0	17.0	100.0	55.8	100.0
	소득 중위	5.7	82.8	17.2	100.0	94.3	100.0
	소득 상위	1.2	96.5	3.5	100.0	98.8	100.0
2023	소득 하위	49.5	86.9	13.1	100.0	50.5	100.0
	소득 중위	6.5	80.7	19.3	100.0	93.5	100.0
	소득 상위	2.2	63.8	36.2	100.0	97.8	100.0

주 :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중 소득 상위는 표본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로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 비율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37.5%)와 내부기관 장애 가구(35.0%)가 유사한 수준이며, 정신적 장애 가구(23.5%)는 낮게 나타남

- 모든 장애 유형에서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이 모두 증가함
- 2023년 기준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 중 1인인 가구 비율은 내부기관 장애 가구(90.1%),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87.8%), 정신적 장애 가구(69.9%) 순으로 높음

표 III-20. 장애유형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그 외	계
			1인	2인 이상	소계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20.4	72.9	27.1	100.0	79.6	100.0
	내부기관 장애	22.4	74.1	25.9	100.0	77.6	100.0
	정신적 장애	15.1	59.9	40.1	100.0	84.9	100.0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27.4	80.3	19.7	100.0	72.6	100.0
	내부기관 장애	26.3	78.9	21.1	100.0	73.7	100.0
	정신적 장애	16.8	73.0	27.0	100.0	83.2	100.0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33.5	83.4	16.6	100.0	66.5	100.0
	내부기관 장애	32.3	86.6	13.4	100.0	67.7	100.0
	정신적 장애	21.3	79.1	20.9	100.0	78.7	100.0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37.5	87.8	12.2	100.0	62.5	100.0
	내부기관 장애	35.0	90.1	9.9	100.0	65.0	100.0
	정신적 장애	23.5	69.9	30.1	100.0	76.5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정도별로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 비율은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38.5%)가 심한 장애 가구(29.9%)에 비해 높음

-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 중 1인 가구인 비율은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가 88.7%로 심한 장애 가구 81.0%보다 다소 높음

표 Ⅲ-21. 장애정도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그 외	계
			1인	2인 이상	소계		
2009	심한 장애	19.4	68.3	31.7	100.0	80.6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20.4	74.5	25.5	100.0	79.6	100.0
2015	심한 장애	24.2	76.8	23.2	100.0	75.8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27.4	81.2	18.8	100.0	72.6	100.0
2019	심한 장애	27.1	76.8	23.2	100.0	72.9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34.6	86.1	13.9	100.0	65.4	100.0
2023	심한 장애	29.9	81.0	19.0	100.0	70.1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38.5	88.7	11.3	100.0	61.5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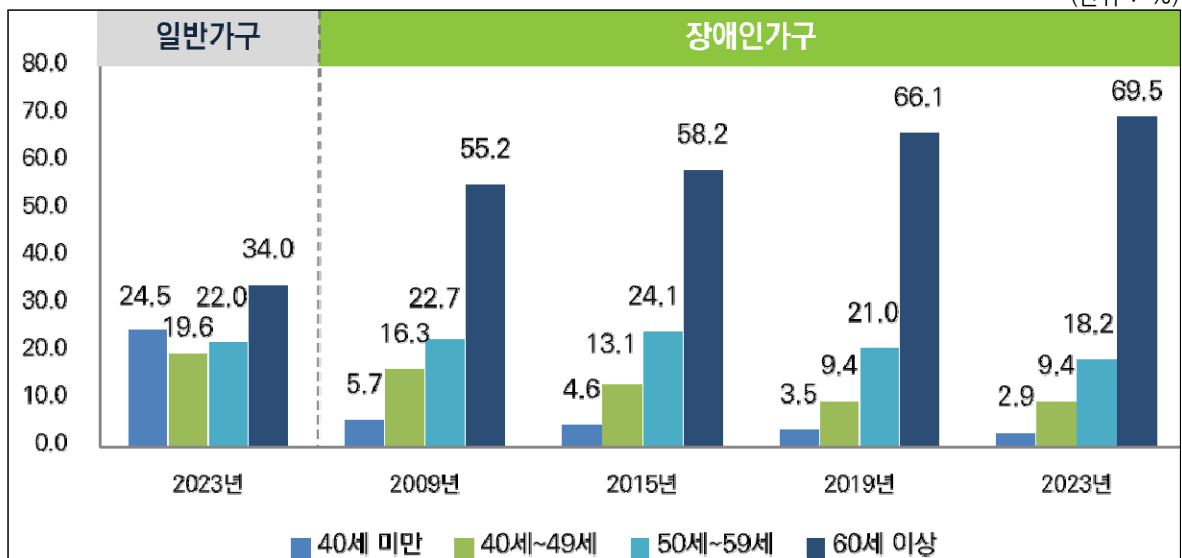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 분포

○ 2023년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6.2세로 2009년부터 증가하고 있음

- 일반가구와 장애인가구 모두 2019년 대비 2023년에 가구주 평균 연령이 증가함
 - 특히, 65세 이상 고령가구주 비율은 2023년 57.0%로 2019년(54.0%) 대비 3.0%p 높아졌고, 2023년 일반가구의 고령가구주 비율 24.1%에 비해서도 매우 높음

그림 Ⅲ-6.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 %)



자료1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22.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 %, 세)

구분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계	평균 연령
일반가구	2008	25.9	24.1	18.3	31.7	23.8	100.0	51.4
	2014	24.3	23.5	24.0	28.3	21.2	100.0	51.4
	2019	25.6	21.6	23.4	29.4	20.8	100.0	51.3
	2023	24.5	19.6	22.0	34.0	24.1	100.0	52.2
장애인가구	2009	5.7	16.3	22.7	55.2	42.7	100.0	60.5
	2015	4.6	13.1	24.1	58.2	47.3	100.0	62.6
	2019	3.5	9.4	21.0	66.1	54.0	100.0	65.3
	2023	2.9	9.4	18.2	69.5	57.0	100.0	66.2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인가구의 지역별 평균 가구주 연령은 도지역(67.6세), 광역시 등(65.7세), 수도권(65.1세) 순으로 높음
- 65세 이상 고령가구주 비율은 도지역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3. 지역별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 %, 세)

구분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계	평균 연령
2009	수도권	6.8	18.0	23.9	51.4	38.5	100.0	59.3
	광역시 등	5.5	16.3	24.4	53.8	40.0	100.0	60.2
	도지역	4.8	14.4	20.7	60.1	48.3	100.0	62.1
2015	수도권	4.4	15.6	25.9	54.1	42.5	100.0	61.2
	광역시 등	5.0	11.1	23.4	60.5	48.7	100.0	62.8
	도지역	4.6	11.3	22.5	61.5	51.7	100.0	64.0
2019	수도권	3.8	11.9	22.3	62.0	48.8	100.0	64.0
	광역시 등	4.4	6.9	27.5	61.2	48.8	100.0	63.8
	도지역	2.6	8.0	16.4	72.9	62.2	100.0	67.6
2023	수도권	3.0	11.2	19.0	66.8	53.5	100.0	65.1
	광역시 등	3.1	8.7	19.7	68.5	56.4	100.0	65.7
	도지역	2.6	7.9	16.5	73.1	61.1	100.0	67.6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 하위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이 69.3세로 가장 높게 나타남
- 65세 이상 고령가구주 비율은 소득 하위 가구가 67.6%로 가장 높고, 소득 중위 가구 37.8%, 소득 상위 가구 23.5% 순임
 - 모든 소득수준별 가구에서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4. 소득수준별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 %, 세)

구분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계	평균 연령
2009	소득 하위	4.2	12.7	19.4	63.7	51.2	100.0	62.9
	소득 중위	9.7	25.4	30.3	34.5	22.0	100.0	54.6
	소득 상위	9.5	25.9	35.2	29.4	16.4	100.0	53.9
2015	소득 하위	3.6	9.3	19.9	67.2	56.6	100.0	65.2
	소득 중위	6.8	19.9	32.3	41.1	29.1	100.0	57.3
	소득 상위	7.2	25.4	36.7	30.7	19.5	100.0	55.1
2019	소득 하위	2.0	5.9	15.3	76.7	66.2	100.0	68.7
	소득 중위	6.9	17.0	32.6	43.5	27.3	100.0	57.8
	소득 상위	5.9	19.5	37.8	36.8	22.8	100.0	56.9
2023	소득 하위	2.4	6.1	12.5	78.9	67.6	100.0	69.3
	소득 중위	3.6	15.4	28.2	52.8	37.8	100.0	60.5
	소득 상위	5.5	20.1	35.3	39.1	23.5	100.0	57.0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로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67.6세)의 가구주 연령이 가장 높고, 내부기관 장애 가구(63.5세), 정신적 장애 가구(59.1%) 순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고령자가가구주 비율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가 61.6%로 가장 높음

표 III-25. 장애유형별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 %, 세)

구분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계	평균 연령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5.3	14.9	22.0	57.8	44.9	100.0	61.2
	내부기관 장애	6.3	16.0	25.9	51.8	37.5	100.0	59.2
	정신적 장애	9.3	27.5	27.1	36.2	26.9	100.0	55.7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4.3	12.0	22.8	60.9	50.2	100.0	63.4
	내부기관 장애	4.3	13.4	29.7	52.6	38.8	100.0	60.5
	정신적 장애	7.0	21.8	31.6	39.6	28.3	100.0	57.4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3.3	8.2	19.0	69.4	57.7	100.0	66.3
	내부기관 장애	2.5	12.5	25.1	59.9	44.9	100.0	63.0
	정신적 장애	4.7	15.7	32.0	47.6	34.6	100.0	60.1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2.4	7.8	16.4	73.5	61.6	100.0	67.6
	내부기관 장애	3.0	10.4	22.3	64.2	48.7	100.0	63.5
	정신적 장애	5.6	19.2	27.4	47.7	32.4	100.0	59.1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정도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68.5세)이 심한 장애 가구(61.9세)에 비해 높았음

- 65세 이상 고령자가가구주 비율이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64.2%)와 심한 장애 가구(43.4%) 간의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남

표 III-26. 장애정도별 가구주 연령 분포

(단위 : %, 세)

구분		40세 미만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65세 이상	계	평균 연령
2009	심한 장애	7.0	19.0	24.8	49.2	38.1	100.0	59.2
	심하지 않은 장애	4.8	14.3	21.2	59.7	46.1	100.0	61.5
2015	심한 장애	4.8	16.4	28.4	50.4	39.3	100.0	60.5
	심하지 않은 장애	4.5	11.1	21.5	62.9	52.0	100.0	63.9
2019	심한 장애	3.5	12.2	27.3	56.9	44.3	100.0	62.8
	심하지 않은 장애	3.4	7.9	17.4	71.4	59.6	100.0	66.8
2023	심한 장애	4.8	14.0	22.7	58.5	43.4	100.0	61.9
	심하지 않은 장애	1.8	7.0	15.7	75.4	64.2	100.0	68.5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가계수지

○ 2023년 장애인가구의 평균 월소득(세금 등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은 236.5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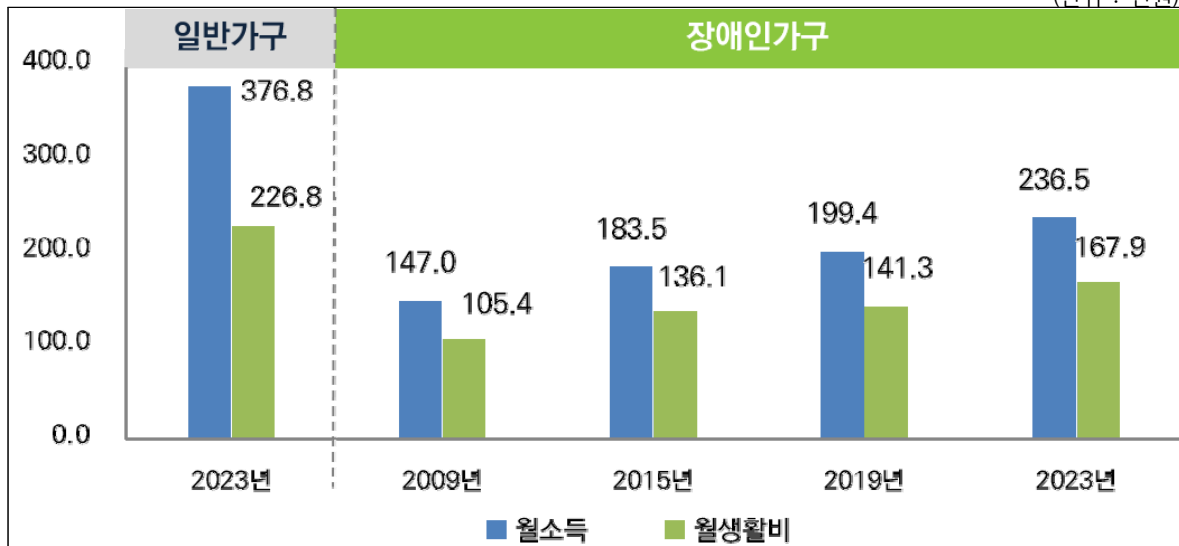
- 장애인가구의 평균 월소득은 2019년 대비 2023년에 증가했으나('19년 199.4만 원 → '23년 236.5만 원), 2023년 일반가구의 평균 월소득(376.8만 원)보다는 매우 낮음

○ 장애인가구의 평균 생활비⁵⁾는 167.9만 원, 주거관리비⁶⁾⁷⁾는 동절기 20.1만 원임

- 장애인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1.0%로 일반가구 60.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동절기 기준 8.5%로 일반가구 5.8%에 비해 높음

그림 III-7. 월평균 소득 및 생활비

(단위 : 만원)



자료1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5) 생활비란 식비, 주거관리비, 의료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비용의 월평균 합계를 말하며, 주택임대료 및 저축과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나 특별한 일로 지출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6) 주거관리비란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을 말하며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유지비는 포함되지 않음

7)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부터 주거관리비는 동·간·하절기를 분리하여 응답받아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가 어려움

표 III-27. 가계수지

(단위 : 만원, %)

구분		월소득(A)	월평균 생활비(B)	B/A	월평균 주거관리비(C)			C/A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
일반 가구	2008	239.4	142.4	59.5	21.2			8.9		
	2014	280.7	175.3	62.5	20.4			7.3		
	2019	315.5	204.6	64.8	20.1	13.1	14.1	6.4	4.2	4.5
	2023	376.8	226.8	60.2	21.7	14.9	17.0	5.8	4.0	4.5
장애인 가구	2009	147.0	105.4	71.7	19.3			13.1		
	2015	183.5	136.1	74.2	17.4			9.5		
	2019	199.4	141.3	70.9	18.8	11.5	11.5	9.4	5.8	5.8
	2023	236.5	167.9	71.0	20.1	12.9	14.4	8.5	5.4	6.1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지역별로 소득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가 251.1만 원, 생활비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가 179.8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득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역시 등(72.1%), 도지역(71.7%), 수도권(69.8%) 순임
- 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중은 동절기 기준 도지역(9.5%)이, 하절기 기준 광역시 등(6.3%)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8. 지역별 가계수지

(단위 : 만원, %)

구분		월소득(A)	월평균 생활비(B)	B/A	월평균 주거관리비(C)			C/A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
2009	수도권	159.7	111.8	70.0	21.7			13.6		
	광역시 등	149.4	109.1	73.0	16.4			11.0		
	도지역	132.4	96.8	73.1	18.1			13.7		
2015	수도권	203.1	147.8	72.8	19.4			9.6		
	광역시 등	186.7	140.5	75.2	16.2			8.7		
	도지역	160.9	121.4	75.5	15.8			9.8		
2019	수도권	228.0	161.2	70.7	20.1	12.3	12.4	8.8	5.4	5.4
	광역시 등	195.5	137.6	70.4	16.1	11.1	12.1	8.2	5.7	6.2
	도지역	171.2	121.9	71.2	18.7	10.8	10.3	10.9	6.3	6.0
2023	수도권	251.1	175.3	69.8	20.1	13.1	15.3	8.0	5.2	6.1
	광역시 등	249.6	179.8	72.1	19.3	14.2	15.8	7.7	5.7	6.3
	도지역	214.8	154.0	71.7	20.4	11.9	12.7	9.5	5.6	5.9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별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소득 하위 가구가 132.8만 원, 소득 중위 가구가 393.5만 원, 소득 상위 가구가 770.2만 원으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 생활비와 주거관리비(동절기 기준)는 소득 하위 가구가 각각 115.1만 원과 17.4만 원, 소득 중위 가구가 각각 251.2만 원, 24.4만 원, 소득 상위 가구가 406.3만 원, 30.1만 원으로 조사됨
 - 생활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하위 가구가 86.7%로 가장 높고, 소득 중위 가구 63.8%, 소득 상위 가구 52.7% 순으로 나타남
 - 동절기 기준으로 주거관리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 하위 가구 13.1%, 소득 중위 가구 6.2%, 소득 상위 가구 3.9%로 나타나, 2019년 대비 모두 소폭 감소함

표 Ⅲ-29. 소득수준별 가계수지

(단위 : 만원, %)

구분		월소득(A)	월평균 생활비(B)	B/A	월평균 주거관리비(C)			C/A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
2009	소득 하위	82.1	70.4	85.7	16.1			19.6		
	소득 중위	252.0	177.5	70.4	25.6			10.2		
	소득 상위	550.3	262.4	47.7	35.6			6.5		
2015	소득 하위	98.5	89.5	90.9	14.9			15.1		
	소득 중위	294.2	207.3	70.5	21.3			7.2		
	소득 상위	565.9	320.3	56.6	26.7			4.7		
2019	소득 하위	109.9	94.4	85.9	16.4	9.5	9.3	14.9	8.6	8.5
	소득 중위	331.4	221.0	66.7	22.7	14.6	15.2	6.8	4.4	4.6
	소득 상위	619.2	325.5	52.6	27.8	18.6	19.3	4.5	3.0	3.1
2023	소득 하위	132.8	115.1	86.7	17.4	10.8	11.8	13.1	8.1	8.9
	소득 중위	393.5	251.2	63.8	24.4	16.1	18.2	6.2	4.1	4.6
	소득 상위	770.2	406.3	52.7	30.1	20.9	24.4	3.9	2.7	3.2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로 월평균 가구소득은 정신적 장애 가구(268.9만 원), 내부기관 장애 가구(253.0만 원),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230.1만 원) 순으로 나타남
- 월평균 생활비는 정신적 장애 가구(195.3만 원), 내부기관 장애 가구(176.5만 원),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162.9만 원) 순으로 나타남
 - 생활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신적 장애 가구가 72.6%로 가장 높음
- 동절기 기준 월평균 주거관리비는 내부기관 장애 가구(21.1만 원), 정신적 장애 가구(20.5만 원),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19.9만 원) 순으로 높음
 - 그러나, 주거관리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8.6%), 내부기관 장애 가구(8.4%), 정신적 장애 가구(7.6%) 순으로 나타남

표 Ⅲ-30. 장애유형별 가계수지

(단위 : 만 원, %)

구분		월소득(A)	월평균 생활비(B)	B/A	월평균 주거관리비(C)			C/A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147.9	105.1	71.1	19.3			13.0		
	내부기관 장애	146.3	106.3	72.7	18.7			12.8		
	정신적 장애	139.6	107.3	76.9	19.4			13.9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182.2	135.3	74.3	17.4			9.5		
	내부기관 장애	195.3	140.4	71.9	18.3			9.4		
	정신적 장애	187.9	140.8	74.9	17.1			9.1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195.6	137.9	70.5	18.7	11.4	11.4	9.6	5.8	5.8
	내부기관 장애	208.5	152.5	73.1	19.2	12.6	12.7	9.2	6.0	6.1
	정신적 장애	219.6	158.3	72.1	19.1	11.6	12.0	8.7	5.3	5.5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230.1	162.9	70.8	19.9	12.7	14.2	8.6	5.5	6.2
	내부기관 장애	253.0	176.5	69.8	21.1	14.0	15.7	8.4	5.5	6.2
	정신적 장애	268.9	195.3	72.6	20.5	13.5	15.0	7.6	5.0	5.6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정도별 월평균 가구소득은 심한 장애 가구 245.2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 231.9만 원으로 나타남
 - 생활비가 월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심한 장애 가구 72.8%,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 70.0%임
- 생활비는 심한 장애 가구 178.5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 162.3만 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고, 동절기 기준 주거관리비는 유사한 수준임(심한 장애 20.1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 20.0만 원)

표 Ⅲ-31. 장애정도별 가계수지

(단위 : 만원, %)

구분		월소득(A)	월평균 생활비(B)	B/A	월평균 주거관리비(C)			C/A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	동절기	간절기	하절기
2009	심한 장애	138.1	103.7	75.1	19.0			13.8		
	심하지 않은 장애	153.6	106.7	69.5	19.5			12.7		
2015	심한 장애	182.8	139.1	76.1	17.4			9.5		
	심하지 않은 장애	183.9	134.3	73.0	17.4			9.5		
2019	심한 장애	205.3	145.9	71.1	18.7	11.5	11.8	9.1	5.6	5.7
	심하지 않은 장애	196.0	138.7	70.8	18.8	11.4	11.4	9.6	5.8	5.8
2023	심한 장애	245.2	178.5	72.8	20.1	13.3	14.8	8.2	5.4	6.0
	심하지 않은 장애	231.9	162.3	70.0	20.0	12.7	14.2	8.6	5.5	6.1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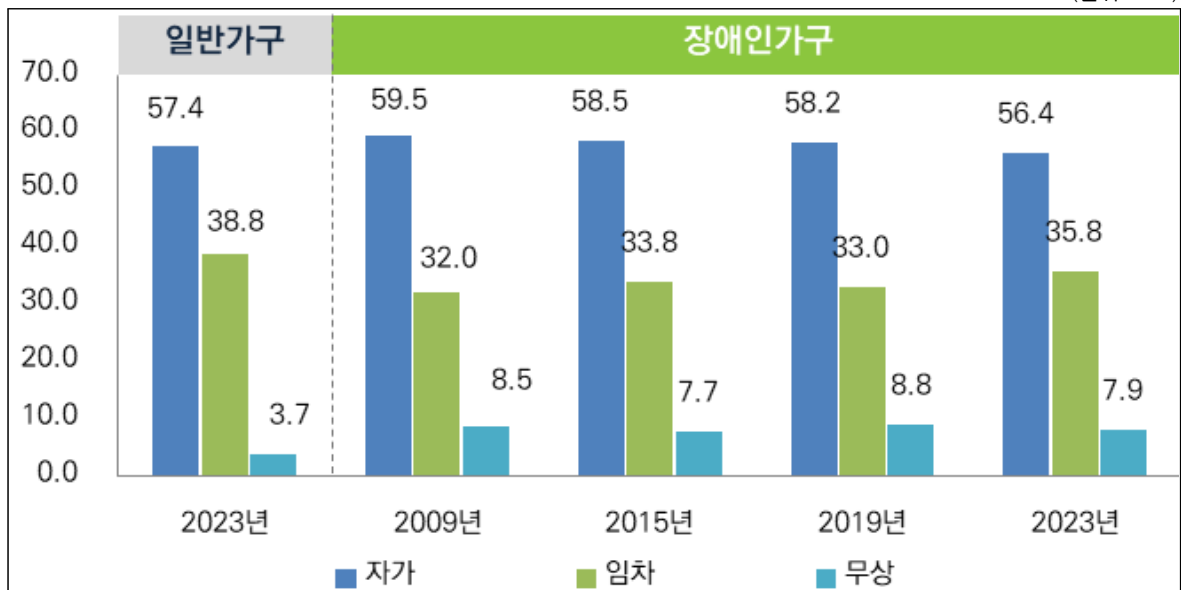
2) 주택 및 주거환경

(1) 점유형태

- 2023년 장애인가구의 점유형태는 자가 56.4%, 보증금 있는 월세 24.2%, 전세 9.5% 순으로, 2019년 대비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2.9%p 증가함
 - 점유형태가 자가인 장애인가구 비율이 2019년 대비 2023년에 1.8%p 감소함
- 무상(7.9%) 비율은 일반가구(3.7%)보다 높게 나타남

그림 Ⅲ-8. 점유형태 분포

(단위 : %)



자료1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Ⅲ-32. 점유형태 분포

(단위 : %)

구분		자가	임차	무상	계
일반가구	2014	53.6	43.5	2.8	100.0
	2019	58.0	38.1	3.9	100.0
	2023	57.4	38.8	3.7	100.0
장애인가구	2009	59.5	32.0	8.5	100.0
	2015	58.5	33.8	7.7	100.0
	2019	58.2	33.0	8.8	100.0
	2023	56.4	35.8	7.9	100.0

주 : 임차에는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일세 등 포함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지역별 장애인가구의 자가 비율은 도지역(63.6%), 광역시 등(57.9%), 수도권(49.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세와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대비 2023년에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증가한 지역은 수도권('19년 25.4% → '23년 29.3%)과 도지역('19년 13.8% → '23년 18.2%)임

표 III-33. 지역별 점유형태 분포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계
2009	수도권	52.0	20.1	19.3	1.8	6.8	100.0
	광역시 등	56.1	10.8	22.1	3.1	7.7	100.0
	도지역	69.2	5.9	10.0	4.2	10.7	100.0
2015	수도권	49.8	17.2	25.8	1.2	5.9	100.0
	광역시 등	59.2	10.2	21.6	2.8	6.2	100.0
	도지역	67.5	4.7	13.3	4.2	10.3	100.0
2019	수도권	51.3	15.3	25.4	1.3	6.7	100.0
	광역시 등	56.9	7.9	27.3	1.7	6.2	100.0
	도지역	66.3	5.1	13.8	2.5	12.3	100.0
2023	수도권	49.2	14.4	29.3	1.8	5.3	100.0
	광역시 등	57.9	8.5	24.7	2.2	6.8	100.0
	도지역	63.6	4.4	18.2	2.6	11.2	100.0

주 :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수준별로 장애인가구의 자가 비율은 소득이 높은 가구 순으로 높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소득이 낮은 순으로 높음

- 자가 : 소득 하위 가구 48.9% < 소득 중위 가구 69.7% < 소득 상위 가구 79.7%
- 보증금 있는 월세 : 소득 상위 가구 6.7% < 소득 중위 가구 13.3% < 소득 하위 가구 30.0%

표 III-34. 소득수준별 점유형태 분포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계
2009	소득 하위	53.2	13.2	19.8	3.8	9.9	100.0
	소득 중위	73.6	11.9	7.9	1.1	5.4	100.0
	소득 상위	83.3	9.9	3.5	0.2	3.2	100.0
2015	소득 하위	51.4	10.9	24.9	3.5	9.3	100.0
	소득 중위	71.9	11.2	11.8	0.9	4.2	100.0
	소득 상위	79.0	11.4	5.0	0.6	3.9	100.0
2019	소득 하위	51.8	9.2	25.4	2.5	11.2	100.0
	소득 중위	68.0	12.2	15.4	0.4	4.0	100.0
	소득 상위	83.5	9.2	5.9	0.1	1.3	100.0
2023	소득 하위	48.9	8.6	30.0	3.0	9.5	100.0
	소득 중위	69.7	11.1	13.3	0.6	5.3	100.0
	소득 상위	79.7	11.7	6.7	-	1.9	100.0

주 :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 자가비율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57.2%), 정신적 장애 가구(53.3%), 내부기관 장애 가구(51.8%) 순임
-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내부기관 장애 가구(27.9%), 정신적 장애 가구(26.7%),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23.5%) 순으로 높으며, 모든 유형이 2019년 대비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이 증가함

표 III-35. 장애유형별 점유형태 분포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계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61.3	12.6	15.1	2.9	8.2	100.0
	내부기관 장애	51.9	13.9	21.2	4.1	8.9	100.0
	정신적 장애	48.6	13.8	22.7	3.9	11.0	100.0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59.5	11.2	19.3	2.6	7.4	100.0
	내부기관 장애	53.6	9.5	25.2	3.3	8.4	100.0
	정신적 장애	52.7	10.2	24.8	2.7	9.6	100.0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59.1	10.0	20.6	1.5	8.7	100.0
	내부기관 장애	54.8	8.7	24.6	2.3	9.6	100.0
	정신적 장애	54.1	9.4	24.1	3.4	9.0	100.0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57.2	9.3	23.5	2.1	7.9	100.0
	내부기관 장애	51.8	11.4	27.9	1.6	7.2	100.0
	정신적 장애	53.3	9.4	26.7	2.6	8.0	100.0

주 :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정도별 점유형태는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58.6%)가 심한 장애 가구(52.2%)보다 자가비율이 높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심한 장애 가구(29.1%)가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21.5%)보다 높게 나타남

표 III-36. 장애정도별 점유형태 분포

(단위 : %)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계
2009	심한 장애	55.3	12.4	19.7	3.3	9.4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62.7	13.0	13.6	2.9	7.8	100.0
2015	심한 장애	53.2	11.0	24.4	2.7	8.7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61.6	11.0	17.6	2.7	7.1	100.0
2019	심한 장애	54.4	10.0	24.9	2.0	8.7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60.4	9.8	19.2	1.7	8.8	100.0
2023	심한 장애	52.2	9.3	29.1	2.0	7.4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58.6	9.6	21.5	2.3	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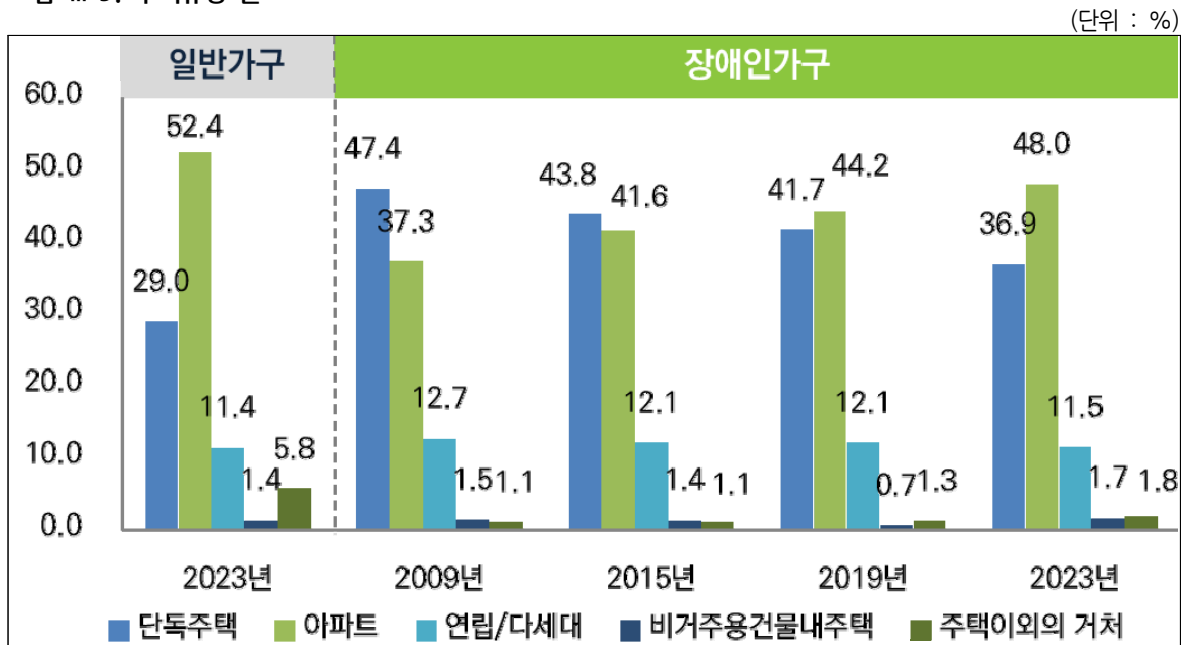
주 : '일세', '사글세 또는 연세'는 '보증금 없는 월세'에 포함하여 분석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2) 주택유형

- 2023년 장애인가구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8.0%로 가장 높으며,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36.9%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아파트 거주 비율은 꾸준히 증가('09년 37.3% → '15년 41.6% → '19년 44.2% → '23년 48.0%)하고,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09년 47.4% → '15년 43.8% → '19년 41.7% → '23년 36.9%)
 -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아파트거주 비율이 낮고(일반가구 52.4%, 장애인 가구 48.0%), 단독주택 거주 비율이 높음(일반가구 29.0%, 장애인 가구 36.9%)
 - 한편, 장애인가구의 주택이외의 거처 거주 비율(1.8%)은 일반가구(5.8%)에 비해 낮음

그림 III-9. 주택유형 분포



자료1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37. 주택유형 분포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주택	주택이외의거처	계
일반가구	2014	37.5	49.6	9.6	1.0	2.2	100.0
	2019	32.1	50.1	11.6	1.6	4.6	100.0
	2023	29.0	52.4	11.4	1.4	5.8	100.0
장애인가구	2009	47.4	37.3	12.7	1.5	1.1	100.0
	2015	43.8	41.6	12.1	1.4	1.1	100.0
	2019	41.7	44.2	12.1	0.7	1.3	100.0
	2023	36.9	48.0	11.5	1.7	1.8	100.0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지역별로 도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55.1%로 가장 높고,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아파트 거주비율이 각각 50.4%, 62.5%로 가장 높음
 - 2019년 대비 2023년에 주택이외의 거쳐 거주 비율이 수도권(1.7% → 2.6%)과 광역시 등(0.9% → 2.4%)에서 증가함

표 III-38. 지역별 주택유형 분포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2009	수도권	34.4	40.5	22.2	1.7	1.3	100.0
	광역시 등	38.4	49.4	9.8	1.7	0.7	100.0
	도지역	65.4	28.1	4.1	1.3	1.1	100.0
2015	수도권	28.9	49.3	18.0	2.0	1.7	100.0
	광역시 등	38.0	49.5	11.4	0.6	0.4	100.0
	도지역	62.6	29.4	6.0	1.2	0.7	100.0
2019	수도권	26.0	52.3	19.3	0.6	1.7	100.0
	광역시 등	29.1	57.3	12.3	0.3	0.9	100.0
	도지역	64.9	29.0	4.2	0.9	1.0	100.0
2023	수도권	24.3	50.4	20.9	1.8	2.6	100.0
	광역시 등	28.8	62.5	4.8	1.5	2.4	100.0
	도지역	55.1	38.0	4.4	1.8	0.7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 하위 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율(42.7%)이 가장 높고,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가구는 소득 중위 가구(58.0%)와 소득 상위 가구(73.9%)임
 - 한편, 소득과 관계없이 꾸준히 아파트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표 III-39. 소득수준별 주택유형 분포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2009	소득 하위	51.9	32.5	12.5	1.7	1.4	100.0
	소득 중위	36.0	48.3	14.2	1.1	0.3	100.0
	소득 상위	35.5	54.8	8.1	1.4	0.2	100.0
2015	소득 하위	49.9	35.0	12.7	1.3	1.1	100.0
	소득 중위	34.7	51.3	11.7	1.4	1.0	100.0
	소득 상위	19.5	69.0	8.5	2.1	0.9	100.0
2019	소득 하위	48.0	38.9	11.5	0.6	1.0	100.0
	소득 중위	30.8	52.6	13.4	0.8	2.3	100.0
	소득 상위	17.0	68.2	14.2	0.7	-	100.0
2023	소득 하위	42.7	42.0	11.8	1.5	2.0	100.0
	소득 중위	26.7	58.0	12.0	2.1	1.2	100.0
	소득 상위	18.1	73.9	4.8	2.1	1.2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모든 장애유형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내부기관 장애 가구 53.3%, 정신적 장애 가구 49.1%,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 47.5%)

- 2019년 대비 2023년에 모든 장애유형에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함(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 1.2% → 1.8%, 내부기관 장애 가구 0.7% → 1.5%, 정신적 장애 가구 1.8% → 2.3%)

표 III-40. 장애유형별 주택유형 분포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48.2	36.7	12.6	1.4	1.2	100.0
	내부기관 장애	46.6	34.4	15.4	2.7	0.9	100.0
	정신적 장애	41.4	43.6	12.7	2.0	0.3	100.0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44.2	41.6	11.8	1.4	1.0	100.0
	내부기관 장애	36.8	45.8	13.6	1.9	1.9	100.0
	정신적 장애	43.6	39.8	13.6	1.8	1.2	100.0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42.2	43.9	12.1	0.6	1.2	100.0
	내부기관 장애	36.1	47.8	14.6	0.8	0.7	100.0
	정신적 장애	40.9	44.8	11.2	1.2	1.8	100.0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37.8	47.5	11.3	1.7	1.8	100.0
	내부기관 장애	32.0	53.3	10.8	2.4	1.5	100.0
	정신적 장애	33.6	49.1	13.3	1.7	2.3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심한 장애 가구와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 모두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각각 52.2%, 45.8%)

-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꾸준히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감소하고, 아파트 거주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표 III-41. 장애정도별 주택유형 분포

(단위 : %)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계
2009	심한 장애	44.2	40.1	12.8	2.0	0.8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49.7	35.2	12.6	1.2	1.3	100.0
2015	심한 장애	42.1	43.5	12.2	1.2	1.0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44.8	40.5	12.0	1.6	1.1	100.0
2019	심한 장애	38.1	47.9	12.1	0.9	1.0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43.8	42.1	12.1	0.5	1.5	100.0
2023	심한 장애	32.3	52.2	12.2	1.4	1.9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39.4	45.8	11.1	1.9	1.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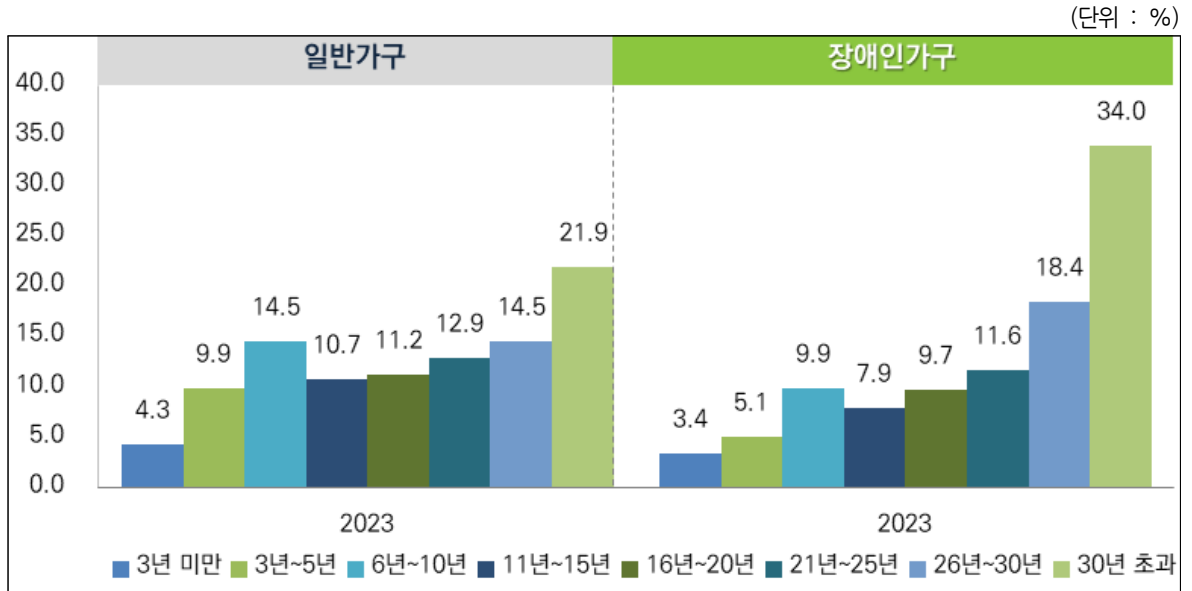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3) 주택건축연도

- 장애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연도가 20년을 초과하는 비율이 64.0%이며, 이 중 30년을 초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34.0%로 나타남

- 일반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연도가 20년 초과 비율은 49.3%로 장애인가구에 비해 낮음

그림 III-10. 주택건축연도 분포



자료1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2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표 III-42. 주택건축연도 분포

(단위 : %)

구분	구분	3년 미만	3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30년 초과	계
일반 가구	2014	4.6	7.1	14.5	15.8	19.8	13.8	8.8	15.6	100.0
	2019	6.2	9.7	11.3	12.5	14.8	15.2	13.4	16.8	100.0
	2023	4.3	9.9	14.5	10.7	11.2	12.9	14.5	21.9	100.0
장애인 가구	2015	5.1	6.8	10.3	11.4	17.2	16.4	7.2	25.5	100.0
	2019	3.8	5.5	6.8	8.1	11.6	15.7	19.9	28.7	100.0
	2023	3.4	5.1	9.9	7.9	9.7	11.6	18.4	34.0	100.0

주. 주택건축연도를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지역별로 주택건축연도가 30년을 초과한 비율이 도지역(41.7%), 광역시 등(36.8%), 수도권(25.1%) 순으로 높음
- 소득수준별로 주택건축연도가 30년을 초과한 비율은 소득 하위 가구(40.4%), 소득 중위 가구(23.2%), 소득 상위 가구(15.8%) 순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그 비율이 높음

표 III-43. 지역별 주택건축연도 분포

(단위 : %)

구분		3년 미만	3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30년 초과	계
2015	수도권	6.5	8.6	12.2	15.0	19.5	19.3	5.4	13.6	100.0
	광역시 등	3.0	4.2	7.8	10.4	17.6	20.5	11.3	25.2	100.0
	도지역	4.9	6.3	9.6	8.4	14.7	11.5	6.9	37.6	100.0
2019	수도권	3.6	7.2	5.9	10.2	15.4	17.7	23.2	16.8	100.0
	광역시 등	3.5	5.0	6.8	5.5	8.2	15.4	26.0	29.7	100.0
	도지역	4.1	3.7	7.8	7.2	9.0	13.7	12.6	41.8	100.0
2023	수도권	3.8	5.6	14.0	7.6	10.0	15.1	18.8	25.1	100.0
	광역시 등	3.8	5.4	6.2	8.1	8.5	8.7	22.5	36.8	100.0
	도지역	2.8	4.5	7.6	8.0	10.0	9.4	15.9	41.7	100.0

주. 주택건축연도를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44. 소득수준별 주택건축연도 분포

(단위 : %)

구분		3년 미만	3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30년 초과	계
2015	소득 하위	4.0	5.7	8.6	9.0	15.5	17.5	7.7	32.1	100.0
	소득 중위	6.3	8.4	12.8	16.3	19.0	13.3	6.8	17.1	100.0
	소득 상위	9.1	9.5	14.6	15.2	24.3	16.6	4.9	5.7	100.0
2019	소득 하위	2.1	4.7	6.2	6.7	10.2	13.9	22.8	33.5	100.0
	소득 중위	6.5	7.4	6.8	10.3	14.5	19.4	14.4	20.6	100.0
	소득 상위	10.9	6.6	10.4	14.2	13.4	19.4	9.3	15.8	100.0
2023	소득 하위	2.9	3.7	8.1	7.4	8.3	10.7	18.4	40.4	100.0
	소득 중위	3.3	7.5	12.1	7.0	13.0	13.7	20.2	23.2	100.0
	소득 상위	8.3	9.2	16.5	12.9	12.7	12.6	12.0	15.8	100.0

주. 주택건축연도를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로 건축한지 20년 초과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정신적 장애 가구(65.0%),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63.9%), 내부기관 장애 가구(63.1%)임
- 건축한지 30년이 초과된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가 34.3%로 가장 높음

표 III-45. 장애유형별 주택건축연도 분포

(단위 : %)

구분		3년 미만	3년~5년	6년~10년	11년 ~15년	16년 ~20년	21년 ~25년	26년 ~30년	30년 초과	계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5.3	6.8	10.3	11.5	17.1	15.9	7.3	25.9	100.0
	내부기관 장애	5.9	6.8	9.2	12.9	18.5	19.7	6.4	20.6	100.0
	정신적 장애	3.4	7.1	10.0	10.5	17.8	19.2	7.0	25.0	100.0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3.5	5.4	7.1	8.0	12.0	15.2	20.0	28.6	100.0
	내부기관 장애	2.5	4.8	5.2	8.4	8.0	19.9	22.7	28.4	100.0
	정신적 장애	6.0	6.3	5.4	8.4	10.2	16.9	17.6	29.1	100.0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3.6	4.9	10.0	7.6	10.1	11.3	18.3	34.3	100.0
	내부기관 장애	3.9	7.2	8.8	9.4	7.5	12.5	19.4	31.2	100.0
	정신적 장애	2.0	5.5	10.4	8.8	8.3	12.9	18.9	33.2	100.0

주. 주택건축연도를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정도별로 건축연도가 20년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 65.4%, 심한 장애 가구 61.3%로 나타남

표 III-46. 장애정도별 주택건축연도 분포

(단위 : %)

구분		3년 미만	3년~5년	6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21년~25년	26년~30년	30년 초과	계
2015	심한 장애	5.6	6.7	10.8	9.4	18.0	19.2	7.0	23.3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4.9	6.8	9.9	12.6	16.8	14.8	7.4	26.8	100.0
2019	심한 장애	4.6	5.8	5.7	8.3	9.9	17.2	19.9	28.7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3.3	5.3	7.4	8.0	12.5	14.9	19.9	28.7	100.0
2023	심한 장애	3.4	6.0	10.8	8.4	10.1	10.3	18.8	32.2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3.4	4.6	9.5	7.6	9.5	12.3	18.2	34.9	100.0

주. 주택건축연도를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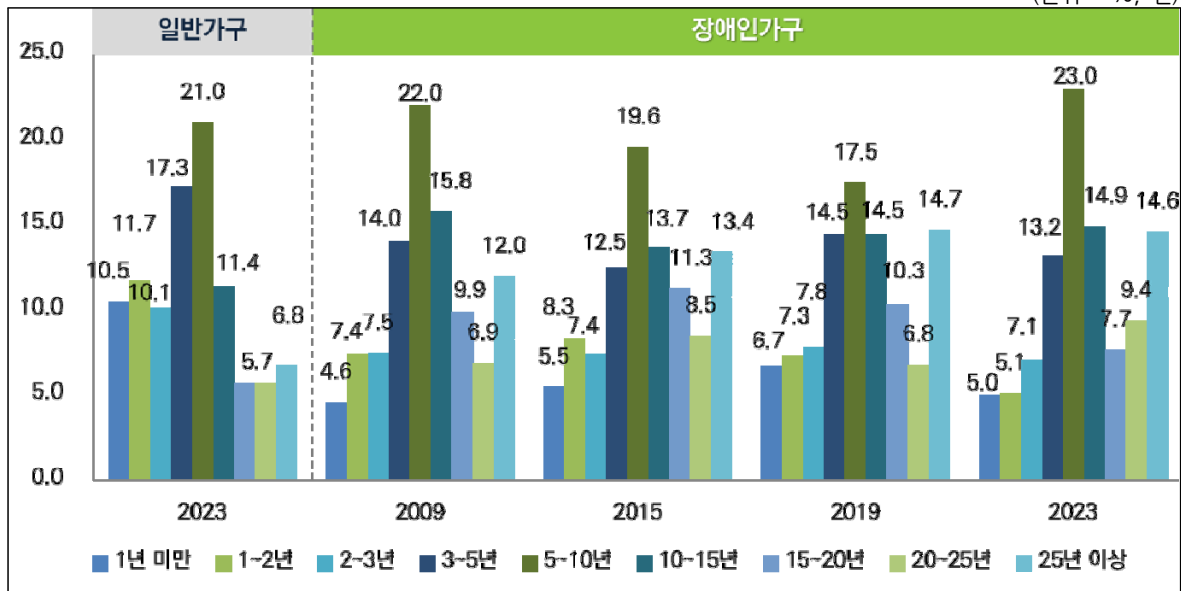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4) 현재주택 거주기간

-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2023년 기준 일반가구가 8.0년, 장애인가구가 12.2년으로 장애인가구의 거주기간이 일반가구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남
- 2023년 장애인가구의 현재주택 거주기간(12.2년)은 2019년(11.8년) 대비 증가함

그림 III-11.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단위 : %, 년)



자료1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47.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단위 : %, 년)

구분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25년	25년 이상	계	평균
일반 가구	2014	13.1	13.4	10.1	14.7	18.4	12.9	6.4	5.0	6.0	100.0	7.7
	2019	13.3	13.1	10.0	16.3	18.4	10.9	6.6	5.0	6.5	100.0	7.7
	2023	10.5	11.7	10.1	17.3	21.0	11.4	5.7	5.7	6.8	100.0	8.0
장애인 가구	2009	4.6	7.4	7.5	14.0	22.0	15.8	9.9	6.9	12.0	100.0	11.6
	2015	5.5	8.3	7.4	12.5	19.6	13.7	11.3	8.5	13.4	100.0	12.0
	2019	6.7	7.3	7.8	14.5	17.5	14.5	10.3	6.8	14.7	100.0	11.8
	2023	5.0	5.1	7.1	13.2	23.0	14.9	7.7	9.4	14.6	100.0	12.2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지역별로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도지역(14.7년), 광역시 등(11.7년), 수도권(10.1년) 순으로 길게 나타남

표 III-48. 지역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단위 : %, 년)

구분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25년	25년 이상	계	평균
2009	수도권	5.2	9.5	9.5	15.7	24.9	14.5	9.0	6.2	5.5	100.0	8.9
	광역시 등	4.5	7.0	8.6	13.6	22.7	18.0	12.5	6.6	6.4	100.0	10.1
	도지역	3.9	5.4	4.9	12.3	18.7	16.0	9.5	7.7	21.6	100.0	15.2
2015	수도권	6.5	10.0	9.1	15.7	21.0	14.0	9.3	7.3	7.1	100.0	9.2
	광역시 등	5.8	8.1	7.2	10.3	19.7	15.5	14.0	9.0	10.4	100.0	11.1
	도지역	4.2	6.6	5.5	10.1	18.0	12.4	12.0	9.4	21.7	100.0	15.5
2019	수도권	7.2	8.2	10.1	18.4	16.4	12.6	11.9	5.4	9.8	100.0	9.7
	광역시 등	7.7	7.9	8.3	12.1	20.6	16.8	9.4	7.0	10.2	100.0	10.2
	도지역	5.6	6.0	5.1	11.4	17.2	15.3	9.0	8.1	22.2	100.0	15.0
2023	수도권	5.6	5.2	7.9	15.0	27.4	13.6	7.5	8.2	9.6	100.0	10.1
	광역시 등	4.8	4.9	6.9	13.5	21.4	17.7	7.5	10.2	13.1	100.0	11.7
	도지역	4.3	5.1	6.4	11.2	18.8	15.0	8.1	10.3	21.0	100.0	14.7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하위 가구가 현재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평균 12.9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중위 가구와 소득 상위 가구의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019년 대비 2023년에 증가함
- 소득 중위 가구 : '19년 9.1년 → '23년 11.0년
 - 소득 상위 가구 : '19년 9.5년 → '23년 9.7년

표 III-49. 소득수준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단위 : %, 년)

구분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25년	25년 이상	계	평균
2009	소득 하위	4.6	7.4	7.1	13.5	21.0	15.2	10.5	7.0	13.7	100.0	12.3
	소득 중위	4.7	7.4	8.0	14.9	25.1	17.1	8.2	6.9	7.6	100.0	9.8
	소득 상위	3.5	6.8	9.9	16.3	24.1	17.4	8.6	4.9	8.5	100.0	10.2
2015	소득 하위	5.6	7.9	7.4	12.9	18.5	13.1	10.6	9.0	15.1	100.0	12.7
	소득 중위	5.1	9.4	6.4	10.8	22.5	14.6	12.7	7.3	11.2	100.0	11.1
	소득 상위	5.7	9.0	9.5	13.7	20.4	16.5	12.7	7.1	5.4	100.0	9.2
2019	소득 하위	6.7	7.4	6.0	13.7	16.8	14.6	10.4	7.0	17.4	100.0	12.9
	소득 중위	7.2	7.4	11.2	16.9	19.1	15.4	8.3	5.6	9.0	100.0	9.1
	소득 상위	6.0	6.8	14.0	11.9	21.2	14.1	12.3	6.6	7.1	100.0	9.5
2023	소득 하위	4.9	5.5	7.2	12.8	21.5	14.2	7.7	9.7	16.6	100.0	12.9
	소득 중위	5.5	3.7	7.3	13.4	25.1	17.0	7.8	8.9	11.2	100.0	11.0
	소득 상위	3.9	6.8	6.4	15.6	26.7	16.4	9.9	7.3	7.0	100.0	9.7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 현재주택 거주기간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가 12.6년, 내부기관 장애 가구 11.2년, 정신적 장애 가구 10.2년으로 나타남

표 III-50. 장애유형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단위 : %, 년)

구분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25년	25년 이상	계	평균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4.3	7.1	7.5	13.7	21.8	15.9	10.1	7.2	12.5	100.0	11.9
	내부기관 장애	5.8	9.7	6.7	14.5	18.9	18.0	9.1	7.6	9.7	100.0	10.6
	정신적 장애	5.7	9.0	8.1	15.8	25.6	13.8	8.6	4.0	9.4	100.0	10.0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5.2	8.2	7.4	12.4	19.2	13.5	11.5	8.7	14.1	100.0	12.3
	내부기관 장애	6.1	8.8	8.2	13.4	20.7	14.7	10.1	9.8	8.3	100.0	10.5
	정신적 장애	7.7	9.5	6.8	12.6	22.4	14.8	9.6	6.2	10.3	100.0	10.4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6.4	7.2	7.9	14.5	17.4	14.3	10.3	6.4	15.7	100.0	12.1
	내부기관 장애	5.6	8.3	8.8	14.1	17.4	15.2	12.8	6.0	11.9	100.0	11.0
	정신적 장애	9.1	7.5	7.0	14.5	18.4	15.8	9.1	9.3	9.4	100.0	10.6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5.1	4.5	7.1	12.7	23.0	14.9	7.8	9.4	15.5	100.0	12.6
	내부기관 장애	3.9	7.0	9.4	13.3	22.0	15.3	6.4	9.3	13.3	100.0	11.2
	정신적 장애	5.0	7.9	6.1	16.5	23.1	14.9	7.6	9.5	9.5	100.0	10.2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12.8년)가 심한 장애 가구(11.0년)보다 현재주택에 더 오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51. 장애정도별 현재주택 거주기간 분포

(단위 : %, 년)

구분		1년 미만	1년 ~2년	2년 ~3년	3년 ~5년	5년 ~10년	10년 ~15년	15년 ~20년	20년 ~25년	25년 이상	계	평균
2009	심한 장애	4.8	7.8	7.4	14.2	23.1	15.5	10.4	5.9	10.8	100.0	11.0
	심하지 않은 장애	4.4	7.1	7.6	13.8	21.3	15.9	9.5	7.6	12.9	100.0	12.0
2015	심한 장애	5.8	8.6	7.1	12.9	21.7	13.7	11.0	7.7	11.6	100.0	11.3
	심하지 않은 장애	5.3	8.2	7.5	12.2	18.3	13.7	11.4	8.9	14.5	100.0	12.5
2019	심한 장애	7.9	5.5	7.5	14.9	18.4	14.7	11.2	6.6	13.4	100.0	11.4
	심하지 않은 장애	6.0	8.3	8.0	14.2	17.0	14.4	9.8	6.9	15.4	100.0	12.1
2023	심한 장애	5.6	6.1	7.8	14.3	23.6	14.6	7.6	8.5	12.0	100.0	11.0
	심하지 않은 장애	4.7	4.5	6.8	12.7	22.6	15.0	7.8	9.8	16.0	100.0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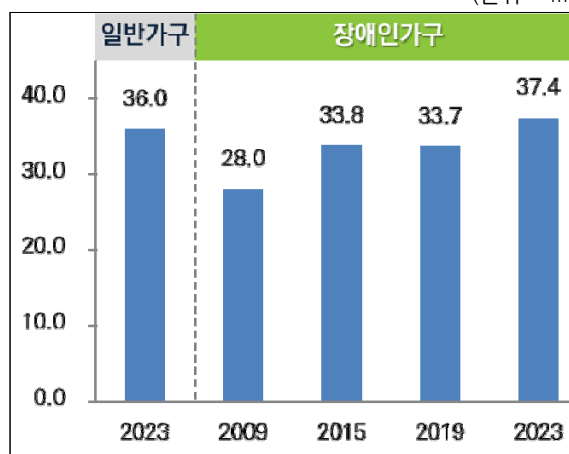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5) 1인당 주거면적 및 방수

- 2023년 장애인가구의 주거면적은 70.2㎡, 1인당 주거면적은 37.4㎡로 나타나, 2019년(각각 66.3㎡, 33.7㎡) 대비 모두 증가함
- 2009년부터 1인당 방수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경향
 - 1인당 방수 : '09년 1.6개 → '15년 1.9개 → '19년 1.9개 → '23년 2.0개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보다 주거면적이 더 넓고, 방수가 더 많으나 차이는 크지 않음

그림 III-12. 1인당 주거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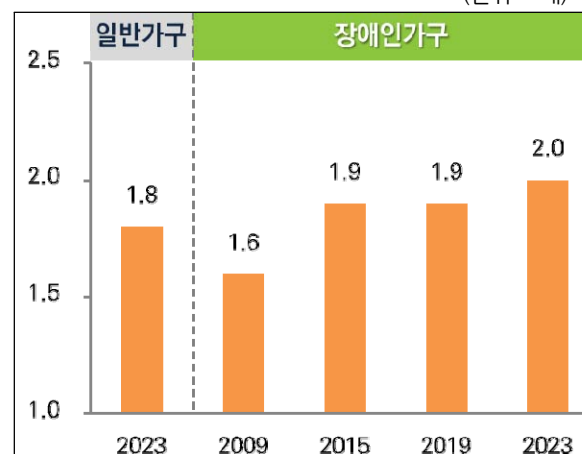
(단위 : ㎡)



자료1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그림 III-13. 1인당 방수

(단위 : 개)



자료1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52. 1인당 주거면적 및 방수

(단위 : m², 개)

구분		주거면적		방수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일반가구	2008	69.3	27.8	3.7	1.5
	2014	71.4	33.5	3.8	1.8
	2019	68.1	32.9	3.5	1.7
	2023	68.9	36.0	3.4	1.8
장애인가구	2009	67.5	28.0	3.7	1.6
	2015	73.4	33.8	3.9	1.9
	2019	66.3	33.7	3.6	1.9
	2023	70.2	37.4	3.5	2.0

주 : 2017년부터 공동주택 주거면적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집계하였으며, 그 결과 전년도 조사에 비해 주거면적이 작게 나타남(분양면적으로 응답 등 행정자료에 비해 응답자가 응답한 면적이 넓음)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가구당 주거면적은 도지역(71.8m²), 광역시 등(70.7m²), 수도권(68.7m²) 순으로 큼
- 1인당 방수도 도지역(2.1개), 광역시 등(2.0개), 수도권(1.8개) 순으로 많음
- 가구당 주거면적은 소득 상위 가구(101.1m²)가 가장 크지만, 1인당 주거면적은 소득 하위 가구(40.5m²)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같은 양상으로 가구당 방수도 소득 상위 가구(4.2개)가 가장 많지만, 1인당 방수도 소득 하위 가구(2.2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53. 지역별 1인당 주거면적 및 방수

(단위 : m², 개)

구분		주거면적		방수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2009	수도권	65.2	25.4	3.6	1.4
	광역시 등	64.4	26.5	3.5	1.5
	도지역	71.5	31.5	3.8	1.7
2015	수도권	72.0	31.0	3.8	1.7
	광역시 등	75.9	34.4	3.9	1.8
	도지역	73.6	36.6	4.0	2.0
2019	수도권	64.0	30.3	3.5	1.8
	광역시 등	63.4	32.3	3.5	1.9
	도지역	70.2	38.1	3.7	2.0
2023	수도권	68.7	35.1	3.5	1.8
	광역시 등	70.7	37.1	3.6	2.0
	도지역	71.8	40.0	3.6	2.1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54. 소득수준별 1인당 주거면적 및 방수

(단위 : m², 개)

구분		주거면적		방수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2009	소득 하위	60.7	29.4	3.5	1.7
	소득 중위	79.1	23.0	4.1	1.2
	소득 상위	108.3	30.3	4.7	1.2
2015	소득 하위	65.0	36.0	3.7	2.1
	소득 중위	86.2	28.8	4.2	1.4
	소득 상위	106.9	30.1	4.6	1.3
2019	소득 하위	60.4	37.0	3.4	2.2
	소득 중위	74.4	26.1	3.8	1.3
	소득 상위	92.8	26.1	4.3	1.2
2023	소득 하위	63.0	40.5	3.4	2.2
	소득 중위	80.8	30.4	3.9	1.5
	소득 상위	101.1	31.4	4.2	1.3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주거면적은 장애유형과 관계없이 2019년 대비 2023년에 모두 증가함

-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 66.5m² → 70.1m², 내부기관 장애 가구 65.9m² → 70.2m², 정신적 장애 가구 65.4m² → 71.1m²

○ 1인당 방수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2019년 대비 2023년에 변화가 없음

표 III-55. 장애유형별 1인당 주거면적 및 방수

(단위 : m², 개)

구분		주거면적		방수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68.3	28.8	3.7	1.6
	내부기관 장애	66.1	27.5	3.6	1.5
	정신적 장애	61.9	21.9	3.5	1.3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73.9	34.8	3.9	1.9
	내부기관 장애	74.1	34.2	3.8	1.8
	정신적 장애	69.3	26.1	3.8	1.5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66.5	34.9	3.6	2.0
	내부기관 장애	65.9	33.4	3.5	1.9
	정신적 장애	65.4	26.3	3.5	1.5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70.1	38.8	3.5	2.0
	내부기관 장애	70.2	37.2	3.5	1.9
	정신적 장애	71.1	28.5	3.6	1.5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가구당 주거면적과 1인당 주거면적 모두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가 심한 장애 가구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II-56. 장애정도별 1인당 주거면적 및 방수

(단위 : m², 개)

구분		주거면적		방수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2009	심한 장애	65.9	26.4	3.6	1.5
	심하지 않은 장애	68.7	29.2	3.7	1.6
2015	심한 장애	71.5	30.8	3.9	1.7
	심하지 않은 장애	74.5	35.7	3.9	1.9
2019	심한 장애	64.9	29.9	3.6	1.7
	심하지 않은 장애	67.1	35.9	3.6	2.0
2023	심한 장애	69.6	33.1	3.5	1.7
	심하지 않은 장애	70.6	39.7	3.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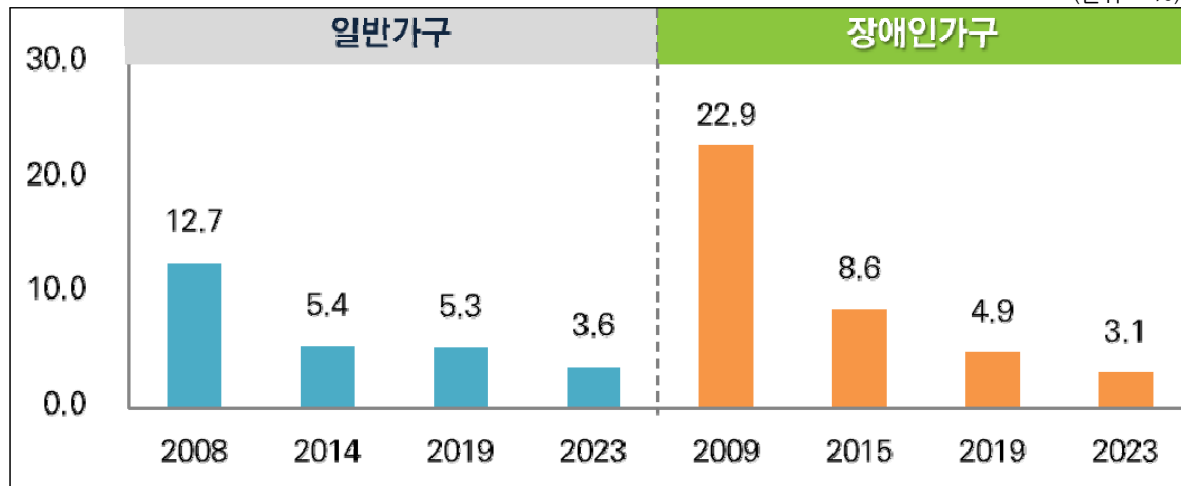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6)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2023년 장애인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3.1%로 2019년 대비 1.8%p 감소함
 - 장애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3.1%)은 일반가구(3.6%)보다 낮음
- 2023년 장애인가구 중 시설기준 미달 가구 1.7%, 면적기준 미달 가구 1.6%, 침실기준 미달 가구 0.3%로, 2019년에 비해 모두 감소함

그림 III-1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5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침실기준 미달
일반가구	2008	12.7	5.3	7.9	1.0
	2014	5.4	2.8	2.9	0.5
	2019	5.3	3.8	3.0	0.3
	2023	3.6	2.7	2.3	0.2
장애인가구	2009	22.9	9.9	15.7	2.1
	2015	8.6	3.6	5.8	0.5
	2019	4.9	2.9	2.1	0.5
	2023	3.1	1.6	1.7	0.3

주1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 중 6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미달비율을 산정

주2 : 침실기준 미달가구는 표본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2023년 지역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수도권이 3.8%로 가장 높고, 도지역(3.0%), 광역시 등(1.7%) 순임
 - 수도권은 면적기준 미달 비율(2.4%)이 가장 높으며, 도지역과 광역시 등은 시설기준 미달 비율이 높음(각각 2.1%, 1.1%)
-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하위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3.7%)이 가장 높으며, 소득 상위 가구는 0.4%로 매우 낮음
 - 최저주거기준 중 시설기준 미달 비율도 소득 하위 가구가 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정신적 장애 가구가 4.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심한 장애 가구 중 3.8%,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 중 2.8%로 나타남
- 가구구성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1인가구(3.3%)와 2인 이상 가구(3.0%)가 유사한 수준이나, 1인가구는 시설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3.0%로 높고, 2인 이상 가구는 면적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1.8%로 높게 나타남

표 III-5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분포

(단위 : %)

구분			최저주거기준 미달	면적기준 미달	시설기준 미달	침실기준 미달
지역별	2015	수도권	7.4	5.4	3.2	0.6
		광역시 등	8.5	2.5	6.6	0.2
		도지역	9.9	2.3	8.2	0.4
	2019	수도권	6.1	5.1	1.3	0.8
		광역시 등	3.7	1.9	2.2	0.1
		도지역	4.3	1.1	3.0	0.5
	2023	수도권	3.8	2.4	1.5	0.4
		광역시 등	1.7	0.7	1.1	0.2
		도지역	3.0	1.1	2.1	0.2
소득 수준별	2015	소득 하위	10.6	4.2	7.7	0.3
		소득 중위	4.4	2.4	2.3	0.6
		소득 상위	2.7	1.7	0.0	1.5
	2019	소득 하위	5.5	2.7	2.9	0.5
		소득 중위	4.4	4.0	0.5	0.6
		소득 상위	0.6	0.6	-	-
	2023	소득 하위	3.7	1.7	2.3	0.2
		소득 중위	2.1	1.7	0.6	0.2
		소득 상위	0.4	0.1	-	0.3
장애 유형별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8.2	3.4	5.7	0.3
		내부기관 장애	10.2	3.7	7.4	0.3
		정신적 장애	11.2	5.3	5.9	1.7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4.5	2.5	2.0	0.5
		내부기관 장애	3.2	1.4	1.9	0.1
		정신적 장애	8.0	6.1	3.0	0.6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2.9	1.3	1.7	0.2
		내부기관 장애	2.6	1.2	1.6	-
		정신적 장애	4.9	3.4	1.7	0.8
장애 정도별	2015	심한 장애	9.5	4.2	5.7	0.6
		심하지 않은 장애	8.1	3.3	5.9	0.4
	2019	심한 장애	5.6	3.7	2.2	0.5
		심하지 않은 장애	4.5	2.4	2.1	0.5
	2023	심한 장애	3.8	2.1	1.5	0.7
		심하지 않은 장애	2.8	1.3	1.8	0.1
가구 구성별	2015	1인가구	14.2	4.4	12.6	-
		2인 이상 가구	7.1	3.4	4.0	0.6
	2019	1인가구	6.1	1.8	5.8	-
		2인 이상 가구	4.5	3.3	0.8	0.7
	2023	1인가구	3.3	1.1	3.0	-
		2인 이상 가구	3.0	1.8	1.1	0.4

주1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주거실태조사에서 조사된 가구 중 6인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미달비율을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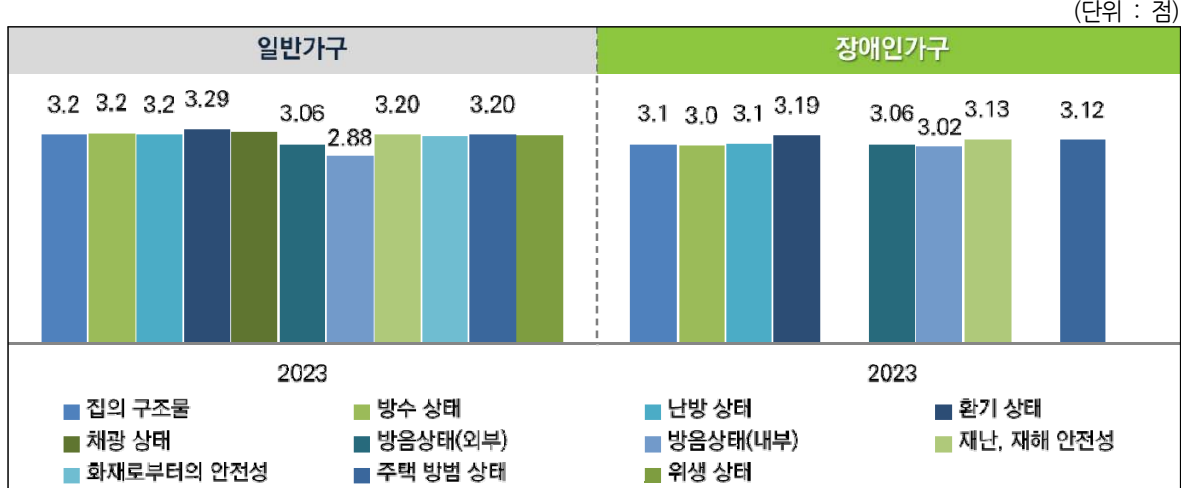
주2 : 침실기준 미달가구는 표본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7) 현재주택 상태

- 장애인가구는 현재주택 상태의 모든 항목이 3점 이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남
 - ‘방음상태’를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장애인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현재주택 상태를 낮게 평가함

그림 III-15.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주 : 현재주택 상태는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자료1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2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표 III-59.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단위 : 점)

구분		집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상태	환기 상태	방음 상태		재난, 재해 안전성	주택 방법 상태
						외부	내부		
일반 가구	2014	3.11	3.02	3.17	3.20	2.69		3.14	-
	2019	3.20	3.19	3.20	3.27	2.99	2.87	3.20	3.19
	2023	3.20	3.22	3.20	3.29	3.06	2.88	3.20	3.20
장애인 가구	2015	2.94	2.93	3.05	3.12	2.87		3.12	-
	2019	3.04	2.96	3.01	3.17	2.98	2.87	3.08	3.09
	2023	3.06	3.03	3.07	3.19	3.06	3.02	3.13	3.12

주 : 현재주택 상태는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지역과 관계 없이 ‘환기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수도권 3.14점, 광역시 등 3.29점, 도지역 3.21점)
- 양호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수도권은 ‘방음상태’, 광역시 등은 내부 ‘방음상태’와 ‘방수상태’, 도지역은 ‘방수상태’로 나타남
- 소득수준별 현재주택 상태는 모든 항목에서 소득 상위 가구가 양호도가 높음
- 소득 하위 가구에서 현재 주택 양호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방수 상태’(2.95점)임
- 현재주택 상태는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III-60. 지역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단위 : 점)

구분		집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태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 부터의 안전성	주택 방법 상태	위생 상태
							외부	내부				
2015	수도권	3.01	3.00	3.16	3.15	3.08	2.83		3.16	3.13	-	-
	광역시 등	2.98	2.96	3.04	3.15	3.12	2.86		3.15	3.03	-	-
	도지역	2.84	2.83	2.93	3.08	3.08	2.93		3.05	3.00	-	-
2019	수도권	3.11	2.99	3.09	3.21	3.07	2.90	2.84	3.07	3.01	3.06	3.07
	광역시 등	3.10	3.01	3.01	3.21	3.14	2.91	2.76	3.11	3.11	3.15	2.99
	도지역	2.95	2.91	2.91	3.11	3.14	3.10	3.04	3.06	3.04	3.08	3.03
2023	수도권	3.02	3.00	3.05	3.14	-	2.96	2.94	3.09	-	3.09	-
	광역시 등	3.19	3.16	3.21	3.29	-	3.17	3.16	3.26	-	3.23	-
	도지역	3.04	3.01	3.02	3.21	-	3.11	3.03	3.11	-	3.10	-

주 : 현재주택 상태는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61. 소득수준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단위 : 점)

구분		집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태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 부터의 안전성	주택 방범 상태	위생 상태
							외부	내부				
2015	소득 하위	2.81	2.80	2.93	3.01	2.99	2.79		3.02	2.96	-	-
	소득 중위	3.15	3.13	3.24	3.30	3.25	2.99		3.29	3.22	-	-
	소득 상위	3.42	3.42	3.43	3.53	3.44	3.23		3.47	3.43	-	-
2019	소득 하위	2.96	2.88	2.92	3.10	3.07	2.95	2.84	3.02	2.98	3.03	2.97
	소득 중위	3.15	3.08	3.12	3.28	3.16	3.00	2.87	3.15	3.11	3.18	3.13
	소득 상위	3.43	3.35	3.41	3.43	3.38	3.17	3.00	3.36	3.35	3.36	3.36
2023	소득 하위	2.97	2.95	2.98	3.12	-	3.02	2.99	3.06	-	3.06	-
	소득 중위	3.24	3.18	3.24	3.33	-	3.13	3.03	3.27	-	3.24	-
	소득 상위	3.40	3.41	3.45	3.55	-	3.30	3.21	3.45	-	3.44	-

주 : 현재주택 상태는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62. 장애유형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단위 : 점)

구분		집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태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 부터의 안전성	주택 방법 상태	위생 상태
							외부	내부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2.94	2.93	3.05	3.13	3.09	2.89		3.12	3.06	-	-
	내부기관 장애	2.96	2.96	3.09	3.15	3.14	2.82		3.14	3.09	-	-
	정신적 장애	2.92	2.89	3.01	3.07	3.06	2.79		3.09	3.02	-	-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3.05	2.97	3.01	3.18	3.12	2.98	2.86	3.08	3.04	3.09	3.05
	내부기관 장애	3.03	2.92	2.99	3.18	3.14	2.93	2.87	3.06	3.06	3.07	3.00
	정신적 장애	3.02	2.94	2.99	3.12	3.04	3.00	2.92	3.06	3.01	3.08	2.99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3.06	3.04	3.07	3.20	-	3.06	3.02	3.13	-	3.13	-
	내부기관 장애	3.11	3.04	3.12	3.20	-	3.03	3.05	3.14	-	3.15	-
	정신적 장애	3.01	3.02	3.05	3.15	-	3.05	2.99	3.11	-	3.08	-

주 : 현재주택 상태는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63. 장애정도별 현재주택 상태(양호도)

(단위 : 점)

구분		집의 구조물	방수 상태	난방 상태	환기 상태	채광 상태	방음 상태		재난, 재해 안전성	화재로 부터의 안전성	주택 방범 상태	위생 상태
							외부	내부				
2015	심한 장애	2.96	2.95	3.05	3.12	3.09	2.87		3.12	3.05	-	-
	심하지 않은 장애	2.92	2.92	3.04	3.12	3.09	2.88		3.12	3.06	-	-
2019	심한 장애	3.03	2.96	3.00	3.14	3.08	2.96	2.88	3.06	3.02	3.07	2.98
	심하지 않은 장애	3.05	2.96	3.01	3.19	3.13	2.99	2.86	3.09	3.05	3.10	3.07
2023	심한 장애	3.08	3.07	3.11	3.20	-	3.08	3.02	3.14	-	3.13	-
	심하지 않은 장애	3.05	3.01	3.05	3.19	-	3.05	3.01	3.13	-	3.12	-

주 : 현재주택 상태는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량, 4에 가까울수록 매우 양호를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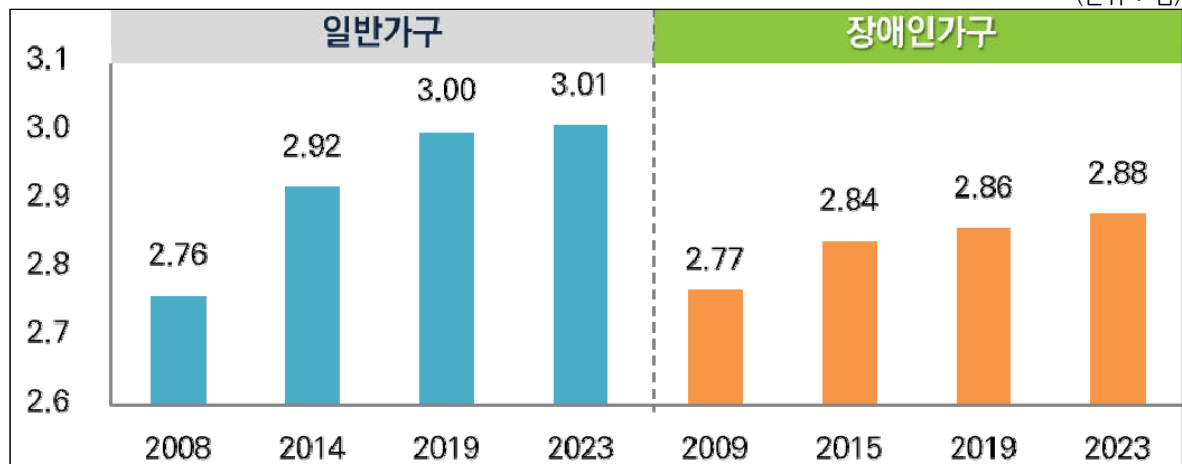
(8) 주거만족도

▶ 주택만족도

- 장애인가구의 주택만족도는 200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09년 2.77점 → '23년 2.88점)
- 주택만족도는 지역별로 광역시 등(2.96점), 도지역(2.87점), 수도권(2.86점) 순으로 높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상위 가구(3.10점), 소득 중위 가구(3.00점), 소득 하위 가구(2.82점) 순임
- 장애유형별로는 내부기관 장애 가구(2.90점),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2.89점), 정신적 장애 가구(2.86점) 순으로 주택만족도가 높고, 장애정도별로는 유사한 수준임

그림 III-16. 주택만족도

(단위 : 점)



주 : 주택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64. 주택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일반가구				장애인가구			
		2008	2014	2019	2023	2009	2015	2019	2023
전체		2.76	2.92	3.00	3.01	2.77	2.84	2.86	2.88
지역별	수도권	2.75	2.88	2.98	2.97	2.75	2.85	2.87	2.86
	광역시 등	2.77	2.96	3.06	3.04	2.84	2.87	2.93	2.96
	도지역	2.78	2.96	2.99	3.03	2.75	2.81	2.82	2.87
소득 수준별	소득 하위	2.69	2.80	2.88	2.91	2.68	2.76	2.82	2.82
	소득 중위	2.78	2.95	3.03	3.03	2.95	2.98	2.92	3.00
	소득 상위	2.88	3.08	3.16	3.14	3.22	3.13	3.14	3.10
장애 유형별	외부 신체기능 장애	-	-	-	-	2.78	2.84	2.87	2.89
	내부기관 장애	-	-	-	-	2.75	2.87	2.87	2.90
	정신적 장애	-	-	-	-	2.71	2.82	2.83	2.86
장애 정도별	심한 장애	-	-	-	-	2.73	2.84	2.83	2.89
	심하지 않은 장애	-	-	-	-	2.80	2.84	2.88	2.88

주 : 주택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주거환경만족도

- 장애인가구의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는 2.86점으로, '장애가구원으로 인한 이웃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2.92점으로 가장 높음
 - 한편, '문화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접근용이성이 낮게 나타남(각각 2.53점, 2.57점)

표 III-65. 주거환경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접근용이성					주차시설	교육환경	치안문제	장애가구원으로 인한 이웃관계	전반적 만족도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공원·녹지	대중교통					
2023	2.57	2.71	2.53	2.84	2.77	2.72	2.76	2.87	2.92	2.86

주 : 주거환경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지역별로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는 광역시 등(2.98점) > 수도권(2.87점) > 도지역(2.7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세부항목별로 광역시 등은 '공원·녹지' 접근용이성(3.00점), 수도권 및 도지역은 '장애가구원으로 인한 이웃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음(각각 2.90점, 2.92점)

표 III-66. 지역별 주거환경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접근용이성					주차시설	교육환경	치안문제	장애가구원으로 인한 이웃관계	전반적 만족도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공원·녹지	대중교통					
수도권	2.62	2.81	2.58	2.85	2.86	2.66	2.81	2.87	2.90	2.87
광역시 등	2.73	2.94	2.73	3.00	2.97	2.73	2.98	2.97	2.98	2.98
도지역	2.44	2.49	2.37	2.76	2.57	2.79	2.61	2.83	2.92	2.79

주 : 주거환경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소득수준별로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는 소득 상위 가구(3.11점), 소득 중위 가구(2.96점), 소득 하위 가구(2.80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주거환경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으로 소득 하위 가구와 소득 중위 가구는 ‘문화시설’ 접근용이성(각각 2.46점, 2.64점)이고 소득 상위 가구는 ‘장애인 복지시설’ 접근용이성(2.75점)임

표 III-67. 소득수준별 주거환경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접근용이성					주차시설	교육환경	치안문제	장애가구원으로 인한 이웃관계	전반적 만족도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공원·녹지	대중교통					
소득 하위	2.52	2.65	2.46	2.79	2.71	2.69	2.70	2.82	2.89	2.80
소득 중위	2.66	2.83	2.64	2.95	2.86	2.79	2.88	2.99	2.99	2.96
소득 상위	2.75	3.02	2.82	3.11	3.02	2.95	3.03	3.13	3.05	3.11

주 : 주거환경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는 내부기관 장애 가구(2.92점),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2.86점), 정신적 장애 가구(2.85점)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 III-68. 장애유형별 주거환경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접근용이성					주차시설	교육환경	치안문제	장애가구원으로 인한 이웃관계	전반적 만족도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공원·녹지	대중교통					
외부 신체기능 장애	2.56	2.70	2.51	2.83	2.76	2.73	2.76	2.87	2.93	2.86
내부기관 장애	2.67	2.82	2.68	2.92	2.86	2.73	2.85	2.89	2.96	2.92
정신적 장애	2.57	2.75	2.54	2.87	2.77	2.71	2.77	2.87	2.85	2.85

주 : 주거환경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전반적인 주거환경만족도가 심한 장애 가구는 2.88점,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는 2.85점임
-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문화시설’ 접근용이성으로 나타남(심한 장애 가구 2.56점,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 2.51점)

표 III-69. 장애정도별 주거환경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접근용이성					주차시설	교육환경	치안문제	장애가구원으로 인한 이웃관계	전반적 만족도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공원·녹지	대중교통					
심한 장애	2.59	2.75	2.56	2.86	2.79	2.76	2.79	2.89	2.90	2.88
심하지 않은 장애	2.56	2.70	2.51	2.83	2.76	2.71	2.75	2.87	2.93	2.85

주 : 주거환경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9) 편의시설 설치 경험

▶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또는 안전시설 설치 경험

- 장애인가구의 편의시설 설치 경험은 5.9%로 나타남

표 III-70. 편의시설 설치 경험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계
개보수 경험	5.9	94.1	100.0

주 : 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위해 설치한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함(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에서 편의시설 설치 경험이 6.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도지역(6.0%), 수도권(5.5%)으로 나타남

표 III-71.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 경험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계
수도권	5.5	94.5	100.0
광역시 등	6.7	93.3	100.0
도지역	6.0	94.0	100.0

주 : 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위해 설치한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함(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소득수준별 편의시설 설치 경험은 소득 하위와 상위 가구가 6.5%로 많고, 소득 중위 가구가 4.5%로 나타남

표 III-72. 소득수준별 편의시설 설치 경험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계
소득 하위	6.5	93.5	100.0
소득 중위	4.5	95.5	100.0
소득 상위	6.5	93.5	100.0

주 : 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위해 설치한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함(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경험을 비교해보면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가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기관 장애 가구 4.3%, 정신적 장애 가구 4.0%로 나타남

표 III-73.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설치 경험

(단위 : %)

구분	있다	없다	계
외부 신체기능 장애	6.4	93.6	100.0
내부기관 장애	4.3	95.7	100.0
정신적 장애	4.0	96.0	100.0

주 : 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위해 설치한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함(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장애정도별 편의시설 설치 경험은 심한 장애(7.3%)이 심하지 않은 장애(5.2%)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74. 장애정도별 편의시설 설치 경험

(단위 : %, 회)

구분	있다	없다	계
심한 장애	7.3	92.7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5.2	94.8	100.0

주 : 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위해 설치한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함(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편의시설 설치 비용 최다부담주체

- 편의시설 설치의 주요 부담 주체는 본인 및 가족이 61.7%,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29.9%, 민간 및 자선단체가 7.9%로 나타남
- 소득별로는 소득 상위 가구는 대부분(95.0%)가 본인 및 가족 부담이었고, 소득하위의 경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비중이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높았음

표 III-75. 편의시설 설치 비용 최다부담주체

(단위 : %)

구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및 자선단체	본인 및 가족	기타	계
전체	29.9	7.9	61.7	0.5	100.0
지역별	수도권	13.3	55.5	-	100.0
	광역시 등	3.3	68.0	1.5	100.0
	도지역	4.9	64.4	0.5	100.0
소득수준별	소득 하위	10.1	53.4	0.6	100.0
	소득 중위	3.0	78.5	0.5	100.0
	소득 상위	-	95.0	-	100.0
장애유형별	외부 신체기능 장애	7.8	62.0	0.5	100.0
	내부기관 장애	15.1	45.5	2.1	100.0
	정신적 장애	4.9	66.1	-	100.0
장애정도별	심한 장애	6.4	55.6	-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9.0	66.2	0.9	100.0

주 : 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위해 설치한 편의시설이나 안전시설을 기준으로 함(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3) 장애인가구의 주택마련 및 주거비 부담

(1) 주택가격 및 임대료

- 2023년 자가로 거주하는 장애인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28,344.4만 원으로 일반가구의 평균 주택가격(41,144.1만 원)보다 낮음
- 평균 전세가격은 14,464.9만 원이고, 보증금 있는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은 1,859.8만 원, 평균 월세는 22.8만 원으로 나타남
 - 보증금 없는 월세의 평균 월세는 22.7만 원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의 평균 월세(22.8만 원)와 유사함

표 III-76.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단위 : 만원)

구분		주택가격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월세	
일반가구	2008	18,600.2	6,509.0	1,252.1	24.5	20.2
	2014	21,448.4	10,976.2	1,513.2	29.8	25.0
	2019	29,109.5	15,975.2	2,240.5	32.3	29.2
	2023	41,144.1	22,237.9	2,383.8	37.7	31.3
장애인가구	2009	13,783.4	4,700.3	919.5	15.3	16.2
	2015	18,552.4	7,997.7	1,525.8	19.7	19.5
	2019	23,782.9	10,947.5	1,662.3	19.6	17.1
	2023	28,344.4	14,464.9	1,859.8	22.8	22.7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2023년 장애인가구의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는 수도권, 광역시 등, 도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광역시 등과 도지역의 경우 보증금 없는 월세의 평균 월세(각각 24.2만 원, 20.6만 원)가 보증금 있는 월세의 평균 월세(각각 20.6만 원, 19.4만 원)보다 높음
- 2023년 장애인가구의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소득 상위 가구의 경우 2019년 대비 평균 보증금은 감소했으나(6,071.0만 원 → 4,393.0만 원), 평균 월세(34.0만 원 → 52.0만 원)는 증가함

표 III-77. 지역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단위 : 만원)

구분		주택가격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월세	
2009	수도권	24,805.4	5,339.0	1,046.9	18.7	20.5
	광역시 등	10,689.0	3,965.3	609.5	11.6	17.5
	도지역	6,663.1	3,050.3	993.9	12.3	13.6
2015	수도권	28,442.7	9,232.4	1,926.5	22.9	29.6
	광역시 등	18,932.4	5,760.5	1,082.1	14.9	17.2
	도지역	10,815.5	5,340.1	1,036.8	16.8	17.1
2019	수도권	39,733.2	13,466.3	2,053.7	23.2	21.8
	광역시 등	20,769.4	7,865.3	1,270.9	14.3	13.2
	도지역	12,060.0	5,409.5	1,293.8	18.0	15.9
2023	수도권	46,274.9	16,177.7	2,247.9	25.4	24.5
	광역시 등	29,998.9	13,608.2	1,791.1	20.6	24.2
	도지역	15,007.8	9,269.1	1,209.1	19.4	20.6

주 : '수도권'과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보증금 없는 월세가구는 표본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78. 소득수준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단위 : 만원)

구분		주택가격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월세	
2009	소득 하위	10,630.2	3,817.7	749.3	13.9	15.2
	소득 중위	16,709.8	7,125.3	2,056.0	24.0	26.3
	소득 상위	28,534.4	8,089.9	2,925.4	33.5	25.0
2015	소득 하위	14,164.4	5,785.4	1,251.1	17.1	18.0
	소득 중위	20,326.7	10,347.7	2,890.8	30.5	30.8
	소득 상위	36,141.3	18,645.1	4,083.9	58.2	42.0
2019	소득 하위	16,945.5	6,803.9	1,404.3	17.2	16.6
	소득 중위	27,286.2	17,254.5	2,277.7	30.0	25.0
	소득 상위	46,844.5	24,160.3	6,071.0	34.0	24.0
2023	소득 하위	20,906.6	10,334.1	1,565.9	20.0	22.6
	소득 중위	34,717.2	20,158.2	3,434.0	35.8	24.5
	소득 상위	52,754.5	28,494.8	4,393.0	52.0	-

주 : 소득 중위 중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와 소득 상위는 표본수가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2023년 장애인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장애유형별로 내부기관 장애 가구(32,191.0만 원), 정신적 장애 가구(30,033.5만 원),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27,834.9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보증금 없는 월세의 평균 월세 금액은 내부기관 장애 가구(24.8만 원),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23.0만 원), 정신적 장애 가구(20.1만 원) 순으로 나타남

표 III-79. 장애유형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단위 : 만원)

구분		주택가격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월세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13,910.8	4,703.5	946.9	15.4	16.0
	내부기관 장애	14,269.1	5,158.6	970.0	15.0	17.2
	정신적 장애	12,264.3	4,461.9	750.6	14.8	16.4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18,345.1	7,914.2	1,592.5	19.9	19.7
	내부기관 장애	21,970.1	10,757.8	1,411.8	22.1	21.2
	정신적 장애	18,779.7	7,498.0	1,169.7	17.3	16.9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22,931.6	10,898.1	1,689.9	19.9	17.2
	내부기관 장애	27,916.9	12,396.8	1,484.1	19.5	20.9
	정신적 장애	27,806.3	10,723.8	1,589.6	18.3	15.7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27,834.9	14,811.5	1,939.3	22.6	23.0
	내부기관 장애	32,191.0	15,154.6	1,689.0	23.3	24.8
	정신적 장애	30,033.5	11,967.8	1,514.2	23.3	20.1

주 : '내부기관 장애'와 '정신적 장애'의 보증금 없는 월세가구는 표본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2023년 장애인가구의 평균 주택가격은 심한 장애 가구의 경우 30,480.2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의 경우 27,334.4만 원으로 다소 차이가 있음

- 2019년에는 장애정도별로 평균 주택가격이 유사한 수준이었음

표 III-80. 장애정도별 평균 주택가격 및 임대료

(단위 : 만원)

구분		주택가격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월세	
2009	심한 장애	12,887.1	4,940.9	864.5	14.0	16.1
	심하지 않은 장애	14,369.7	4,529.6	978.5	16.6	16.2
2015	심한 장애	19,698.1	8,327.9	1,389.4	18.2	19.2
	심하지 않은 장애	17,964.0	7,799.0	1,638.1	21.0	19.7
2019	심한 장애	23,839.9	10,994.9	1,680.1	17.3	19.2
	심하지 않은 장애	23,753.6	10,919.8	1,648.8	21.4	15.7
2023	심한 장애	30,480.2	14,516.1	2,003.5	22.9	22.4
	심하지 않은 장애	27,334.4	14,438.2	1,755.4	22.6	22.8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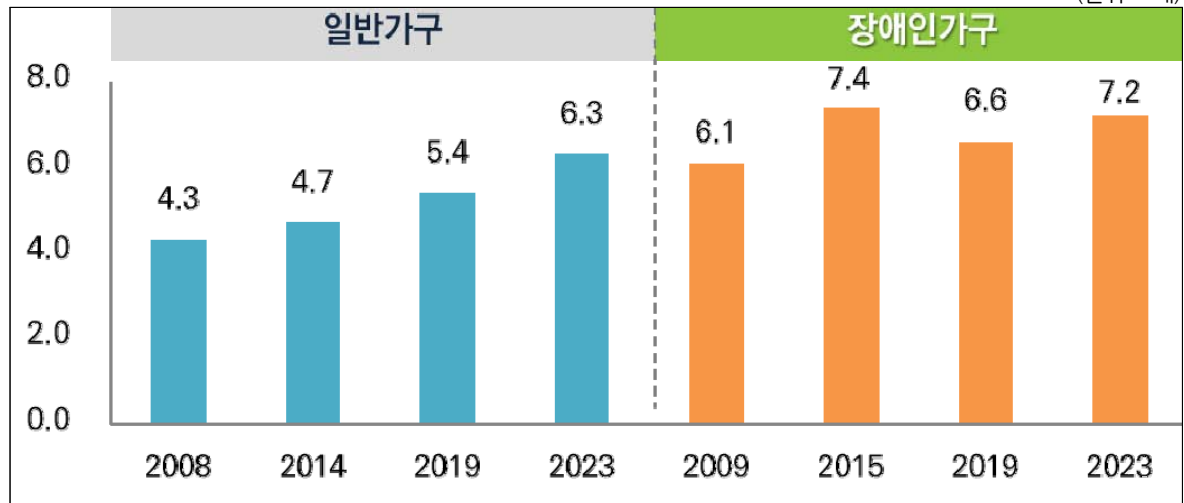
(2)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 2023년 장애인가구의 PIR은 중위수 기준 7.2배로, 2019년(6.6배) 대비 소폭 증가함

- 2023년 기준, 장애인가구의 중위수 기준 PIR(7.2배)이 일반가구의 PIR(6.3배)보다 큼

그림 III-17.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단위 : 배)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81.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단위 : 만원, 배)

구분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주택가격	연소득	PIR	주택가격	연소득	PIR
일반가구	2008	12,000.0	2,760.0	4.3	18,392.5	3,083.3	6.0
	2014	17,000.0	3,600.0	4.7	21,382.9	3,720.1	5.7
	2019	22,000.0	4,080.0	5.4	28,977	4,237.0	6.8
	2023	30,000.0	4,800.0	6.3	41,062.7	5,064.6	8.1
장애인가구	2009	9,000.0	1,476.0	6.1	13,776.7	2,054.2	6.7
	2015	14,000.0	1,884.0	7.4	18,539.6	2,546.9	7.3
	2019	15,000.0	2,280.0	6.6	23,169.1	2,825.7	8.2
	2023	20,000.0	2,760.0	7.2	28,125.6	3,390.8	8.3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지역별로 자가인 장애인가구의 PIR(중위수 기준)은 수도권 9.7배, 광역시 등 8.3배, 도지역 4.2배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19년 대비 PIR(중위수 기준)이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증가했으나, 도지역은 감소함
- 소득수준별 PIR(중위수 기준)은 소득 하위 가구가 9.3배로 소득 중위 가구(5.6배), 소득 상위 가구(5.1배)에 비해 높게 나타남
 - PIR(중위수 기준)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019년 대비 2023년에 모두 증가함

표 III-82. 지역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단위 : 만원, 배)

구분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주택가격	연소득	PIR	주택가격	연소득	PIR
2009	수도권	20,000	1,800	11.1	24,818.9	2,387.2	10.4
	광역시 등	9,000	1,800	5.0	10,679.1	2,214.6	4.8
	도지역	5,000	1,200	4.2	6,663.1	1,738.2	3.8
2015	수도권	25,000	2,400	10.4	28,449.6	3,049.9	9.3
	광역시 등	16,000	2,100	7.6	18,932.4	2,680.3	7.1
	도지역	8,000	1,560	5.1	10,832.1	2,106.0	5.1
2019	수도권	25,000	3,000	8.3	38,536.4	3,440.3	11.2
	광역시 등	16,000	2,280	7.0	20,612.9	2,869.1	7.2
	도지역	10,000	1,512	6.6	11,987.5	2,310.0	5.2
2023	수도권	35,000.0	3,600.0	9.7	46,191.0	3,965.4	11.6
	광역시 등	24,000.0	2,904.0	8.3	29,968.6	3,603.6	8.3
	도지역	10,000.0	2,400.0	4.2	14,979.0	2,903.5	5.2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83. 소득수준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단위 : 만원, 배)

구분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주택가격	연소득	PIR	주택가격	연소득	PIR
2009	소득 하위	6,500	960	6.8	10,630.2	1,043.0	10.2
	소득 중위	11,000	3,000	3.7	16,709.8	3,055.6	5.5
	소득 상위	20,000	5,496	3.6	28,534.4	6,595.8	4.3
2015	소득 하위	10,000	1,152	8.7	14,164.4	1,227.5	11.5
	소득 중위	16,000	3,600	4.4	20,326.7	3,575.0	5.7
	소득 상위	29,000	6,048	4.8	36,141.3	6,782.2	5.3
2019	소득 하위	11,000	1,236	8.9	16,945.5	1,440.0	11.8
	소득 중위	20,000	3,924	5.1	27,286.2	3,994.0	6.8
	소득 상위	30,000	7,200	4.2	46,844.5	7,503.6	6.2
2023	소득 하위	14,500.0	1,560.0	9.3	20,906.6	1,720.0	12.2
	소득 중위	27,000.0	4,800.0	5.6	34,717.2	4,791.7	7.2
	소득 상위	40,000.0	7,920.0	5.1	52,754.5	9,488.3	5.6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 PIR(중위수 기준)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7.9배), 내부기관 장애 가구(7.7배), 정신적 장애 가구(5.6배) 순임
- 2019년 대비 2023년에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는 중위수 및 평균 기준 PIR이 모두 증가했으며, 정신적 장애 가구의 경우 모두 감소함
 - 외부 신체기능 장애 : (중위수) '19년 7.0배 → '23년 7.9배 / (평균) '19년 8.2배 → '23년 8.5배
 - 정신적 장애 : (중위수) '19년 5.8배 → '23년 5.6배 / (평균) '19년 7.8배 → '23년 7.5배

표 III-84. 장애유형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단위 : 만원, 배)

구분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주택가격	연소득	PIR	주택가격	연소득	PIR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9,000	1,440	6.3	13,903.5	2,049.1	6.8
	내부기관 장애	10,000	1,656	6.0	14,269.1	2,179.2	6.5
	정신적 장애	8,000	1,800	4.4	12,261.8	2,044.8	6.0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14,000	1,800	7.8	18,330.3	2,501.1	7.3
	내부기관 장애	17,000	2,400	7.1	21,962.1	2,878.4	7.6
	정신적 장애	13,000	2,400	5.4	18,779.8	2,798.1	6.7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15,000	2,148	7.0	22,426.5	2,723.3	8.2
	내부기관 장애	20,000	2,604	7.7	27,604.1	3,139.4	8.8
	정신적 장애	16,000	2,760	5.8	26,395.5	3,395.3	7.8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20,000.0	2,520.0	7.9	27,623.9	3,267.7	8.5
	내부기관 장애	25,000.0	3,240.0	7.7	31,956.3	3,915.0	8.2
	정신적 장애	20,000.0	3,600.0	5.6	29,791.6	3,988.6	7.5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정도별 PIR(중위수 기준)을 살펴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7.9배)가 심한 장애 가구(6.7배)에 비해 높음

표 III-85. 장애정도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PIR)

(단위 : 만원, 배)

구분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주택가격	연소득	PIR	주택가격	연소득	PIR
2009	심한 장애	8,500	1,440	5.9	12,885.7	1,965.1	6.6
	심하지 않은 장애	9,000	1,500	6.0	14,359.8	2,112.5	6.8
2015	심한 장애	15,000	2,124	7.1	19,645.4	2,692.9	7.3
	심하지 않은 장애	14,000	1,800	7.8	17,969.2	2,471.6	7.3
2019	심한 장애	15,000	2,400	6.3	22,858.6	3,078.8	7.4
	심하지 않은 장애	15,000	2,040	7.4	23,327.8	2,696.3	8.7
2023	심한 장애	20,000.0	3,000.0	6.7	30,059.6	3,583.8	8.4
	심하지 않은 장애	20,000.0	2,520.0	7.9	27,217.6	3,300.2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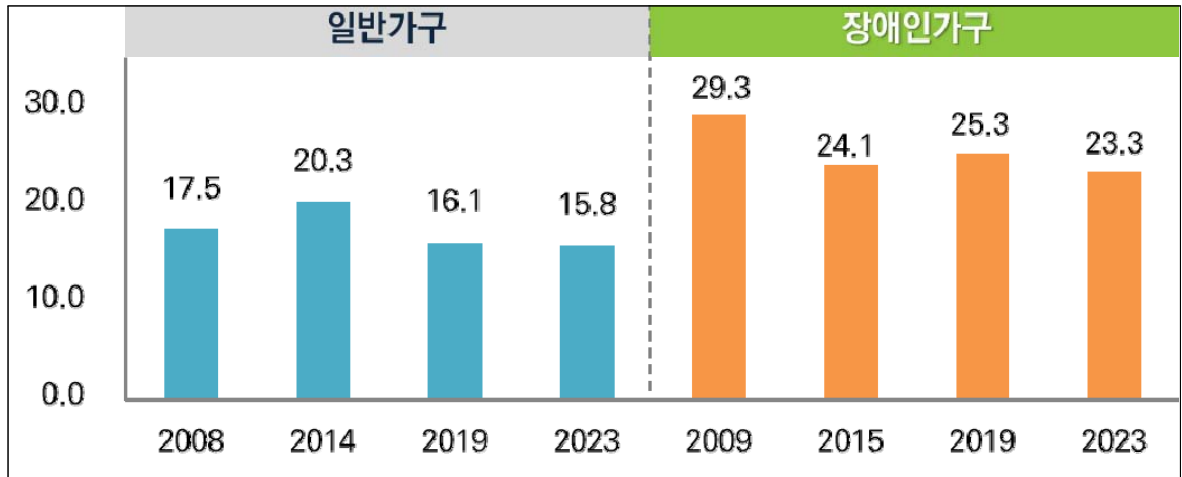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3)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 2023년 장애인가구의 RIR(중위수 기준)은 23.3%임
- 일반가구의 RIR(중위수 기준)은 15.8%로 장애인가구의 RIR(23.3%)보다 낮음

그림 III-18.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 %)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86.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 만원, %)

구분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전환임대료	월소득	RIR	전환임대료	월소득	RIR
일반가구	2008	34.9	200.0	17.5	49.9	218.9	22.8
	2014	40.6	200.0	20.3	60.7	250.4	24.2
	2019	40.3	250.0	16.1	57.0	267.1	21.3
	2023	47.5	300.0	15.8	73.7	324.7	22.7
장애인가구	2009	23.4	80.0	29.3	31.7	114.1	27.8
	2015	24.3	101.0	24.1	34.6	147.4	23.5
	2019	25.3	100.0	25.3	34.9	161.9	21.6
	2023	30.3	130.0	23.3	42.2	185.6	22.7

주 : 보증금 임대료 전환은 조사시점을 고려하여 2009년 11.52%, 2014년 9.36%, 2015년 7.3%, 2019년 9월 6.1%(일반가구), 2019년 12월 5.9%(장애인가구), 2023년 9월 6.1%(일반가구)를 활용하여 계산함⁸⁾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8) 주거실태조사에서 적용 가능한 전월세전환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음. 특히 2015년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 한국감정원에서 새롭게 발표한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였으므로, 2015년의 RIR을 이전년도 RIR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각 연도별 주거실태조사에서 적용한 전월세전환율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구분	2008.10	2009.10	2010.8	2011.5	2012.7	2013.9	2014.8	2015.8	2019.9	2019.12	2020.9	2021.9	2022.9	2023.9
전월세전환율 (한국감정원)	-	-	-	9.6	9.0	8.5	8.1	7.3	6.1	5.9	5.7	5.6	5.8	6.1
월세이율 (한국감정원)	-	-	-	-	10.44	9.84	9.36	-	-	-	-	-	-	-
월세이율 (국민은행)	11.76	11.52	11.52	11.04	-	-	-	-	-	-	-	-	-	-

자료 : 한국감정원, '전월세전환율', '월세이율', 각년도
국민은행, '월세이율', 각년도

- 2023년 장애인가구의 지역별 RIR(중위수 기준)은 수도권(25.1%), 도지역(23.9%), 광역시 등(21.6%) 순으로 높음
 - 2023년 평균 기준 RIR은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 2019년 대비 증가함

표 III-87. 지역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 만원, %)

구분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전환임대료	월소득	RIR	전환임대료	월소득	RIR
2009	수도권	28.8	87.0	33.1	39.3	120.0	32.8
	광역시 등	14.4	71.0	20.3	23.6	103.3	22.9
	도지역	19.2	80.0	24.0	22.2	110.9	20.1
2015	수도권	30.4	112.0	27.2	42.9	155.1	27.7
	광역시 등	18.3	85.0	21.5	25.1	129.9	19.3
	도지역	20.0	102.0	19.6	23.9	144.3	16.6
2019	수도권	34.4	120.0	28.7	45.0	176.8	25.5
	광역시 등	16.5	83.0	19.8	24.0	139.7	17.2
	도지역	21.5	100.0	21.5	23.9	151.0	15.8
2023	수도권	35.2	140.0	25.1	50.6	191.8	26.4
	광역시 등	28.7	120.0	23.9	38.5	183.6	20.9
	도지역	22.7	105.0	21.6	28.8	175.1	16.4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2023년 소득수준별 RIR(중위수 기준)은 소득 하위 가구가 26.1%로 소득 중위 가구(17.0%), 소득 상위 가구(13.1%)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평균 기준 RIR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2019년 대비 2023년에 모두 증가함
 - 소득 하위 가구 : '19년 25.7% → '23년 26.1%
 - 소득 중위 가구 : '19년 18.2% → '23년 19.6%
 - 소득 상위 가구 : '19년 16.2% → '23년 16.8%

표 III-88. 소득수준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 만원, %)

구분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전환임대료	월소득	RIR	전환임대료	월소득	RIR
2009	소득 하위	19.6	70.0	28.0	26.1	78.6	33.2
	소득 중위	40.0	230.0	17.4	56.8	243.6	23.3
	소득 상위	59.6	500.0	11.9	72.8	551.5	13.2
2015	소득 하위	20.6	84.0	24.5	27.0	96.8	27.9
	소득 중위	39.7	280.0	14.2	54.3	284.3	19.1
	소득 상위	82.2	500.0	16.4	101.8	575.5	17.7
2019	소득 하위	21.5	80.0	26.8	26.0	101.1	25.7
	소득 중위	44.6	300.0	14.9	60.2	330.8	18.2
	소득 상위	69.8	520.0	13.4	96.3	594.5	16.2
2023	소득 하위	26.1	100.0	26.1	32.5	124.7	26.1
	소득 중위	60.4	355.0	17.0	74.1	378.4	19.6
	소득 상위	91.5	700.0	13.1	118.4	704.5	16.8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로는 RIR(중위수 기준)이 내부기관 장애 가구(26.1%),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24.4%), 정신적 장애 가구(18.9%) 순으로 높음
- 정신적 장애 가구는 중위수 및 평균기준 RIR이 2019년 대비 모두 감소함
 - 정신적 장애 가구 : (중위수) '19년 23.9% → '23년 18.9% / (평균) '19년 21.0% → '23년 18.4%

표 III-89. 장애유형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 만원, %)

구분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전환임대료	월소득	RIR	전환임대료	월소득	RIR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24.0	80.0	30.0	32.2	114.2	28.2
	내부기관 장애	26.5	85.0	31.2	32.5	115.9	28.0
	정신적 장애	19.2	86.0	22.3	28.5	113.1	25.2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24.3	102.0	23.9	35.1	147.8	23.7
	내부기관 장애	25.6	110.0	23.3	38.6	152.1	25.4
	정신적 장애	21.1	100.0	21.1	29.5	142.6	20.7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25.8	100.0	25.8	35.5	164.4	21.6
	내부기관 장애	24.9	96.0	26.0	34.9	151.0	23.1
	정신적 장애	23.9	100.0	23.9	31.9	152.3	21.0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30.5	125.0	24.4	43.0	182.7	23.5
	내부기관 장애	31.3	120.0	26.1	43.8	184.6	23.7
	정신적 장애	26.5	140.0	18.9	37.2	202.1	18.4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정도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의 RIR(중위수 기준)이 25.4%, 심한 장애 가구가 23.2%로 나타남

표 III-90. 장애정도별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단위 : 만원, %)

구분		중위수 기준			평균 기준		
		전환임대료	월소득	RIR	전환임대료	월소득	RIR
2009	심한 장애	21.6	80.0	27.0	30.5	108.3	28.2
	심하지 않은 장애	24.0	84.0	28.6	32.7	119.3	27.4
2015	심한 장애	23.0	100.0	23.0	33.1	139.4	23.7
	심하지 않은 장애	24.3	110.0	22.1	35.7	153.2	23.3
2019	심한 장애	24.6	100.0	24.6	32.6	156.0	20.9
	심하지 않은 장애	26.4	106.0	24.9	36.6	166.0	22.0
2023	심한 장애	30.2	130.0	23.2	41.6	191.6	21.7
	심하지 않은 장애	30.5	120.0	25.4	42.6	181.7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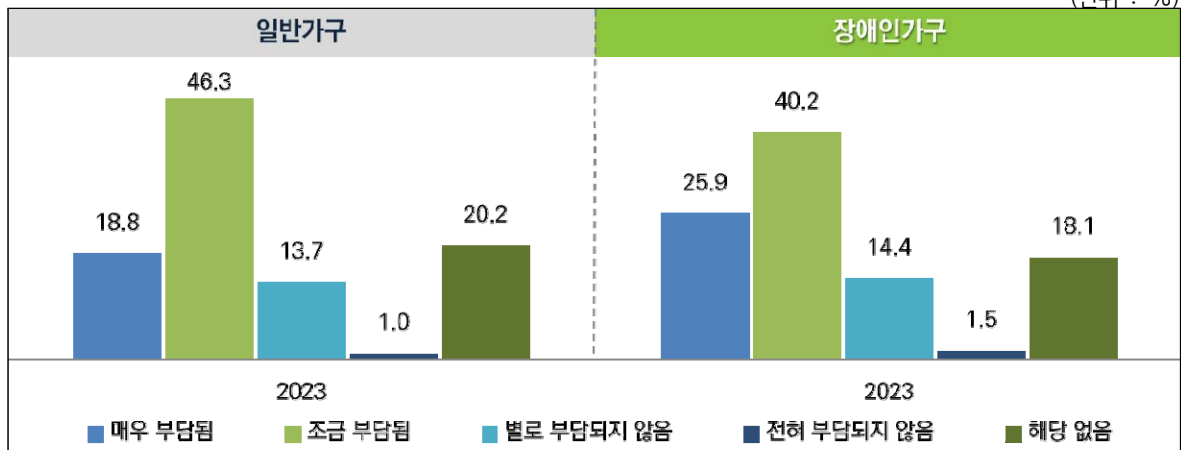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4)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 2023년 장애인가구의 66.1%가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65.7%)에 비해 소폭 증가함

그림 III-19.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단위 : %)



자료1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자료2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표 III-91.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 없음	계
일반가구	2014	29.8	41.9	14.7	3.4	10.2	100.0
	2019	19.2	45.8	15.7	1.8	17.6	100.0
	2023	18.8	46.3	13.7	1.0	20.2	100.0
장애인가구	2015	41.5	28.7	6.4	1.1	22.3	100.0
	2019	31.3	34.4	11.1	1.8	21.5	100.0
	2023	25.9	40.2	14.4	1.5	18.1	100.0

주1 : 주거비 부담정도는 현재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를 의미함

주2 : '해당 없음'은 자가, 전세, 사글세 또는 연세이면서 부채를 모두 상환한 경우임

자료1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자료2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수도권(69.9%), 광역시 등(63.3%), 도지역(61.8%) 순으로 높음
- 소득수준별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소득 하위 가구(68.4%) 및 소득 중위 가구(62.9%)가 소득 상위 가구(48.7%)와 차이가 큼
-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은 내부기관 장애 가구(69.2%)가 가장 컸으며, 정신적 장애 가구(67.0%),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65.6%) 순으로 나타남

표 III-92. 지역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 없음	계
2015	수도권	44.1	31.1	5.2	1.4	18.2	100.0
	광역시 등	38.4	30.7	5.9	1.0	24.1	100.0
	도지역	39.3	23.7	8.7	0.7	27.5	100.0
2019	수도권	34.9	33.8	11.4	2.1	17.8	100.0
	광역시 등	29.5	32.9	13.7	2.3	21.6	100.0
	도지역	26.0	36.8	8.3	0.7	28.2	100.0
2023	수도권	30.0	39.9	14.0	1.3	14.8	100.0
	광역시 등	22.2	41.1	11.5	2.2	23.0	100.0
	도지역	21.9	39.9	17.2	1.1	19.9	100.0

주1 : 주거비 부담정도는 현재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를 의미함

주2 : '해당 없음'은 자가, 전세, 사글세 또는 연세이면서 부채를 모두 상환한 경우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93. 소득수준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 없음	계
2015	소득 하위	45.1	29.0	6.1	1.3	18.5	100.0
	소득 중위	37.5	27.1	6.4	0.7	28.3	100.0
	소득 상위	24.0	31.3	9.4	0.8	34.4	100.0
2019	소득 하위	33.7	33.6	12.2	2.4	18.1	100.0
	소득 중위	28.3	36.0	8.2	0.4	27.0	100.0
	소득 상위	20.9	38.2	12.9	1.1	26.9	100.0
2023	소득 하위	25.8	42.6	15.8	2.2	13.6	100.0
	소득 중위	24.9	38.0	11.5	0.0	25.6	100.0
	소득 상위	22.9	25.8	15.4	0.2	35.7	100.0

주1 : 주거비 부담정도는 현재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를 의미함

주2 : '해당 없음'은 자가, 전세, 사글세 또는 연세이면서 부채를 모두 상환한 경우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표 III-94. 장애유형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 없음	계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40.9	28.2	6.5	1.1	23.3	100.0
	내부기관 장애	46.5	28.5	5.9	1.4	17.7	100.0
	정신적 장애	43.6	32.7	5.9	0.7	17.1	100.0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31.6	33.3	11.0	1.3	22.7	100.0
	내부기관 장애	26.8	41.0	8.5	3.5	20.3	100.0
	정신적 장애	31.0	38.2	12.6	3.5	14.8	100.0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25.8	39.8	14.0	1.5	18.9	100.0
	내부기관 장애	23.5	45.7	11.7	0.8	18.3	100.0
	정신적 장애	27.5	39.5	18.3	1.5	13.2	100.0

주1 : 주거비 부담정도는 현재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를 의미함

주2 : '해당 없음'은 자가, 전세, 사글세 또는 연세이면서 부채를 모두 상환한 경우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정도별로는 심한 장애 가구(68.1%)가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64.7%)에 비해 임대료 및 대출금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음

표 III-95. 장애정도별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

(단위 : %)

구분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 없음	계
2015	심한 장애	42.3	32.1	6.4	1.1	18.2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40.9	26.5	6.5	1.1	25.0	100.0
2019	심한 장애	31.1	35.8	11.0	3.0	19.1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31.4	33.5	11.1	0.9	23.1	100.0
2023	심한 장애	27.2	40.9	15.4	1.4	15.1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25.0	39.7	13.8	1.5	20.0	100.0

주1 : 주거비 부담정도는 현재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를 의미함

주2 : '해당 없음'은 자가, 전세, 사글세 또는 연세이면서 부채를 모두 상환한 경우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4) 장애인가구의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1) 장애인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도

-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장애인가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52.7%)'이며, 다음으로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 입주(38.3%)',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30.1%)' 순임
- 한편,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설치'를 알고 있는 비율은 23.2%로 가장 낮음

표 III-96.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단위 : %)

구분	알고 있음	모름	계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52.7	47.3	100.0
주택개량·개보수 지원(현물, 자금대출, 수선유지급여 포함)	26.1	73.9	100.0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30.1	69.9	100.0
장애인 대상 주거금융 지원	24.2	75.8	100.0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 입주	38.3	61.7	100.0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설치	23.2	76.8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알고 있는 주거지원 프로그램 중,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율은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20.7%)'이 가장 높으며,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 입주(18.1%)',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17.3%)'이 다음으로 높음
- 이용비율이 가장 낮은 프로그램은 '주택개량·개보수 지원(6.2%)'임

표 III-97. 주거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

(단위 : %)

구분	이용한적 있다	이용한적 없다	계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17.3	82.7	100.0
주택개량·개보수 지원(현물, 자금대출, 수선유지급여 포함)	6.2	93.8	100.0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20.7	79.3	100.0
장애인 대상 주거금융 지원	10.9	89.1	100.0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 입주	18.1	81.9	100.0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설치	10.1	89.9	100.0

주 : 해당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알고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가구가 각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는 80% 이상으로, 만족하는 가구 비율이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 입주(93.6%)', '주택개량·개보수 지원(9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한편,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3.7%)'임

표 III-98. 주거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단위 : %)

구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계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3.7	14.8	75.3	6.2	100.0
주택개량·개보수 지원(현물, 자금대출, 수선유지급여 포함)	1.0	6.6	76.3	16.2	100.0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1.6	11.1	74.3	13.0	100.0
장애인 대상 주거금융 지원	0.9	8.7	73.9	16.5	100.0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 입주	0.8	5.5	66.9	26.7	100.0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설치	0.2	9.8	79.4	10.6	100.0

주1 : 해당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

주2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이용한 적 있는 가구(21개)는 표본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2)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 주거지원 프로그램 필요성

- 장애인가구가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주택개량·개보수 지원(20.3%)'임
-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수도권은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 입주(28.3%)', 광역시 등은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20.6%)', 도지역은 '주택개량·개보수 지원(28.8%)'임
- 소득수준별로는 소득 상위 가구와 소득 중위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각각 30.1%, 22.8%)', 소득 하위 가구는 '주택개량·개보수 지원(23.0%)'에 대한 필요가 가장 높음
- 외부 신체기능 장애 가구는 '주택개량·개보수 지원(20.7%)', 내부기관 장애 가구 및 정신적 장애 가구는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 입주(각각 19.3%, 21.4%)'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모든 장애유형에서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가 가장 낮음
- 장애정도별로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은 심하지 않은 장애 가구는 '주택개량·개보수 지원(21.3%)', 심한 장애 가구는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 입주(19.8%)'로 나타남

표 III-99.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1순위)

(단위 : %)

구분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 입주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장애인 대상 주거금융 지원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설치	계
전체		20.3	19.5	16.6	15.9	15.0	12.5	100.0
지역별	수도권	14.4	28.3	16.3	15.2	15.1	10.8	100.0
	광역시 등	16.7	14.3	18.0	20.6	16.7	13.7	100.0
	도지역	28.8	12.4	16.4	14.4	14.2	13.9	100.0
소득 수준별	소득 하위	23.0	21.5	13.1	15.1	14.2	13.1	100.0
	소득 중위	15.9	16.4	22.8	17.1	15.3	12.5	100.0
	소득 상위	14.4	11.9	30.1	14.7	18.2	10.7	100.0
장애 유형별	외부 신체기능 장애	20.7	19.2	16.8	15.7	14.6	12.9	100.0
	내부기관 장애	16.7	19.3	18.9	17.3	16.3	11.5	100.0
	정신적 장애	19.6	21.4	14.6	16.6	17.3	10.5	100.0
장애 정도별	심한 장애	18.5	19.8	17.1	14.9	15.9	13.8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21.3	19.4	16.4	16.5	14.6	11.9	100.0

주 : 주택개량·개보수 지원은 현물, 자금대출, 수선유지급여를 포함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3. 장애인의 주거실태(장애인 개인)

1) 대리응답 여부 및 장애인 개인 특성

(1) 대리응답

▶ 대리응답 여부

○ 장애인 설문지 대리응답자는 1,099명으로 전체 13.7% 수준임

- 장애유형별 대리응답 비율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는 7.4%, 내부기관 장애는 4.8%, 정신적 장애는 39.7%로 나타남
- 장애등급별 대리응답 비율은 심한 장애가 24.7%로 심하지 않은 장애(4.1%)에 비해 높음

표 III-100. 장애인 설문 대리응답 여부

(단위 : %, 명)

구분		대리응답	장애인 본인응답	계
전체		비율	13.7	86.3
		응답자수	1,099	6,947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비율	7.4	92.6
		응답자수	369	4,603
	내부기관 장애	비율	4.8	95.2
		응답자수	68	1,339
	정신적 장애	비율	39.7	60.3
		응답자수	662	1,005
장애 등급	심한 장애	비율	24.7	75.3
		응답자수	920	2,812
	심하지 않은 장애	비율	4.1	95.9
		응답자수	179	4,135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대리응답 이유

○ 대리응답을 한 개인 중 전체의 35.8%가 만 14세 이하 미성년 장애인이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64.2%로 나타남

표 III-101. 장애인 설문 대리응답 이유

(단위 : %)

구분		만 14세 이하 미성년 장애인	심한 장애로 의사소통 어려움	계
전체		35.8	64.2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31.4	68.6	100.0
	내부기관 장애	25.0	75.0	100.0
	정신적 장애	39.3	60.7	100.0
장애 등급	심한 장애	35.3	64.7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38.0	62.0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는 내부기관 장애의 경우 장애가 심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75.0%로 가장 높음
- 장애등급별로는 심한 장애의 64.7%가 심한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대리응답을 하였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는 보다 낮은 62.0%로 나타남

(2) 장애인 개인 특성

▶ 성별 및 연령

- 2023년 장애인의 성별은 남성 57.8%, 여성 42.2%로 나타났고, 평균 연령은 62.2세로 조사 이후 조금씩 증가하고 있음

표 III-102. 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 세)

(단위 : %, 세)

구분		성별		연령							
		남	여	18세 미만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64세	65세 이상	계	평균
장애인 개인	2009	58.3	41.7	3.4	3.7	6.1	14.7	30.8	41.4	100.0	57.9
	2015	58.4	41.6	2.6	3.8	6.0	11.8	30.5	45.3	100.0	59.8
	2019	57.9	42.1	2.3	4.4	4.9	9.5	28.8	50.1	100.0	61.7
	2023	57.8	42.2	3.4	4.1	4.2	8.9	27.1	52.3	100.0	62.2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지역별로 장애인 개인의 연령대를 보면 도지역이 63.7세로 광역시 등(61.4세), 수도권(61.2세)에 비해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도지역의 경우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55.8%로 절반 이상이 고령 장애인임
 - 2023년에는 도지역뿐 아니라, 광역시 등도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51.2%로 절반 이상을 차지

표 III-103. 지역별 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 세)

(단위 : %, 개)

구분		성별		연령							
		남	여	18세 미만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64세	65세 이상	계	평균
2009	수도권	58.5	41.5	3.9	3.9	6.1	15.3	32.4	38.4	100.0	57.0
	광역시 등	58.2	41.8	3.5	3.4	5.7	14.0	34.7	38.7	100.0	57.6
	도지역	58.1	41.9	2.8	3.5	6.4	14.4	27.1	45.8	100.0	59.0
2015	수도권	57.7	42.3	3.0	4.1	5.5	12.3	32.0	43.1	100.0	59.0
	광역시 등	60.4	39.6	2.2	4.4	6.6	11.1	32.1	43.5	100.0	59.2
	도지역	58.1	41.9	2.2	3.2	6.3	11.5	28.1	48.7	100.0	61.0
2019	수도권	58.6	41.4	2.9	4.6	5.8	10.8	29.7	46.2	100.0	60.4
	광역시 등	57.3	42.7	2.0	5.7	5.6	7.4	33.4	45.9	100.0	60.3
	도지역	57.4	42.6	2.0	3.5	3.6	9.3	25.4	56.3	100.0	63.9
2023	수도권	58.9	41.1	3.9	4.6	4.1	9.8	28.0	49.6	100.0	61.2
	광역시 등	58.5	41.5	3.6	4.4	4.6	9.1	27.0	51.2	100.0	61.4
	도지역	56.2	43.8	2.8	3.5	3.9	7.9	26.1	55.8	100.0	63.7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2023년 장애인 개인 평균 연령은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소득 하위 : 평균 연령이 증가 추세('09년 59.7세 → '15년 62.5세 → '19년 65.7세 → '23년 66.5세)

- 소득 상위 : 평균 연령이 감소 추세('09년 55.4세 → '15년 54.7세 → '19년 52.3세 → '23년 49.0세)

표 III-104. 소득수준별 장애인 성별 및 연령

(단위 : %, 세)

구분		성별		연령							
		남	여	18세 미만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64세	65세 이상	계	평균
2009	소득 하위	56.2	43.8	2.3	3.0	5.6	13.1	30.1	46.0	100.0	59.7
	소득 중위	64.1	35.9	6.1	5.6	8.0	19.4	32.5	28.3	100.0	52.8
	소득 상위	61.2	38.8	6.5	4.4	5.2	17.1	32.5	34.2	100.0	55.4
2015	소득 하위	56.2	43.8	1.3	2.1	4.8	10.8	29.8	51.2	100.0	62.5
	소득 중위	64.2	35.8	5.4	7.1	9.0	14.2	33.5	30.8	100.0	53.4
	소득 상위	60.7	39.3	5.3	8.8	8.0	13.8	29.1	34.9	100.0	54.7
2019	소득 하위	54.3	45.7	1.0	2.2	3.0	7.8	26.1	59.9	100.0	65.7
	소득 중위	64.0	36.0	5.1	8.7	9.7	14.7	34.9	26.9	100.0	52.7
	소득 상위	70.3	29.7	6.9	12.2	7.1	10.4	34.6	28.8	100.0	52.3
2023	소득 하위	55.0	45.0	1.5	2.3	2.9	7.1	24.1	62.1	100.0	66.5
	소득 중위	63.7	36.3	6.9	7.5	6.0	12.3	33.5	33.8	100.0	54.2
	소득 상위	62.1	37.9	10.2	10.8	10.8	11.6	32.5	24.1	100.0	49.0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 평균 연령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은 66.2세로 가장 높고,

내부기관 장애인이 61.3세, 정신적 장애인이 38.3세로 나타남

표 III-105. 장애유형별 성별 및 연령

(단위 : %, 세)

구분		성별		연령							계	평균
		남	여	18세 미만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64세	65세 이상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58.0	42.0	1.6	2.0	4.4	13.6	32.3	46.1	100.0	60.6	
	내부기관 장애	61.2	38.8	0.8	1.5	7.4	15.5	38.2	36.6	100.0	58.3	
	정신적 장애	59.2	40.8	18.8	17.6	19.7	23.6	15.2	5.2	100.0	35.8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58.1	41.9	1.1	1.9	4.6	10.2	30.9	51.2	100.0	62.7	
	내부기관 장애	63.1	36.9	0.5	1.9	5.1	14.4	41.5	36.6	100.0	59.1	
	정신적 장애	57.9	42.1	14.8	19.8	17.4	22.9	21.7	3.3	100.0	37.0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56.6	43.4	1.3	1.6	3.6	7.0	28.7	57.8	100.0	65.3	
	내부기관 장애	60.6	39.4	0.8	1.2	4.1	15.6	35.2	43.1	100.0	61.1	
	정신적 장애	64.6	35.4	9.2	23.1	13.4	23.2	26.7	4.3	100.0	39.3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57.6	42.4	1.8	1.5	2.5	7.3	26.5	60.5	100.0	66.2	
	내부기관 장애	59.8	40.2	1.1	1.6	3.5	11.7	37.8	44.4	100.0	61.3	
	정신적 장애	58.2	41.8	14.6	21.5	14.7	17.7	25.5	6.0	100.0	38.3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 및 내부기관 장애인은 고령화로 인한 후천적 장애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과 내부기관 장애인의 평균 연령은 2009년 이후 계속 높아짐
- 정신적 장애인은 38.3세로 2019년(32.3세)에 비해 6.0세 가량 높아지고 조사 이후 연령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별 성별 분포를 보면 심한 장애인의 경우 남성이 60.7%로 많았으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56.3%로 심한 장애인에 비해 성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개인 평균 연령은 심한 장애인이 51.7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7.9세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고령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6. 장애등급별 성별 및 연령

(단위 : %, 세)

구분		성별		연령							
		남	여	18세 미만	18세 ~29세	30세 ~39세	40세 ~49세	50세 ~64세	65세 이상	계	평균
2009	심한 장애	60.8	39.2	6.9	6.4	8.6	16.4	26.8	35.0	100.0	53.7
	심하지 않은 장애	56.4	43.6	0.8	1.6	4.3	13.5	33.8	46.1	100.0	61.1
2015	심한 장애	62.2	37.8	6.1	7.9	8.4	14.9	30.5	32.2	100.0	53.5
	심하지 않은 장애	56.1	43.9	0.5	1.4	4.6	9.9	30.5	53.2	100.0	63.6
2019	심한 장애	64.1	35.9	5.1	10.1	7.9	15.1	31.1	30.6	100.0	53.2
	심하지 않은 장애	54.3	45.7	0.7	1.1	3.1	6.4	27.4	61.2	100.0	66.6
2023	심한 장애	60.7	39.3	8.1	10.2	8.3	13.6	29.2	30.7	100.0	51.7
	심하지 않은 장애	56.3	43.7	0.9	0.9	1.9	6.4	25.9	63.9	100.0	67.9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의 주요 원인

-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의 92.4%가 후천적으로 생기며, 그 중 주요 원인은 질환(46.9%)과 사고(38.6%)가 높게 나타남
- 내부기관 장애인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95.4%로 대부분이며 그 중 92.6%가 질환으로 발생하는 경우임
- 정신적 장애인은 선천적 장애가 장애유형 중에서 39.4%로 가장 높았으며, 후천적인 발생의 절반이 원인 불명으로 응답함
- 장애등급별로는 심한 장애(24.4%)가 심하지 않은 장애(4.7%)에 비해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음

표 III-107. 장애의 주요 원인

(단위 : %)

구분	선천적	후천적					후천적	계
		질환	사고	노화	원인불명	소계		
전체	11.6	48.8	33.8	3.7	13.7	100.0	88.4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7.6	46.9	38.6	4.3	10.2	100.0	92.4
	내부기관 장애	4.6	92.6	2.0	0.6	4.8	100.0	95.4
	정신적 장애	39.4	33.9	12.8	0.2	53.2	100.0	60.6
장애 등급	심한 장애	24.4	48.9	26.8	0.9	23.4	100.0	75.6
	심하지 않은 장애	4.7	48.7	36.8	4.9	9.6	100.0	95.3

주 : 선천적 장애는 출생 전 또는 출생 시(만 1세 이전 포함) 장애가 있는 경우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 장애인 개인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은 평균 2.5점이 중간으로 봤을 때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2.98점), 이웃과의 관계(2.85점), 전반적인 삶의 질(2.51점)은 중간 이상의 점수이며, 건강상태(2.23점), 경제상태(2.19점)는 중간 이하의 점수를 보임
- 2009년과 비교하였을 때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건강상태, 경제상태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중간 점수 이하로 나타남

표 III-108.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건강상태	경제상태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
장애인 개인	2009	1.98	1.85	3.01	2.98	2.29
	2015	2.10	2.06	2.97	2.97	2.49
	2019	2.10	2.02	2.91	2.86	2.38
	2023	2.23	2.19	2.98	2.85	2.51

주 : 삶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소득수준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소득이 많을수록 전반적으로 양호한 인식상태를 보임
 - 소득 상위의 경우 모두 중간 점수(2.5점) 이상으로 나타남
 - 소득 하위의 경우 경제상태는 2.03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도 2.11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표 III-109. 소득수준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건강상태	경제상태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
2009	소득 하위	1.87	1.69	2.96	2.95	2.17
	소득 중위	2.22	2.19	3.11	3.04	2.56
	소득 상위	2.35	2.55	3.18	3.12	2.82
2015	소득 하위	1.99	1.90	2.92	2.95	2.36
	소득 중위	2.33	2.36	3.03	2.99	2.71
	소득 상위	2.40	2.62	3.11	3.07	2.90
2019	소득 하위	1.99	1.86	2.83	2.83	2.27
	소득 중위	2.29	2.31	3.03	2.91	2.58
	소득 상위	2.48	2.57	3.16	2.97	2.82
2023	소득 하위	2.11	2.03	2.90	2.80	2.39
	소득 중위	2.46	2.49	3.05	2.94	2.76
	소득 상위	2.63	2.76	3.19	2.99	2.87

주 : 삶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인 삶의 질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2.53점), 정신적 장애인(2.47점), 내부기관 장애인(2.40점) 순으로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은 중간 점수 이상을 보임

-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은 항목 중에서 경제상태를 가장 열악한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내부기관 장애인은 건강상태를 가장 열악하다고 인지함
- 모든 장애유형에서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 III-110. 장애유형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건강상태	경제상태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
2009	외부 신체기능 장애	1.97	1.87	3.05	3.02	2.32
	내부기관 장애	1.63	1.71	3.00	2.93	2.11
	정신적 장애	2.19	1.76	2.79	2.63	2.11
2015	외부 신체기능 장애	2.08	2.08	2.98	2.99	2.51
	내부기관 장애	1.86	1.97	2.96	2.95	2.36
	정신적 장애	2.35	2.00	2.86	2.83	2.38
2019	외부 신체기능 장애	2.08	2.03	2.93	2.90	2.40
	내부기관 장애	1.83	1.97	2.88	2.89	2.28
	정신적 장애	2.34	1.96	2.80	2.60	2.30
2023	외부 신체기능 장애	2.22	2.20	2.99	2.88	2.53
	내부기관 장애	1.99	2.15	2.97	2.86	2.40
	정신적 장애	2.45	2.15	2.92	2.67	2.47

주 : 삶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장애등급별로 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심한 장애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모든 항목에서 심한 장애인보다 양호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11. 장애등급별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단위 : 점)

구분		건강상태	경제상태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전반적인 삶의 질
2009	심한 장애	1.88	1.74	2.94	2.86	2.14
	심하지 않은 장애	2.05	1.93	3.08	3.06	2.40
2015	심한 장애	2.06	1.98	2.93	2.92	2.38
	심하지 않은 장애	2.13	2.11	2.99	3.00	2.55
2019	심한 장애	2.08	1.96	2.85	2.74	2.27
	심하지 않은 장애	2.11	2.05	2.95	2.93	2.45
2023	심한 장애	2.23	2.11	2.93	2.74	2.42
	심하지 않은 장애	2.24	2.23	3.01	2.91	2.56

주 : 삶에 대한 만족도는 4점 척도로 1에 가까울수록 매우 불만족, 4에 가까울수록 매우 만족을 의미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자신의 주택 등에서의 활동 가능 여부

- 장애유형별로 '탈의 및 옷 갈아입기 가능 여부'를 보면 정신적 장애의 경우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1.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내부기관 장애인은 89.9%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여 타 유형에 비해 신체적인 제한이 적은 것으로 보임

- 장애등급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90.9%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고 심한 장애인은 71.0%로 낮게 응답함

-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가 12.5%,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가 16.5%로 높음

표 III-112. 탈의 및 옷 갈아입기 가능 여부

(단위 : %)

구분		혼자 할 수 있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계
전체		83.9	9.2	6.8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85.5	7.9	6.6	100.0
	내부기관 장애	89.9	5.6	4.4	100.0
	정신적 장애	71.6	18.9	9.5	100.0
장애 등급	심한 장애	71.0	16.5	12.5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90.9	5.3	3.8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 '화장실 이용 가능 여부'를 보면 '탈의 및 옷 갈아입기' 활동에 비해 혼자 할 수 있는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가 9.5%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장애등급별로는 심한 장애인의 12.5%가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하여 심하지 않은 장애인(3.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91.7%가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여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이용 제약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표 III-113. 화장실 이용 가능 여부

(단위 : %)

구분		혼자 할 수 있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계
전체		85.4	7.7	6.8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86.9	6.6	6.6	100.0
	내부기관 장애	91.0	4.3	4.6	100.0
	정신적 장애	74.0	16.5	9.5	100.0
장애 등급	심한 장애	73.7	13.8	12.5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91.7	4.5	3.8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장애유형별로 ‘목욕하기 가능 여부’는 혼자 할 수 있는 비율이 내부기관 장애인 82.5%,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은 79.7%, 정신적 장애 61.1% 순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심한 장애인은 60.9%만 혼자 목욕이 가능하며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86.3%가 가능하다고 응답함

표 III-114. 목욕하기 가능 여부

(단위 : %)

구분		혼자 할 수 있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계
전체		77.4	12.9	9.7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79.7	11.3	9.0	100.0
	내부기관 장애	82.5	11.5	6.0	100.0
	정신적 장애	61.1	23.3	15.7	100.0
장애 등급	심한 장애	60.9	21.3	17.8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86.3	8.3	5.4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조리 및 식사 준비 가능 여부’는 다른 활동에 비해 혼자 할 수 있는 비율이 낮음
- 장애유형별로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42.8%만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응답함
 -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3%로 높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7.9%, 심한 장애인은 47.3%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심한 장애인의 28.4%는 도움 없이는 조리 및 식사 준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15. 조리 및 식사 준비(부엌일 포함) 가능 여부

(단위 : %)

구분		혼자 할 수 있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계
전체		67.2	17.6	15.2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70.7	16.6	12.7	100.0
	내부기관 장애	73.2	15.7	11.0	100.0
	정신적 장애	42.8	24.9	32.3	100.0
장애 등급	심한 장애	47.3	24.4	28.4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77.9	14.0	8.1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청소 등 집안 정리'도 혼자 할 수 있는 비율이 67.3%로 낮게 나타남
- 장애유형별로는 전반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으며,
 -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28.8%는 도움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다고 응답함
- 장애등급별로는 심한 장애인의 경우 절반 미만이 '혼자 할 수 있다'고 응답함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는 78.1%가 집안 청소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조사됨

표 III-116. 청소 등 집안 정리 가능 여부

(단위 : %)

구분		혼자 할 수 있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계
전체		67.3	18.2	14.5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70.5	16.9	12.6	100.0
	내부기관 장애	74.2	16.1	9.6	100.0
	정신적 장애	44.2	27.0	28.8	100.0
장애 등급	심한 장애	47.1	25.8	27.1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78.1	14.1	7.8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장애유형별 '주택주변 산책'을 혼자 할 수 있는 비율은 내부기관 장애인 82.3%,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 77.0%, 정신적 장애인 56.6% 순으로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심한 장애인의 경우 57.2%만 혼자 산책이 가능하며, 절반 정도는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84.0%가 혼자 산책이 가능하다고 응답함

표 III-117. 주택주변 산책

(단위 : %)

구분		혼자 할 수 있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계
전체		74.6	13.1	12.3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77.0	11.5	11.6	100.0
	내부기관 장애	82.3	9.8	7.9	100.0
	정신적 장애	56.6	24.6	18.8	100.0
장애 등급	심한 장애	57.2	21.3	21.5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84.0	8.7	7.4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2) 장애인 편의시설

(1) 편의시설 설치여부

➤ 주택 내부/집안

- 장애인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주택 내부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설은 바닥의 ‘미끄럼방지 마감재’로 나타남
-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반드시 필요한 비율에 비해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반드시 필요로 하는 비율보다 설치 비율이 높은 주택내부 시설은 불편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출입문, 거실의 ‘비디오폰 설치, 시각정보기, 청각정보기’와 욕실의 ‘위아래 이동 가능한 샤워기’로 세 가지 항목뿐임
 - 바닥의 ‘미끄럼 방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1.6%로 가장 높으나, 설치율은 9.8%에 불과함
 - 부엌에 ‘좌식 싱크대’는 장애 유형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율이 11.9%로 가장 높으나, 설치율은 1.8%로 현저히 낮음
 - 욕실에 있는 내부시설도 ‘위아래 이동 가능한 샤워기’를 제외하고 설치율이 낮음
- 내부기관 장애인 및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보다 반드시 필요로 하는 비율이 대부분 낮게 나타남
 -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와 마찬가지로 바닥의 ‘미끄럼방지 마감재’(26.9%)로 조사됨
 - 정신적 장애인은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가 22.0%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내부기관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비율보다 설치율이 높게 나타난 주택내부시설은 다음과 같음
 - 불편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출입문, 현관 출입문 옆 ‘수직 혹은 수평 손잡이’, 거실의 ‘비디오폰 설치, 시각정보기, 청각정보기’가 해당함
 - 욕실 내 ‘위아래 이동 가능한 샤워기’와 ‘좌변기 옆 여유공간’도 설치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III-118.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조 여부 및 필요성(주택 내부/집안)(계속)

(단위 : %)

구분		모든 장애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	
		설치율	반드시 필요	설치율	반드시 필요	설치율	반드시 필요	설치율	반드시 필요
바닥	미끄럼방지 마감재	9.6	29.6	9.8	31.6	9.3	26.9	8.8	18.7
	바닥 단차 및 문턱제거	20.4	26.3	20.5	27.9	22.1	22.1	18.8	18.8
출입문	충분한 출입문 너비	42.9	16.6	43.3	17.5	44.5	16.9	39.6	11.0
비상연락 장치	경비실 등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	19.2	25.1	19.1	25.9	22.7	21.7	18.5	22.0
현관	현관출입문 옆 수직 혹은 수평 손잡이	19.4	20.8	19.6	22.3	21.2	18.2	17.2	13.0
	마루와 현관 사이 경사로	14.0	19.8	14.2	21.1	15.5	16.7	12.5	13.0
거실	비디오폰, 시각경보기, 청각경보기	28.0	23.2	27.9	23.8	32.5	22.7	26.3	19.6
부엌	좌식싱크대	1.8	10.6	1.8	11.9	1.8	7.8	1.5	3.9
욕실	동작감지센서 조명	10.1	25.4	10.5	26.4	10.1	23.8	8.2	19.6
	적절한 높이의 욕조	14.7	19.5	14.5	20.6	16.5	17.2	14.7	14.0
	위아래 이동 가능한 샤워기	34.6	23.2	33.9	23.9	37.0	22.2	37.5	19.6
	안전손잡이 설치	9.0	25.1	9.5	27.0	8.5	21.0	6.1	15.5
	박여닫이, 미닫이, 미서기문	11.3	19.4	11.3	20.7	12.3	17.9	11.2	12.2
	좌변기 옆 여유 공간	20.2	19.6	20.0	20.6	20.2	18.4	21.2	14.1
	높낮이 조절 세면기	3.6	18.0	3.6	19.3	4.0	16.4	3.3	10.9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주택 외부/ 집밖

- 주택외부 편의시설은 모두 반드시 필요하다는 비율보다 설치율이 높게 나타남
 - ‘점자블럭’과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를 제외하고 설치율이 절반에 가까움
 - 장애 유형별로 살펴봐도 외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 모두 설치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시각장애인의 경우 주택 외부의 점자블럭 설치율이 27.2%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 20.3%보다 높게 나타남
- 시각 및 청각 유도 및 안내 설비도 설치율이 25.2%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I-11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조 여부 및 필요성(주택 외부/집밖)

(단위 : %)

구분	모든 장애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	
	설치율	반드시 필요	설치율	반드시 필요	설치율	반드시 필요	설치율	반드시 필요
주출입구 계단에 경사로	43.2	22.1	42.5	22.6	48.6	21.0	44.8	19.9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47.3	19.2	46.8	18.9	53.4	21.4	48.0	19.8
엘리베이터 설치	47.2	19.7	46.8	19.8	51.9	22.3	47.3	17.9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없는 도로 폭 및 도로상태	52.0	18.7	51.7	19.2	55.2	19.3	52.3	15.3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	-	27.2	20.3	-	-	-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	-	25.2	20.6	-	-	-	-

주1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만 응답

주2 :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는 시각, 청각장애인만 응답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2) 편의시설 설치 어려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어려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이 38.0%로 가장 높았고, '큰 불편이 없어서(37.6%)' 순임
 - '큰 불편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소득 중위, 상위와 다르게 소득 하위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개조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표 III-120.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어려움

(단위 : %)

구분		큰 불편이 없어서	경제적인 부담	정보와 방법을 몰라서	번거롭고 어려워	집값 하락 우려	집주인의 반대	신경 쓸 여유가 없음	기타	계
전체		37.6	38.0	11.5	7.3	0.2	2.9	2.2	0.3	100.0
소득	소득 하위	29.9	44.4	12.3	7.3	0.2	3.3	2.4	0.1	100.0
	소득 중위	53.4	24.2	9.6	7.6	0.1	2.6	1.6	0.9	100.0
	소득 상위	77.8	6.5	2.7	8.9	0.2	0.4	2.7	0.8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35.9	39.3	11.7	7.4	0.2	3.0	2.2	0.3	100.0
	내부기관 장애	43.4	33.7	11.2	5.9	0.2	2.8	2.7	-	100.0
	정신적 장애	46.8	30.2	10.0	7.7	0.1	2.2	2.3	0.7	100.0
장애 등급	심한 장애	36.6	36.1	11.9	8.5	0.1	3.9	2.4	0.4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38.1	39.0	11.3	6.7	0.2	2.4	2.1	0.3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3) 장애인 가구원의 분가 희망

(1) 분가 희망 여부 및 가장 필요한 지원¹⁰⁾

- 장애인 가구원 중 분가를 희망하는 비율은 8.1%이며, 장애유형 중에는 내부기관 장애인이 16.3%로 가장 높음
- 희망하는 거주형태는 단독(독신)이 59.3%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 등 가족형성(16.8%), 가족 일부와 거주(15.9%) 순임

표 III-121. 분가 희망 여부 및 거주 형태

(단위 : %)

구분	예	거주 형태						아니오	계
		단독 (독신)	결혼 등 가족 형성	가족 일부와 거주	친구 및 동료와 거주	도우미와 함께	소계		
전체	8.1	59.3	16.8	15.9	3.1	5.0	100.0	91.9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8.6	63.1	16.1	13.8	-	7.0	100.0	91.4
	내부기관 장애	16.3	72.2	-	22.1	-	5.7	100.0	83.7
	정신적 장애	7.2	53.8	19.6	17.2	6.4	2.9	100.0	92.8
장애 등급	심한 장애	7.1	53.8	17.1	17.4	4.6	7.2	100.0	92.9
	심하지 않은 장애	11.4	70.6	16.0	13.0	-	0.4	100.0	88.6

주 : 분가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원의 표본 수가 적어(101개) 해석에 유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분가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원 중 분가 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주택지원'이 69.0%로 가장 높음

- 장애유형별로는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은 '생활비 지원'이 29.8%로 높았으며, 내부기관 장애인은 일자리 지원이 13.3%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등급별로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생활비 지원'이 25.3%로 높았으며, 심한 장애인은 '보조인, 간병인 등 지원', '보조 시설', '보건복지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를 보임

표 III-122. 분가 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

구분	주택 지원	생활비 지원	일자리	보조인 간병인 도우미 등	보조 시설	정보 제공 서비스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이동 지원 교통 수단	기타	없음	계
전체	69.0	17.8	7.3	2.0	1.7	0.8	1.3	-	-	-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60.4	29.8	6.1	-	2.0	1.8	-	-	-	100.0
	내부기관 장애	79.6	3.5	13.3	3.7	-	-	-	-	-	100.0
	정신적 장애	75.9	8.2	7.7	3.7	1.6	2.8	-	-	-	100.0
장애 등급	심한 장애	69.4	14.2	8.9	3.0	2.5	-	2.0	-	-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68.2	25.3	4.0	-	-	2.5	-	-	-	100.0

주 : 분가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원의 표본 수가 적어(101개) 해석에 유의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10) 8,046가구 중 분가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원의 표본 수는 101개로 해석에 유의

4) 주택마련 정보취득 방법 및 희망 주거환경

(1) 주택마련 및 장애인 주거지원 정보취득 방법

- 주택을 마련하는데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중 가장 높은 것은 ‘주민센터’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27.5%, ‘주변 사람에게 취득(13.3%)’ 순으로 나타남
- 주거복지센터, 마이홈센터 등 ‘주거지원기관’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비율은 ‘지역 정보지’ 다음으로 낮게 나타남
- 소득 하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비율이 4.8%로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음
- 장애 유형 및 등급별로 살펴보면, 각각 정신적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 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표 III-123. 주택마련 정보취득 방법

(단위 : %)

구분		주거지원 기관	장애인 복지 관련기관 및 시설	주민센터	지역 정보지	인터넷	주변 사람	기타	없음	계
전체		3.0	9.8	27.5	2.5	8.2	13.3	0.3	35.5	100.0
소득	소득 하위	3.2	9.8	31.3	2.4	4.8	14.8	0.3	33.4	100.0
	소득 중위	2.6	10.6	20.1	2.2	13.1	9.8	0.2	41.4	100.0
	소득 상위	2.4	9.6	12.2	3.3	21.2	10.4	-	40.8	100.0
장애 유형	외부 신체기능 장애	2.7	8.8	27.5	2.5	7.6	13.6	0.3	37.0	100.0
	내부기관 장애	3.2	9.5	25.1	3.3	13.4	10.2	0.4	34.8	100.0
	정신적 장애	4.5	16.1	28.3	2.0	9.1	12.8	0.3	27.0	100.0
장애 등급	심한 장애	4.1	15.6	27.9	2.0	9.5	13.0	0.5	27.4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2.4	6.7	27.3	2.8	7.4	13.4	0.2	39.9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5) 장애인 필요 주거서비스

(1) 개인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받고 싶은 서비스

- 개인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받고 싶은 서비스 중 ‘필요 없음’ 응답 비율이 68.8%로 높았으며, 이를 제외하고 ‘요리 및 반찬 제공’ 서비스(15.0%), ‘병원 및 외출시 동반 서비스’(5.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 소득별, 장애 유형별, 장애 등급별로도 모두 ‘요리 및 반찬 제공’ 서비스, ‘병원 및 외출시 동반’ 서비스 순으로 조사됨

표 III-124. 개인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받고 싶은 서비스(1순위)

(단위 : %)

구분		요리 및 반찬제공	개인 위생	외출 동반	간병	세탁	청소	기타	필요 없음	합계
전체		15.0	3.0	5.3	3.7	1.1	3.1	0.1	68.8	100.0
지역별	수도권	14.6	2.2	4.9	2.0	1.2	3.0	0.1	72.0	100.0
	광역시 등	12.5	2.9	5.4	3.9	0.8	2.3	0.1	72.1	100.0
	도지역	16.7	3.9	5.6	5.4	1.2	3.7	-	63.4	100.0
소득별	소득 하위	18.3	3.1	5.4	4.3	1.1	3.4	0.1	64.3	100.0
	소득 중위	8.1	2.5	4.9	2.2	1.1	3.0	0.1	78.1	100.0
	소득 상위	7.0	2.7	4.6	2.5	1.5	2.5	0.1	79.1	100.0
장애 유형별	외부 신체기능 장애	15.0	3.0	4.8	3.9	1.1	3.2	-	69.1	100.0
	내부기관 장애	14.7	3.4	5.6	3.4	1.0	3.0	0.2	68.9	100.0
	정신적 장애	15.3	2.9	8.3	2.6	1.3	2.6	0.2	66.7	100.0
장애 등급별	심한 장애	16.1	4.5	7.8	4.2	1.0	2.9	0.1	63.4	100.0
	심하지 않은 장애	14.4	2.2	3.9	3.4	1.2	3.2	-	71.6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IV. 장애인 및 활동보조사 FGI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장애인가구)



IV. 장애인 및 활동보조사 FGI



1. 개요

1) FGI 수행 배경

- 장애인의 주거환경은 장애인의 생활 특성상 장애인의 거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택내외부의 보조시설 이용 여부 및 편의성이 매우 중요
- 일부 장애인은 주택 내에 거주하는 시간이 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거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 가구의 구체적인 주거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로 하는 주거환경과 보조시설이 다르므로, 장애유형별 특성과 주거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조사표 설문만으로는 장애인이 체감하는 정도나 필요성,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직접 면담을 통해 파악할 필요

2) 목적

- 장애인 가구의 주거 현황에 대한 이해 증진과 개선 필요성 파악
- 장애인 대상의 설문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주택 내외의 환경과 장애인 보조시설의 구체적인 이용 현황과 불편함, 필요성, 편리성 등을 파악
 - 2023년의 경우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가구 주거실태조사 실시
- 설문결과와 FGI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거지원 방향 설정을 가능하게 함

2. FGI 수행절차

- FGI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 사전조사, 장애인 및 활동보조사를 대상으로 한 FGI 수행의 순서로 진행

표 IV-1. FGI 수행절차와 그에 따른 조사대상

구분		대상	일시	주요내용
전문가 자문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가	'24.03.05.	- 장애인의 실내생활유형과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 장애인 주거환경에 대한 유관 선행조사와 시사점 - 장애인대상 FGI 조사방법론
사전조사		FGI참여자(장애인, 활동보조사가 지원하는 장애인 가구)	FGI 이전 참여자가 자율적 수행	조사참여자가 사전질의(편의시설 현황, 정책욕구 등)와 장애인 가구 주거실태조사 설문지 일부를 응답하여 본조사에 활용
본조사	활동보조사 FGI	장애인 활동보조사 4인	'24.03.29.	사전조사를 기반으로 당사자의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 및 토론 -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주거환경 - 대상가구의 편의시설 현황 및 요구 - 장애인 주거지원 필요와 요구
	장애인 FGI	○1차: 보행 및 시각 장애 4인 ○2차: 휠체어 사용 및 좌식생활 장애 4인	'24.04.18.	(+활동보조사) 장애인 가구 대상 서비스 제공 이력 (+활동보조사) 물리적 측면에서의 장애인 서비스의 어려움

자료: 연구진 작성

1) 전문가 자문

(1) 대상 및 일자

-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담 및 화상자문 수행 (2024년 3월)

(2) 자문 내용

- 장애인의 실내생활유형과 특성에 따른 조사내용 도출
- 장애인 주거환경에 대한 관련 선행조사와 연구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장애인대상 FGI 조사방법론 자문

2) 사전조사

- 조사참여자에게 FGI 수행 이전에 사전질의(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현황, 정책 필요성 등)와 장애인 가구 주거실태조사 설문지 일부를 제공하여 참여자에 대한 기본정보 파악

3) 본조사

(1) 장애인 활동보조사 FGI

- 참석자: 장애인 서비스 종사자 4인
- 일시: 2024.3.29.
- 장소: 누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서울시 강서구)
- 목적: 장애인 가구의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 이용 현황과 요구 및 필요, 장애인 주거지원 필요에 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는 활동보조사의 의견 수렴
- 방식: 사전질문을 제공한 후 활동보조사의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및 토론 수행

표 IV-2. 장애인 활동보조사 FGI 조사대상

구분		성별	총 경력 기간	장애유형 지원경력	생활유형 지원경력
활동 보조사	3-A	여	8년	뇌병변, 정신	와상생활, 단독보행가능
	3-B	남	15년	지체, 뇌병변	와상생활, 휠체어사용
	3-C	여	10년	지적	단독보행가능
	3-D	여	10년	지체	휠체어사용

표 IV-3. 장애인 활동보조사가 현재 지원하는 가구 특성

구분		개인						주택					
		장애 유형	성별	나이	장애 정도	활동 보조 기구	가구 원수	점유 형태	주택 유형	전용 면적	주택 건축 경과 연수	엘리베이터 유무	거주 지역
활동 보조 사	3-A	정신 (발달)	남	43	심한	X	1	임차	오피스텔	약 10평 초반	30년	O	서울 강서구
	3-B	지체	남	51	심한	집밖: 전동휠체어 집안: 일반휠체어	1	임차	SH 영구임대 아파트	11평	30년	O	서울 강서구
	3-C	지적	여	32	심한	X	2	임차	SH 영구임대 아파트	12평	30년	O	서울 강서구
	3-D	지체	남	48	심한	집밖: 전동휠체어 집안: 일반휠체어	1	임차	LH 국민임대 아파트	18평	13년	O	경기 김포시

(2) 장애인 FGI

- 참석자: 중증 장애인 8인
- 일시: 2024.4.18.
- 장소: 누리장애인 자립생활센터(서울시 강서구)
- 목적: 장애인 가구의 주택 내·외부 편의시설 이용 현황과 요구 및 필요, 장애인 주거지원 필요에 대해 장애인의 의견 수렴
- 방식: 사전질문을 제공한 후 장애인의 주거 및 시설 관련 경험과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및 토론 수행

표 IV-4. 장애인 FGI 조사대상

구분		장애 유형	성별	나이	장애 정도	활용 보조 기구	활동 보조 시간	근로 소득 유무	수급 여부
보행 및 시각 장애	1-A	시각	남	67세	심한	X	월 120시간	X	공무원연금
	1-B	지체	남	65세	심한	목발	X	X	X
	1-C	지체, 시각	남	55세	심한	X	월 30시간	O	장애수당
	1-D	지체	남	51세	심한	집밖: 전동휠체어 집안: 일반휠체어	월 90시간	O	X
휠체어 사용 및 좌식 생활 장애	2-A	지체	여	58세	심한	집밖: 전동휠체어 집안: 일반휠체어	월 150시간	X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2-B	지체	남	48세	심한	전동휠체어	월 120시간	X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2-C	지체	여	63세	심한	집밖: 전동휠체어 집안: 고정형 리프트	월 150시간	X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2-D	지체	남	56세	심한	집밖: 전동휠체어 집안: 지팡이	월 150시간	X	장애수당, 기초생활급여

표 IV-5. 장애인 FGI 조사대상의 주거특성

구분		가구원 수	점유형태	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건축 경과연수	엘리베이터 유무	거주지역
보행 및 시각 장애	1-A	1	임차	LH 영구임대 아파트	11평	20년	O	서울 강서구
	1-B	2	자가	민간 연립주택	28평	-	X	서울 강서구
	1-C	1	임차	SH 영구임대 아파트	18평	30년	O	서울 강서구
	1-D	1	임차	LH 영구임대 아파트	17평	35년	O	서울 강북구
휠체어 사용 및 좌식 생활 장애	2-A	1	임차	SH 영구임대 아파트	14평	30년	O	서울 강서구
	2-B	1	임차	LH 국민임대 아파트	14평	10년	O	경기 김포시
	2-C	2	임차	SH 영구임대 아파트	9평	30년	O	서울 강서구
	2-D	1	임차	SH 영구임대 아파트	9평	30년	O	서울 강서구

3. 연구방법

1) 주요 질문 항목 (장애인 본인)

(1) 장애인 대상 관련 기초 사항

- 해당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 해당 장애인의 주거환경(주택의 종류, 층수, 면적, 노후도 등)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 현황, 문제, 요구사항

- [주택구조 및 시설] 주택의 형태(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나 공공임대주택 여부 등에 따라 거주하는 장애인이 겪는 불편한 점은 무엇인가?
- 주거형태(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 [필요시설] 주택 내·외부에서 필요한 편의시설은?
- 공간 확장이 필요하거나 구조 변경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 주택 내·외부에서 개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혹시 불필요한 개조는?; 개조로 인한 불편함)
- [편리성] 편의시설의 유무(有無)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설치전 전후 비교)
- [만족도, 개선사항] 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특성에 따른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스쿠터, 보행보조기, 목욕실 및 화장실 등에서의 시설 등)의 만족도와 개선사항은?
- [돌봄시 어려움] 활동보조사분들로부터 장애인 본인에 대한 돌봄 시 주택 내외에서 물리적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점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들은 사항

(3)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

- [비용부담 및 조건] 시설의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공공으로부터 정책적인 지원은 없었나? 있었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관리]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수리 및 관리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
/ 누가 편의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하는가?

(4) 정책 욕구 관련

- [독립 시 시설, 지원] 장애인의 독립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편의시설 및 지원이 필요한가?
- [이사 관련] 이사(혹은 독립)를 희망하는 경우, 이사(혹은 독립) 가고 싶은 주택 및 환경과 이유는?
- [필요 정책] 장애인 보조시설 이외에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한가? (경제지원, 서비스 지원 등)
- [정책문제 및 방향성] 현재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주요 질문 항목 (활동보조사 대상)

(1) 활동보조사의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이력

- 현재 및 과거에 제공한 장애인 서비스 형태, 경력, 활동범위 등
- 서비스를 받고 있는[받았던]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 서비스를 받고 있는[받았던] 장애인의 주거환경(주택의 종류, 층수, 면적, 노후 등)

(1) 활동지원 서비스의 어려움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 현황, 문제, 요구사항 등

- [돌봄시 어려움] 주택 내외에서 장애인 돌봄 진행 시 물리적 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 [주택구조 및 시설] 주택의 형태(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나 공공임대주택 여부 등에 따라 거주하는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의 차이
- [필요시설] 활동보조사 관점에서 본인이 서비스하는데 주택 내·외부 중 필요한 편의시설
 - 장애 종류별나 정도별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 주거형태(단독주택, 아파트 등)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 장애인 관점에서는 어떤 시설 등이 필요한가?
- [편리성] 편의시설의 유무(有無)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설치전 전후 비교)
- [편의 차이] 장애인의 편의와 활동보조사의 편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만족도, 개선사항] 장애인의 생활환경 및 특성에 따른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스쿠터, 보행보조기, 목욕실 및 화장실 등에서의 시설 등)의 만족도와 개선사항은?

(2)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

- [비용부담 및 조건] 시설의 설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공공으로부터 정책적인 지원은 없었나? 있었다면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관리]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수리 및 관리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가? / 누가 편의시설을 유지·보수·관리하는가?

(3) 정책 욕구 관련

- [독립 시 시설, 지원] 장애인의 독립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독립을 위해서는 어떤 편의시설 및 지원이 필요한가?
- [필요 정책] 장애인 보조시설 이외에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한가? (경제지원, 서비스 지원 등)
 - 장애인 혹은 활동보조사 입장에서
- [정책문제 및 방향성] 현재 장애인을 위한 주거지원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장애인 대상 FGI 결과

- 장애인과 활동보조사를 대상으로 한 FGI를 기반으로 주제별 내용을 정리하여 시사점 도출

1)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 현황, 문제, 요구사항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지역에 따른 특성)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서울의 영구임대 아파트는 오래되고 낙후되어 불편이 많음. 한 응답자가 거주하는 경기도 임대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신축이고, 넓은 면적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
 - 10년 내 지어진 LH 국민임대 거주 장애인 경우, 입주 시 LH에서 장애인 시설 관련 수요를 조사하고 설치를 완료하여 만족도가 높은 편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관련 - 주택 내부

- (욕실) 주택 내부에서는 휠체어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욕실이 가장 불편함을 많이 겪는 곳으로 기본적으로 충분한 면적 확보가 필요
 - 문이 다 열리지 않고 걸리는 문제, 동선을 고려하지 않은 수전기구의 위치 문제
 - 화장실 내 세면대 밑에 위치한 콘센트 이용 시 안전 문제 발생 우려 있음
 - 욕조 등을 사용할 경우 몸을 지지할 수 있는 간단하더라도 보조기구가 필요
 - 시각 장애인은 대중 목욕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택내 개별 욕조를 원하고 있음 (피로 회복 등을 위해 욕조를 이용한 목욕 요구)에 몸을 담그면 한결 피로 등을 줄일 수 있음
 - 낮은 높이의 욕조도 선호하지만, 지체 및 외상 장애 같은 거동이 어려운 경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음

(응답자 1-A) “저는 지금 주공 아파트 11평에 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화장실이 좀 작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자꾸 부딪혀서 샤워를 하거나 할 때도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욕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사우나 같은 걸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욕조가 있으면 피로가 풀릴 거 같은데 아쉬워요. 방 크기를 줄이더라도 화장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응답자 1-A) “화장실이 작아서요. 들어가면 한 평도 채 안 될 것 같고, 팔 벌리면 옆에 다 닿으니까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 (주택면적)

- 실내에서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려는의 경우 주거면적이 좁아 전후 이동만 가능.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침대 생활이 불가피하며, 좁은 면적 때문에 침대 이외에 식탁 등의 다른 가구를 놓기 어려움
- 수납 공간이 부족하고, 높게 시공된 베란다 문턱으로 인해 베란다는 아예 진입 불가하고 창고로만 이용할 수 밖에 없음

(응답자 2-A) “그리고 이사를 간 곳은 안방 문과 거실 사이를 샷시로 턱을 만들어 놓은거예요. 들어갈 때, 안방 문턱이 너무 높아서 거기에 계속 넘어져서 어떤 때에는 하루에 두 세 번씩 넘어지는거예요. 그렇게 한 번씩 넘어지면 진짜 몇 시간씩 정신이 아찔할 정도예요.”

(응답자 2-A) “휠체어 때문에 바닥에 앉으면 일어나는 게 힘드니까 침대를 놓아야 생활이 가능하고, 식탁을 하나 놓고 싶어도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집 안에서 휠체어를 타야하는데, 침대를 놓으니까 수동 휠체어로도 돌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응답자 2-D) “차라리 벽을 잡는 것이 나아요. 안그래도 방이 좁으니까 핸드바 같은게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서 집안의 짐을 잡고 움직이는 게 나아요.”

○ (휠체어 관련)

- 전동 휠체어 충전을 위해 전선을 밖으로 빼면 창이나 현관을 완전히 닫을 수 없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하나 보안 문제 발생; 최소한 현관 출입구 근처에 콘센트를 설치할 필요
- 복도식 아파트 내 가장 안쪽 끝이나 입구 세대 선회(휠체어 보관이 용이하므로)
- 해당 층 엘리베이터 쪽에 휠체어만 보관하고 충전할 수 있는 등의 별도 공간 구획 필요
- 외벽에 소켓(콘센트)이 설치되어 전동휠체어 충전이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음. 부가적으로는 외부에서 소켓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집 안에서 스위치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설비 필요

(응답자 2-A) “전기 코드를 새로 뽑게 할 수는 없겠지만, 비상용이라도 하나 정도는 각 집 안에서 스위치를 끄고 잠그고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 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들었거든요. 콘센트가 없으니까, 저희가 전선을 빼서 충전하고 있으면, 창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누가 문을 열고 우리 집을 보고 있어요.”

○ (노후화 관련) 악취, 높은 문턱 등의 문제

○ (기타 보조시설)

- 야간에 필요한 센서등과 on/off 리모콘 등 필요
- (돌아눕거나 일어서기 위한) 침대 근처 손잡이 필요
- 특히 시각장애인은 문모서리 등에 쉽게 부딪히기 때문에 미닫이문이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안여닫이 필요
- 시각 장애를 위한 현관에서부터 동선이 이어지는 손잡이 필요

(응답자 1-A) “화장실 문, 방문 등이 다른 곳들과 다르게 여기는 밖에서 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관에 다닐 때 부딪혀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를 모르고 가다 보면 부딪히고, 그 문 모서리 같은 데 얼굴이 부딪히고 하니까 손을 벌려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문을 안으로 열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들어가는 데 저희들이 붙들고 들어갈 수 있는 안전대 같은 걸 벽에다 설치 해주시면 저희가 다니기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나 같은 데 이렇게 모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서리 같은 데 저희들이 많이 부딪혀서, 모서리를 타원형으로 바꿔주시면 다쳐도 상처가 안날테니까요.”

○ 최소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필요

○ 필요한 시설이나 개인이 전액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관련 - 주택 외부

- 공용 공간(특히 복도 등)의 폭이 너무 좁음
 - 스쿠터 및 화분, 짐 등 적치로 인해 복도가 좁은 것도 불편
- 장애인 주차공간 부족

2)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 관련

(1) 장애인 돌봄서비스 관련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공통적으로 배당된 시간이 부족함. 사회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가사 도움뿐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생활에서도 활동보조사의 도움을 일부 받았으면 함
- 수선급여 지원(예: 서울시 강서구구청의 ‘홍반장 기동대’ 등) 관련 정보 안내 부족, 진행 상황 공유 부족

(응답자 1-C) “저는 확실하게 시간이 부족해요. 저는 사회활동이라는 개념 자체를 집에 계신 분들이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도움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각장애도 있어서 직장에 가셔도 활동보조사님이 날 도와주는 시간이 있고, 집에서 가사도움을 주시는 시간도 있고 하는 식으로요.”

3) 정책 욕구 관련

(1) 주거 이동 관련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더 넓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연립 및 다가구 주택으로의 이사 선호, 그러나 관리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대체적으로 아파트보다 불편하지 않을까 우려함
- 서울의 영구임대 아파트는 노후화되어 불편이 많은 데 비해, 경기도 임대아파트가 비교적 신축이고, 넓은 면적, 쾌적한 환경을 제공
 -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으로의 주거 이동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인식, 지원 차이로 인해 대부분 비선호

(응답자 2-A) “서울 말고는 예를 들어 교통편이 잘 안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교통이 좋은 데로 가고 싶어서, 지방은 아니고 서울 정도요.”

(2) 추가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

- 일부 사용빈도가 낮은 편의시설 및 보조기구는 오히려 공간 차지로 인해 비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남
-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입주 이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를 조사하기도 하지만 기축주택은 구조로 인한 시설설치의 어려움을 겪음
 - 설치 관련해서 체크할 수 있으나, 비용상의 문제로 설치해 주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으며, 임대아파트의 특성상 다음 입주민을 위한 고려 등으로 반영해 주지 않기도 함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요조사 양식은 전국의 주택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음
 - 거주 단지에 맞는 양식을 사용해서 조사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을 주고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5. 활동보조사 대상 FGI 결과

1) 전문가의 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관련

(1) 활동보조사 현황

- 1일 10시간, 1달 180시간 초과하여 서비스하는 것은 불가. 시급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현 기준 12,000원 정도 (밤 10시 이후, 공휴일 등 할증 추가)
-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배정된 시간에 따라 일대일로 맞추어 활동
 - 경증 장애는 한 달에 6-70시간 배정, 최대 500시간까지 배정받는 경우는 보호자가 없는 외상 장애인 대상임

(2) 서비스 제공 관련

-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에서 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음
- 활동지원 서비스 받던 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되면, 현재 서비스 연장과 요양서비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나 요양 서비스는 시간이 대폭 감소해서 변경하지 않으려고 함
 - 요양은 1일 최대 3시간 (외상 환자만 4시간), 대부분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수당만 받고 있음
- 임대아파트에서 거주 희망하는 장애인 자격 요건 존재
 - 시설에서 퇴소한 후 경과년도(즉, 한 동네에서 3년 이상 사는 조건) 등의 조건 필요, 주거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 가능

(응답자 3-A) “해당 사항이 안 되는데 신청은 못하죠. 시설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돼야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응답자 3-C) “한 동네에 3년 이상 살아야 돼요. 한 동네 통장을 알아서, 통장님과 함께 해서, 여기 센터장님이 보호자여서 주거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을 해주세요.”

- 지자체마다 장애인 서비스 차이 존재
 - 한 예로, 더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경기도로 이사했으나, 경제적 지원 및 활동지원 시간 등의 차이가 발생

(3) 정책 욕구

- 장애인마다 배정되는 시간 증감에 대해 평가 시 평가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 현장에서 보면 시간 배정이 적절하게 분배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장애 정도에 따른 활동보조사 차등 급여 필요
 - 경증 장애와 중증 장애(와상 등)에 대한 활동 시급이 같아, 중증장애 담당 기피 발생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용 현황, 문제, 요구사항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주택 내·외부 필요한 편의시설 관련

- 기본적인 설치 현황: 욕실 안전바 정도뿐임
- 기본적인 가구 및 손잡이의 높이 조절 필요: 싱크대, 세면대, 가스 잠금 등

(응답자 3-A) “요리는 못해도 설거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싱크대가 조금만 낮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응답자 3-B) “자기 손으로 뭐든 하려고는 해요. 휠체어 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싱크대 높낮이이라든가, 세면대 같은 것도 손에서 혼자 씻으려고 하는데 이게 높잖아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2) 활동보조사 관점에서 필요한 편의시설

- 돌봄 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목욕, 화장실 관련임
 - 심한 장애의 경우 변기 내구성이 좋아야 장애인의 몸을 고정하고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돌볼 수 있음
 -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장애인을 위한 2인 1조 목욕 서비스 신청 가능 필요

(응답자 3-A) “저는 중증 장애인 돌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중증인데도 화장실에 앉으면 이렇게 묶어놓고라도 샤워도 시킬 수 있고 변도 볼 수 있는 그런 중증 분들이 있거든요. 변기만 좀 튼튼해도 거기다 앉혀서 할 수 있으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앉아서 목욕하고, 바닥에 눕혀서 하는 것 하고는 삶의 질이 다르거든요. 저는 중증 환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은 이분들이 늘어난다 아래쪽에 힘을 너무 줘서 변기가 부서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변기는 앉힐 수가 없어요. 중증 환자들한테는 그런 관련된 기술로 충분히 만들 수 있을 텐데 싶거든요. 앉혀서 뒤에다 묶어서 샤워도 시키고, 변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삶의 질이 좋을까 싶거든요.”

(3)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

- 주택 형태로 ‘아파트’는 관리가 용이; 경험상 오래된 오피스텔은 해충 등 위생 문제 발생 가능성 높음
 - 오피스텔보다 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저렴하고 관리상의 만족도가 더 높은 편

- 자가에 사는 장애인 가구는 자비로 편의시설 설치를 대부분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음
- 한 활동보조사가 경험한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현관문 폭이 좁아서 휠체어 진입 불가. 집 안 또한 좁아 벽지가 휠체어에 긁히고 해짐. 가구 및 전자제품 파손 빈번히 발생, 수동휠체어도 앞뒤 방향만 이동 가능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임대아파트 특성상 이사 시에 사비로 원상복구 해야 하는 문제 발생

(응답자 3-A) “적어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집에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안에까지 간신히 들어가서, 옆에 벽지가 다 헤지고 긁혀있어요.”

(4) 정책 욕구

- 발달 장애, 지적 장애는 지체 장애에 비해 주택 내외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 및 요구도가 비교적 낮은 편
- 제도적인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주거환경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
- 주택 외부보다는 내부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
- 복도식 아파트 내 가장 안쪽 끝에 위치한 세대 선호(휠체어 보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임)
-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설을 세분화하여 맞춤 제공 필요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신청 절차의 단순화와 빠른 처리 필요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2009년, 2015년, 2019년.

국토교통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 제7조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토해양부. 2011.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11-490호. 최저주거기준.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시행 2022. 6. 8] [대통령령 제32676호, 2022. 6. 7., 일부개정]

*참고사이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index/index.do> (최종 접속일 : 2024.4.21.)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 R-ONE. <http://www.r-one.co.kr/rone/> (최종 접속일 : 2024.4.21.)

부록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장애인가구)



부 록 1

조사표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인사말씀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연구원 및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인가구의 특성, 주거 및 주거환경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실시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조사문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http://www.molit.go.kr>



KRIHS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 <http://www.krihs.re.kr>

전화 : 044-960-0218, 0318



Hankook Research

홈페이지 : <http://www.hrc.co.kr>

전화 : 02-3014-0111

명부(리스트) 일련번호					
현재주소	_____시/도 _____시/군/구 _____읍/면/동, 세부주소 _____				
개인설문 응답자 이름 (명부 리스트 기준)			개인 설문 응답자 전화번호		
개인설문 응답자 가구주 여부	①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이다 ②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아니다				
대리 응답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대리응답 이유	①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장애인이라서 ② 심한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면접일시	____월 ____일 ____시
Supervisor 검증				검증결과	

I . 가구주 설문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만 응답)

주택 및 주거환경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 여부

문 1 귀하는 '가구주'나 '가구주의 배우자'이십니까?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 가 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가구주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가구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가구주가 된 연도

귀 닥의 가구주는 몇 년도부터 가구주가 되셨습니까? (가구주 기준)

귀 닥의 가구주는 우리나라 나이로 몇 세에 가구주가 되셨습니까? (가구주 기준)

년도, 우리나라 나이

 세

- 귀 닥의 가구 변동에 상관없이 현재 가구주가 처음 가구주가 된 연도를 기입

문 2-1 귀 닥의 가구주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가구주 기준)

년도

현재주택 거주 연도(가구주가 된 이후 상황)

문 3 귀 닥의 가구주께서는 가구주가 된 이후(년), 언제부터 현재주택에 살고 있습니까?
(가구주 기준)

년도, 지금으로부터

 년 전

-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이사 경험 없이 같은 집에서 계속 살고 있을 경우, 가구주가 된 시점을 살기 시작한 연도로 기입
- 재개발 후 다시 입주한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을 허물고 신축한 경우는 이전과는 다른 주택 개념으로 생각하고, 다시 입주한 연도와 신축 이후 거주한 연도를 현재주택 거주 연도로 기입(이 경우 이사경험 있음)

현재주택 유형

문 4 귀 닥의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일반단독주택 ② 다가구단독주택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④ 아파트
⑤ 연립주택 ⑥ 다세대주택 ⑦ 비거주용건물(상가·공장·여관 등)내 주택
⑧ 오피스텔 ⑨ 고시원 ⑩ 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⑪ 기타()

현재주택 위치

문 5 귀택의 거주 위치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지상 ② 반지하 ③ 지하 ④ 옥상(옥탑)



문 5-1 지상 몇 층에 거주하십니까?

층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 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복층형 주택 제일 윗층(예 : 펜트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 옥상이 아닌 ① 지상으로 응답 받음

현재주택 점유형태

문 6 귀택의 점유형태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금 있는 월세 ④ 보증금 없는 월세
 ⑤ 사글세 또는 연세 ⑥ 일세 ⑦ 무상

- 사글세 :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하는 경우
- 연세 : 1년치 월세를 선불로 한번에 내는 경우
- 일세 :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집세를 내는 경우
-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차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함

현재주택 외 주택 보유 여부

문 7 귀 가구는 가구주가 된 이후(년) 지금 사는 곳 이외에 가구주나 가구원의 이름으로 보유한 주택이 있습니까? 2023년 6월 셋째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주민등록상 세대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만 포함)

- ① 있다 ② 없다

- 분양은 받았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은 경우는 '② 없다'로 응답
- 문6 점유형태가 ① 자가인 경우 문7을 응답한 후 문8로 가십시오.
- 문6 점유형태가 ②~⑥ 임차인 경우 문7을 응답한 후 문11로 가십시오.
- 문6 점유형태가 ⑦ 무상인 경우 문7을 응답한 후 문15로 가십시오.

문 8

귀 닥의 가구주께서는 가구주가 된 이후(년) 현재주택을 언제 마련하셨습니다?
(가구주 기준)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잔금을 치른 시점으로 기입)

□ □ □ □ 년, 지금으로부터 □ □ □ □ 년 전

- 주택마련 : 매입, 증여 또는 상속 포함
- 가구주가 된 이후 시점으로 응답

문 9

2023년 6월 셋째 주 월요일 기준,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구 분	금 액
1) 매입·증여·상속 당시 주택가격	____억____만 원
2) 현재 주택가격	____억____만 원

- 매입·증여·상속 당시 주택가격 : 당시 해당지역 주택시장에서 거래되던 통상 가격을 응답
- 현재 주택가격 : 현재 집을 판다고 가정할 때의 금액 또는 현재 부동산 시세

문 10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구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다?(해당 되는 곳에 모두 기입)

구 분	금 액
1) 자기자금	____억____만원
2)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 (여러 기관에서 융자받은 경우 합산)	____억____만원
3) 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	____억____만원
4)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	____억____만원

- 증여나 상속으로 응답한 경우는 응답하지 않음
- 문9-1) 매입·증여·상속 당시 주택가격을 모르는 경우 응답하지 않음
-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빌린 금액은 무상이 아닌 경우 3)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에 기입

문 11 현재 살고 계신 임대주택은 어떤 유형입니까?

1) 유형	2) 세부유형
① 민간임대주택	
② 공공임대주택	① 영구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⑦ 50년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④ 장기전세주택 ⑥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⑧ 기타()
③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④ 기타임대주택()	

문 12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해당되는 곳에만 기입)

구 분	금 액	
1) 전 세	전세보증금 :	_____억_____만 원
2) 보증금 있는 월세	보 증 금 :	_____억_____만 원
	월 세 :	월 _____만 원
3)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일세 포함)	월 세 :	월 _____만 원

문 13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사글세, 연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만 응답, 문6의 ②,③,⑤)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임차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해당 되는 곳에 모두 기입)

구 분	금 액
1) 자기자금	_____억_____만원
2)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 (여러 기관에서 융자받은 경우 합산)	_____억_____만원
3) 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	_____억_____만원
4)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금액	_____억_____만원

- 문12 모름/무응답인 경우 응답하지 않음
- 문6 점유형태 ④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⑥ 일세인 경우 응답하지 않음
- 부모, 친지 등으로부터 빌린 금액은 무상이 아닌 경우 3)금융기관 외 다른 곳에서 빌린 금액에 기입

주택의 임차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 수준

문 14

※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일세인 경우 반드시 응답

※ 자가, 전세, 사글세 또는 연세인 경우, 주택을 위한 대출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경우만 반드시 응답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나 대출금을 매월 상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부담되십니까?

매우 부담됨	조금 부담됨	별로 부담되지 않음	전혀 부담되지 않음	해당 없음
①	②	③	④	⑤

- 문6 점유형태가 ① 자가, ② 전세, ⑤ 사글세 또는 연세인 경우 주택을 위한 대출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경우만 ①~④에 응답
- ⑤ 해당 없음은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사글세 또는 연세이면서 부채를 모두 상환한 경우만 응답
- 주택의 임차료 : 월 임차료(월세 등)
- 주택의 대출금 : 주택과 관련된 대출금

현재주택 건축연도

문 15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 | |
|---------------------------|---------------------------|
| ① 2021년 1월 이후(건축연도 3년 미만) | ② 2018~2020년(건축연도 3~5년) |
| ③ 2013~2017년(건축연도 6~10년) | ④ 2008~2012년(건축연도 11~15년) |
| ⑤ 2003~2007년(건축연도 16~20년) | ⑥ 1998~2002년(건축연도 21~25년) |
| ⑦ 1993~1997년(건축연도 26~30년) | ⑧ 1992년 이전(건축연도 30년 초과) |
| ⑨ 잘 모르겠음 | |

현재주택 구조

문 16

귀 닥의 주택 구조는 어떻습니까?

① 원룸형



문 16-1

귀 닥의 주택은 입주당시부터 기본적인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이 갖추어져 있었습니까? (풀옵션 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② 원룸형 아님



문 16-2

귀 닥의 방, 거실, 식당 수는 몇 개입니까? 각각에 대해 응답해주시요.

1) 방	개
2) 거실(대청마루)	개
3) 식당(부엌이 딸린 식당 포함)	개

- 원룸형 : 침실, 거실, 식당이 벽 또는 문에 의해 차단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하나의 독립된 공간 안에 전부 모여 있거나 부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주거 형태(쪽방 포함)
-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지 않은 거실 겸 식당은 거실에만 기입

현재주택 면적

문 17

귀 닥이 거주하시는 곳의 주택면적은 얼마입니까?

모두 응답	1) 주택사용면적(전용면적)	m ²
-------	-----------------	----------------

주택사용면적

- 실제 가구가 사용하는 면적
-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현재주택 내부시설 사용 형태

문 18 귀 닥의 주택 내부 시설 사용형태는 어떻습니까?

시설의 내용	(1) 사용 형태	(2) 종 류
1) 부 역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입 식 ② 재래식
2) 화 장 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수세식 — ① 서양식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음 ② 서양식양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② 재래식
3)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① 온 수 ② 비온수
4) 상수도시설	① 연결되어 있음 (※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완비도 포함) ② 연결되어 있지 않음	
5) (하수처리시설과 연결된) 하수시설	① 설치되어 있음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포함)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6) 난방시설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7) 취사연료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8) 출입구(현관문)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9-1) 소화기	① 있음 ② 없음	① 제조일 10년 초과 ② 제조일 10년 이하 ③ 잘 모르겠음
9-2) 화재경보기	① 있음 ② 없음	

서양식양변기	
공동사용 출입구	■ 가족 간 사용이 아닌 다른 가구와의 공동사용만을 말함 ■ 출입구란 문을 열었을 때 집 내부가 나오는 문을 말함
소화기	■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 내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시행됨 ■ 소화기는 주로 현관 바닥에 비치되어있음 
소화기 제조일자	■ 소화기 제조일자는 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있음 - 10년 초과 (2012년 12월 이전 제조) - 10년 이하 (2013년 1월 이후 제조) 
화재경보기	■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기 중 1개라도 설치되어있으면 '있음' 으로 응답 ■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 일반적으로 화재경보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곳마다 1개 이상 설치되도록 의무화가 시행됨 ■ 단독경보형감지기 : 주로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및 1,000㎡미만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음 - 점검스위치가와 자체 음향장치가 있음  ■ 화재감지기 : 주로 아파트, 비주거용 및 주택 이외 거처(판잣집 등 제외)에 설치되어 있음 - 점검스위치가 없고, 음향장치가 별도로 있음 

현재주택 개보수 경험

문 19 귀 택에는 장애인 또는 노약자를 위해 설치한 편의시설 또는 안전시설이 있습니까?
(예 :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

① 있다

문 19-1 설치한 편의시설 또는 안전시설에 대한 비용은 주로 누가 지불하였습니까?

※ 편의시설 또는 안전시설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지불한 주체도
여럿이라면, 가장 비용을 많이 지불한 주체를 선택해주세요.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② 민간 및 자선단체

③ 본인 및 가족

④ 기타 _____

문 19-2 설치하는 데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이 중 가구에서 직접 부담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1) 전체 설치 비용 _____ 만원

(2) 가구 부담 비용 _____ 만원

② 없다

현재주택 상태

문 20 귀 택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시설이 없는 경우는 불량으로 표기해주시요.

구 분	불량	조금 불량	조금 양호	양호
1) 집의 구조물(건고, 균열 상태)	①	②	③	④
2) 방수 상태(습기가 많거나 빗물이 새는 정도)	①	②	③	④
3) 난방 및 단열상태	①	②	③	④
4) 환기 상태(창문 개폐 여부, 통풍 상태)	①	②	③	④
5-1) 주택 외부 소음(차량 경적, 공사장 소음 등)	①	②	③	④
5-2) 주택 내부 소음(층간소음 등) (공동주택인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④
6) 재난, 재해(산사태나 홍수, 지진 피해 등) 안전성	①	②	③	④
7) 주택 방범상태(외부인의 주택 내 침입에 대한 안전성)	①	②	③	④

주거환경 만족도

문 21-1 다음 항목의 접근용이성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접근용이성	①	②	③	④
2) 의료시설 접근용이성(병원 · 의료복지시설 등)	①	②	③	④
3) 문화시설 접근용이성(극장 · 공연장 · 박물관 · 미술관 등)	①	②	③	④
4) 도시공원 및 녹지 접근용이성(놀이터 · 공원 · 녹지 · 수변 등)	①	②	③	④
5) 대중교통 접근용이성(버스 · 지하철 등)	①	②	③	④

문 21-2 다음 항목의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6) 주차시설 이용편의성	①	②	③	④
7) 교육환경(학교 · 학원 및 미취학 아동을 위한 시설 · 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8) 치안 및 범죄 등 방범 상태(집주변 CCTV 설치 등)	①	②	③	④
9) 장애가구원으로 인한 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주택 및 주거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

문 22 귀 닻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1)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II

주거이동 및 주거의식

이사의향 및 이사계획

문 23 귀 가구는 향후 1년 안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응답)

- ① 계획이 있음
- ② 계획이 없음
- ③ 잘 모르겠음

주택보유의식

문 24 귀 가구는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그렇다



문 24-1

가장 중요한 이유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주거안정 차원에서
- ② 자산증식을 위해
- ③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 ④ 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서(이사하기 불편해서)
- ⑤ 기타()

② 아니다

주거지원 프로그램 인지여부, 이용현황, 만족도

문 25

귀 닥에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래 <보기>의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용하고 계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1) 인지여부		2) 이용여부		3) 만족도			
	알고 있음	모름	이용한적 있다	이용한적 없다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② 주택개량·개보수 지원 (현물, 자금대출, 수선유지급여 포함)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③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④ 장애인 대상 주거금융 지원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입주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⑥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설치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 이용여부는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만족도는 이용하고 있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응답받음
- 주거복지 상담 및 정보 이용 : 마이홈, 주거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등에서 제공하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 장애인 대상 주거금융 지원 : 주택구입자금 저리 용자, 전세금 저리 용자, 주택개조비용 저리용자,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장애인 대상), 주택개조비용 보조(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등
- 장애인 공공주택 우선입주 : 영구임대주택 입주우선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장기전세주택(Shift등) 입주우선권,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신축다세대매입임대주택 입주우선권,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입주우선권,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우선권, 일반분양주택 입주우선권 등 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뿐 아니라 민간임대/분양 등 '등록 장애인' 조건으로 입주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모두 포함
- 장애인 대상 편의시설 설치 : 국민임대주택 거주시 편의시설 무료설치, 개조 및 주거이동에 대한 정보제공 등

문 25-1

위의 프로그램중 본인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문 26

귀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준다면 입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가구에 관한 사항

가구현황

문 27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구주를 기준으로 각 가구원의 관계와 가구원의 출생연도, 성별, 장애여부 및 정도를 응답해주시시오.

No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 참조)	출생연도	성별	장애여부
			① 남 ② 여	① 중증 장애인 ② 경증 장애인 ③ 해당없음
1	① 가구주			
2				
3				
4				
5				
6				
7				
8				
9				
10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④ 손자녀 또는 손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또는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 ⑥ 조부모
⑦ 기타 친인척·친구 등

가구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주민등록 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상이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나,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가구원	■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

문 27-0 위의 가구원 중 조사대상 장애인은 누구입니까? 표 제일 앞 No.의 숫자를 기입해주세요.

No.

문 27-1 귀 닥의 가구원수는 총 몇 명입니까? 귀하를 포함하여 실제로 이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인원을 말씀해 주십시오(군대 간 자녀, 유학 간 자녀 등은 제외합니다.) (가구원 기준)

- 직접 질문하지 않습니다. 문27로 자동계산 합니다.

문 27-2 조사대상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가구원수는 몇 명입니까?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구원 기준)

모양

- 직접 질문하지 않습니다. 문27로 자동계산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관련

문 28 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맞춤형 급여) 수급가구입니까?

① 예



문 28-1

귀 가구는 어떤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현재 받고 계신 모든 급여에 응답해주시요.

- ① 생계급여
- ② 의료급여
- ③ 주거급여
- ④ 교육급여

② 아니오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는 경우, '① 예'로 응답함
- 주거급여란?
 - 임차급여 :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을 지원함
 - 수선유지급여 :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리를 지원함

문 28-2 (문28-1에 ③ 주거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귀 가구는 주거급여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가구소득

문 29

귀 가구의 가구주,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 전원에 대한 경상소득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지난 1년간의 월평균 금액(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단, 실수령액<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제외>으로 기재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입)

※ 비경상소득(경조소득 등 비경상적이고 일시적인 수입(경조소득, 퇴직수당, 만기이전에 사고로 보험금, 실비보험 탕 금액 등)) 제외

소득원	금 액
1) 근로·사업소득	월평균 _____ 만 원
2) 재산소득(금융소득, 부동산소득, 사적연금<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월평균 _____ 만 원
3) 사회보험 수혜금 (※ 사적연금 제외)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사회보험금 등)	월평균 _____ 만 원
4) 정부 보조금(기초연금(구.기초노령연금), 생계비 지원금, 장애 수당 등)	월평균 _____ 만 원
5) 사적이전소득(부모, 자녀 등)	월평균 _____ 만 원
6) 월평균 총 경상소득[1)+2)+3)+4)+5)]	월평균 _____ 만 원

근로·사업 소득	■ 근로·사업소득 : 근로나 사업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포함
재산 소득	■ 금융소득 : 금융자산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등이 포함. 다만, 자산의 가치가 변화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주식의 시세는 높아졌지만 실제로 주식을 사고팔지는 않은 경우)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부동산소득 :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집세, 토지임대료 등이 포함됨. 다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부동산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사적연금 :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포함(※ 단,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포함되지 않음)
사회 보험 수혜금	■ 사회보험 수혜금에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금(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해당 -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보훈연금* 등이 포함 *보훈연금에는 간호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군인사망보상금, 기본연금,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부가연금, 사망일시금, 생명조정수당 등이 포함 -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이 포함 - 산재보험에는 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이 포함
정부 보조금	■ 정부 보조금 종류 1)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2)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3) 기초연금(구.기초노령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 5)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6) 양육수당(영유아 양육지원) 7) 아동수당 8) 보육료 지원(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i-사랑 카드, 아이즐거운 카드) 9)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10)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11) 농어업 정부보조금 12) 기타(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근로장려세제,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 통신비 감면 또는 보조 등)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
사적이전 소득	■ 생활비나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아닌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친척, 친지 그리고 민간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말함

생활비 및 사적 비소비지출

문 30 귀 가구의 생활비 및 사적 비소비지출은 얼마입니까? 지난 1년간의 평균 금액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금 액
1) 월평균 총생활비	월평균 _____ 만 원
1)-(4) 월평균 주거관리비 <질문 안함> 평균 자동 생성	-
1)-(1) 동절기 월평균 주거관리비(12월~3월)	월평균 _____ 만 원
1)-(2) 간절기 월평균 주거관리비(4,5,10,11월)	월평균 _____ 만 원
1)-(3) 하절기 월평균 주거관리비(6월~9월)	월평균 _____ 만 원
2) 월평균 사적 비소비지출(이자비용,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 단체로 이전 금액만 응답)	월평균 _____ 만 원

생활비	■ 생활비란 식비, 주거관리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과 같이 생활에 드는 비용 ■ 생활비에서 제외되는 항목 1)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공적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비롯해, 타 가구에 보내는 돈 등 2) 저축,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유가증권 부동산 구입, 빌려준 돈 등 3) 주택부금 상환, 빌린 돈 갚은 금액 등 4) 혼수장만이나 교통사고보상금 지불과 같이 특별한 일로 인해 지불한 돈 등
주거관리비	■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취사연료비, 일상적인 주택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화재보험료 등(단, 임대료 및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유지비는 제외)
사적 비소비지출	■ 이자비용 : 주택에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생활비 조달을 위한 이자만 해당(사업자금대출로 인한 이자 제외) ■ 가구 간 이전지출 :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부모, 자녀나 친지 등에게 정기적으로 보낸 생활보조금 등 ■ 비영리 단체로 이전 :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 노조비, 정기적인 친목회비 등 ■ 사적 비소비지출에는 공적 비소비지출(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을 제외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

문 31 귀 닥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주거관리비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부담됨 ② 약간 부담됨 ③ 별로 부담되지 않음 ④ 전혀 부담되지 않음

자산

문 32 귀 가구의 총 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2023년 6월 셋째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자 산 종 류	금 액
1-1) 현재주택 외 주택자산	_____ 억 _____ 만 원
1-2) 주택 외 부동산 자산	_____ 억 _____ 만 원
2) 현재주택 보증금 외 금융자산	_____ 억 _____ 만 원
3) 기타자산	_____ 억 _____ 만 원
4) 총 자산[1)+(2)+3)]	_____ 억 _____ 만 원

총 자산	■ 현재주택 외 주택자산 : 비 거주 주택 자산. 현재주택 가격은 반드시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주택 외 부동산자산 :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가축, 입목자산, 분양권, 어업권. 주택자산은 반드시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주택 보증금 외 금융자산 : 거주 주택 외 임차보증금, 현금 또는 수표,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현재주택 임차보증금은 반드시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기타자산 : 농기계(동력탈곡기, 경운기, 콤바인, 트랙터,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터리 등), 재고자산(재고 농·축·수산물 등과 상업용 재고자산 등이 포함되며, 애완용 및 식용 가축 제외), 기타자산(자동차, 회원권, 영업용 자동차 번호 값,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 가구 기준으로 자산을 산정하며 해외에 있는 자산도 포함(명의를 미성년자 자녀 앞으로 되어있다면 자산에 포함)
------	--

부채

문 33 현재 귀 가구는 부채가 있습니까? 2023년 6월 셋째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있다



문 33-1 현재 귀 닥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부 채 종 류	금 액
1) 금융기관 대출금	_____억 _____만 원
2) 비금융기관 대출금	_____억 _____만 원
3) 부동산 소유자로서 받는 임대보증금	_____억 _____만 원
4) 총 부채[1)+2)+3)]	_____억 _____만 원

② 없다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 마이너스 통장, 카드대출도 포함
- 비금융기관 대출금 : 가족·친구·친지에게 빌린 돈, 회사를 통해 빌린 돈,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돈, 한국장학재단, 각종 공제회 등을 통해 빌린 돈 등
- 전세임대주택에서 LH가 국민주택기금으로 용자한 경우는 부채에 응답하지 않음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연락처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휴대폰	() -
	집	() -

Ⅱ. 개인 설문

(리스트의 조사대상 장애인이 응답)

단, 응답이 어려운 경우 조사대상 장애인 동석 하에 대리응답 가능

대리응답 가능 (1) : 만14세 이하

대리응답 가능 (2) : 심한 장애로 의사소통 불가능

장애유형

문 34 귀하의 장애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주된 장애(리스트기준)	
주된 장애 외 중복장애	

- | | | |
|---------|-----------|---------|
| ① 지체장애 | ② 뇌병변장애 | ③ 시각장애 |
| ④ 청각장애 | ⑤ 언어장애 | ⑥ 지적장애 |
| ⑦ 자폐성장애 | ⑧ 정신장애 | ⑨ 신장장애 |
| ⑩ 심장장애 | ⑪ 호흡기장애 | ⑫ 간장애 |
| ⑬ 안면장애 | ⑭ 장루·요루장애 | ⑮ 뇌전증장애 |

■ 중복장애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모두 응답 (장애 판정을 받은 것만 기입)

문 35 장애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① 선천적 (출생 전 또는 출생 시, 만 1세 이전 포함)
- ② 후천적

문 35-1 구체적으로 몇 살 때 장애판정을 받으셨습니까?

만 () 세

문 35-2 귀하의 장애 발생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된 장애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질환 ② 사고 ③ 노화 ④ 원인불명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경험

문 36 귀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 생활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에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문 37

② 아니오 문 38

문 37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36의 ① 응답자만 응답)

- ①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어서
- ② 개인생활(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서
- ③ 규정상 더 있을 수가 없어서
- ④ 장애인 거주시설이 열악해서
- ⑤ 비용을 지불할 수 없어서
- ⑥ 기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인식

문 38 귀하는 현재 다음의 각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 분	매우 좋지 않다	좋지 않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해당 없음
1) 자신의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
2) 자신의 경제상태	①	②	③	④	-
3) 다른 가구원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4) 이웃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전반적인 삶의 질	①	②	③	④	-

-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에 기입하십시오.
- 이웃과 교류가 전혀 없거나 주변에 이웃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없음에 기입하십시오.

자신의 주택 등에서의 활동 가능 여부

문 39 귀하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구 분	혼자 할 수 있다	일부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
1) 탈의 및 옷 갈아 입기	①	②	③
2) 화장실 이용	①	②	③
3) 목욕하기	①	②	③
4) 조리 및 식사준비 (부엌일 포함)	①	②	③
5) 청소 등 집안정리	①	②	③
6) 주택주변 산책	①	②	③

- ADL, IADL 내용 중 선별

문 39-1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이동하는데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혼자 도움이나 기구 없이 보행가능
- ② 휠체어 사용
- ③ 워커, 목발 등을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상태
- ④ 팔 혹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
- ⑤ 혼자서는 누운 상태에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안전사고 경험

문 40 최근 2년 동안 귀하께서는 주택 내에서 본인의 장애로 인한 안전사고(낙상, 넘어짐, 미끄러짐, 주저앉음 등)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장애인 편의시설

문 41

현재 귀택의 주택 내부와 외부에 응답자님을 위해 다음의 편의시설이 설치(개조)되어 있습니까? 또한 현재 설치(개조)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응답자님께 다음의 시설이 필요한 지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현재 설치(개조) 여부		설치(개조) 필요성	
			설치 (개조) 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반드시 설치 (개조) 필요함	필요 없음
주택내부 / 집안	바닥	1) 바닥 미끄럼을 방지하는 마감재	①	②	①	②
		2) 바닥 단차 및 문턱제거(바닥의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의 차이를 없앴)	①	②	①	②
	출입문	3) 충분한 출입문 너비(출입문 유효너비 85cm 이상)	①	②	①	②
	비상 연락 장치	4) 경비실 등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	①	②	①	②
	현관	5) 현관출입문 옆에 수직 손잡이 혹은 수평 손잡이 (출입구 측면 바닥에서 75~85cm 높이의 수직·수평 손잡이)	①	②	①	②
		6) 마루와 현관 사이에 경사로	①	②	①	②
	거실	7) 거실에 비디오폰(1.2m 높이 내외에 위치한 비디오폰) 또는 시각경보기 또는 청각경보기	①	②	①	②
	부엌	8) 좌식싱크대	①	②	①	②
	욕실	9)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조명	①	②	①	②
		10) 적절한 욕조 높이(바닥에서 45cm이하의 욕조 높이)	①	②	①	②
		11)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	①	②	①	②
		12)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	①	②	①	②
		13) 욕실 출입문이 밖여닫이, 옆으로 여는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	①	②	①	②
		14) 좌변기 옆 충분한 여유공간(좌변기 옆 75cm 이상의 여유공간)	①	②	①	②
		15)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①	②	①	②
주택외부 / 집밖	16) 주출입구(현관)의 계단에 경사로		①	②	①	②
	17)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①	②	①	②
	18) 엘리베이터		①	②	①	②
	19) 휠체어 통행 위한 충분한 도로폭과 도로상태		①	②	①	②
	20)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점자표지판)		①	②	①	②
	21) 집주변에 시각·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①	②	①	②

- 시각장애인 경우 20), 21) 추가 응답
- 청각장애인 경우 21) 추가 응답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시 어려움

문 42 (위의 설치(개조) 필요성 여부에 하나라도 “① 반드시 필요”로 응답한 경우에)
다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문 42

문 42 다음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개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설치(개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치(개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
- ② 경제적 부담으로
- ③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몰라서
- ④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과정이 번거롭고 엄두가 안나서
- ⑤ 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되어서
- ⑥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아서
- ⑦ 신경 쓸 여유가 없어서
- ⑧ 기타 ()

장애인가구원의 분가희망

문 43 귀하는 분가하기를 원하십니까? (※ 가구주/배우자와 개인응답자가 다른 경우에만 응답)

① 예

문 43-1 귀하는 분가해서 산다면 어떤 형태로 살고 싶습니까?

- ① 단독(독신)
- ② 결혼 등 새로운 가족 형성
- ③ 가족 일부와 거주
- ④ 친구나 동료와 거주
- ⑤ 도우미와 함께 거주
- ⑥ 기타()

문 43-2 귀하는 분가해서 살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_____, 2순위_____

<보 기>

- ① 집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②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
- ③ 일자리가 필요하다.
- ④ 활동보조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 ⑤ 자신의 장애 상황에 맞는 주택내외의 보조시설의 구비 혹은 설치
- ⑥ 자립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 ⑦ 보건복지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⑧ 이동 지원을 위한 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
- ⑨ 기타()
- ⑩ 없음

문 43-3 귀하는 분가하신다면 어떤 주택에서 거주하고 싶습니까?

- ① 일반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 ② 장애유형에 맞는 거주시설
- ③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④ 서비스가 결합된 장애 지원주택
- ⑤ 비장애인과 그룹홈(코하우징 등)
- ⑥ 기타()

② 아니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주택

문 44 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주택에 거주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곳에 거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공급 받고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의 지원이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의미

필요 서비스

문 45 귀하는 개인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받고 싶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1순위 ____ 2순위 ____

- ① 요리 및 반찬 제공 ② 목욕 등 개인위생 서비스 ③ 병원 및 외출시 동반서비스
④ 간병 서비스 ⑤ 세탁 서비스 ⑥ 청소 서비스
⑦ 기타() ⑧ 필요 없음

정보취득 방법

문 46 귀하는 장애인 주거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주로 어떻게 얻으십니까?

- ① 주거복지센터, 마이홈센터 등 주거지원기관 ④ 지역 정보지/방송/신문
②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사회복지사)
③ 주민센터(동사무소) ⑤ 주변 사람
⑤ 인터넷 / 스마트폰 (부동산앱 포함) ⑥ 없음
⑦ 기타()

III

경제 활동

소득

문 47 귀하의 소득은 얼마입니까? 지난 1년간의 월평균 금액(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단, 실수령액<세금, 공적연금·사회보험료 제외>으로 기재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0'으로 기입)

소득원	금 액
1) 근로·사업소득	월평균 _____ 만 원

근로·사업 소득 ■ 근로·사업소득 : 근로나 사업의 대가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하며, 직장 또는 일자리에서 받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 등이 포함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응답하신 분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전화번호는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 추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휴대폰	() -
	집	() -